서 울 특 별 시 2 0 2 2 회 계 연 도 결 산 승 인 안

검 토 보 고 서

Ⅰ. 제안경위

❍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그리고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서울특별시장이 '23년 5월 30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

Ⅱ. 2022회계연도 결산 개요

1. 세입 · 세출 결산 개요[1)]

❍ '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3조 4,687억 9,9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47조 7,591억 2,800만원) 보다 12.0%, 5조 7,096억 7,100만원 증가한 것임

- 최종예산액 52조 3,071억 9,600만원은 당초 본예산(44조 2,190억 4,800만원), 간주처리분(5,207억 400만원), 추경 증액조정분(7조 5,674억 4,200만원)을 합한 것이며

1) ■ 결산서는 원 단위로 작성되나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 증감률 등의 경우, 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하고, 그 미만은 절사함에 따라 일부(±0.1% 범위내) 차이 있음

- 최종예산액과 직전 회계연도 이월액(1조 1,616억 300만원)을 합한 '2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직전 회계연도(47조 7,591억 2,800만원)보다 12.0%, 5조 7,096억 7,100만원 증가한 53조 4,687억 9,900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52조 8,591억 1,200만원)보다 5.1%, 2조 7,125억 7,000만원 증가한 55조 5,716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40조 7,141억 4,300만원과 특별회계 14조 8,575억 3,900만원이며

❍ 세출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45조 3,336억 9,100만원)보다 10.9%, 4조 9,428억 9,600만원 증가한 50조 2,76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 37조 1,167억 7,300만원과 특별회계 13조 1,598억 1,300만원임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7조 5,254억 2,100만원) 보다 △2조 2,303억 2,600만원 감소한 5조 2,950억 9,500만원임

〈표 2-1〉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세입결산액 (가)	세출결산액 (나)	결산상잉여금 (가)-(나)	결산상잉여금 세부내역	
2022	총계	53,468,799 <2022최종> 52,307,196 <2021→2022이월> 1,161,603	55,571,682 (103.9%)	50,276,587 (94.0%)	5,295,095 (9.9%)	명시이월 주1)	348,007
						사고이월	766,058
						건설개량이월 주1)	12,329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83,141
						채무상환	-
						물납 등	-
						순세계잉여금	4,137,946
	일반회계	38,319,642 <2022최종> 38,050,516 <2021→2022이월> 269,125	40,714,143 (106.2%)	37,116,773 (96.9%)	3,597,370 (9.4%)	명시이월 주1)	81,713
						사고이월	193,448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67,351
						채무상환	-
						물납 등	-
						순세계잉여금	3,254,857
	특별회계	15,149,156 <2022최종> 14,256,679 <2021→2022이월> 892,477	14,857,539 (98.1%)	13,159,813 (86.9%)	1,697,725 (11.2%)	명시이월 주1)	253,964
						사고이월	572,610
						건설개량이월 주1)	12,329
						계속비이월	-
						보조금실제반납금	15,790
						채무상환	-
						물납 등	-
						순세계잉여금	883,089

※ 주1) **명시이월**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만, **건설개량이월**은 공기업특별회계만 작성됨

( )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 17)

2. 예비비 결산 개요

❍ ’22회계연도 예비비는 1,688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816억 2,10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794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음

〈표 2-2〉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액 (가)	지 출 액 (나)	이 월 액 (다)	집 행 잔 액 (가)-(나)-(다)
합 계	168,804	81,621	79,428	445	1,748
일 반 회 계	147,070	70,995	69,349	12	1,633
특 별 회 계 주1)	21,733	10,626	10,078	432	115

※ 주1)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521 (’23. 4.10)

3. 기금 결산 개요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22회계연도말 조성액은 7조 2,080억 8,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조성액(5조 378억 3,500만원)보다 2조 1,702억 4,600만원 증가한 것임

- ’22회계연도의 경우, 당해연도 조성액은 4조 8,531억 1,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2조 6,828억 6,500만원임

❍ 17개 기금, 25개 계정을 운용한 결과 수입은 6조 8,626억 6,100만원, 지출은 6조 8,360억 7,100만원으로 기금의 결산결과를 제출하였음

Ⅲ. 세입결산

1. 세입결산 총괄

❍ 세입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을 구성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40조 7,141억 4,300만원)와 특별회계(14조 8,575억 3,900만원)를 합한 55조 5,716억 8,200만원으로 이는 직전 회계연도(52조 8,591억 1,200만원)보다 5.1%, 2조 7,125억 7,000만원 증가된 것임

〈표 3-1〉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합 계	53,468,799	56,822,399	55,571,682	114,645	1,136,071
일 반 회 계	38,319,642	41,751,414	40,714,143	113,504	923,766
특 별 회 계 주1)	15,149,156	15,070,984	14,857,539	1,140	212,304

※ 주1)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22회계연도의 경우, 징수결정액(56조 8,223억 9,900만원)중 1조 1,360억 7,100만원이 미수납 되고, 1,146억 4,500만원이 불납결손되어 55조 5,716억 8,2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 직전 회계연도보다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이 0.2%포인트 증가함에 따라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은 △0.3%포인트 감소한 바, 미수납액이 1조 1,360억 7,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미수납 감소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2〉 세입결산중 미수납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 수 납 액	징수결정액대비 실제수납액비율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비율
2022	56,822,399	55,571,682	114,645	1,136,071	97.8	2.0
2021	53,887,515	52,859,112	82,124	946,278	98.1	1.8
2020	50,766,920	49,549,698	270,099	957,122	97.6	1.9

2. 일반회계 세입결산

(1) 시세 세입관련

❍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시세(지방세) 세입결산액은 직전 회계연도(26조 11억 8,800만원)보다 0.6%, 1,626억 900만원 증가한 26조 1,637억 9,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27조 892억원)대비 96.6%가 수납된 것으로 지방세 실제징수율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0.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3-3〉 시세 세입결산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실제징수율 (B)/(A)	환 급 액
2 0 2 2	23,095,574	27,089,200	26,163,797	96.6	1,121,818
2 0 2 1	20,023,706	26,777,061	26,001,188	97.1	1,184,178
2 0 2 0	19,552,425	24,320,748	23,393,017	96.2	1,207,443

- 시세 세입예산액(23조 955억 7,400만원)과 세입결산액(26조 1,637억 9,700만원)을 비교하면 당초보다 13.3%, 3조 682억 2,300만원이 초과수납된 바, 예산액대비 결산액이 증가하면 세출재원 확보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발생시키나 차이가 발생한 만큼 세수추계의 부정확성이 표면화되는 지표일 수밖에 없어 세입 예·결산의 차이가 감소되도록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3-4〉 시세 세입예산·세입결산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세입예산 (A)	세입결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2022	23,095,574	26,163,797	3,068,223	13.3
2021	20,023,706	26,001,188	5,977,482	29.9
2020	19,552,425	23,393,017	3,840,592	19.6

❍ 징수결정액(27조 892억원)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26조 7,770억 6,100만원)와 비교하면, 1.2%, 3,121억 3,900만원 증가하였고, 수납총액(27조 2,856억 1,500만원) 또한 직전 회계연도(27조 1,853억 6,600만원) 대비 0.4%, 1,002억 4,9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급액은 1조 1,218억 1,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1,841억 7,800만원)보다 △5.6%, △623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직전 2개 회계연도 연속으로 환급액 규모가 1조원 이상 발생되어 지방세 징수결정의 정밀도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5〉 지방세 환급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환급액	행정기관 착오	납세자 권리구제	납세자 착오	차량 미등기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법인 정산	기타
지 방 세	1,121,818	2,259	181,667	35,059	12,412	185,716	2,735	691,500	10,464
취 득 세	149,152	136	127,302	20,692	36	-	320	-	663
주 민 세	1,691	21	337	1,076	-	-	-	-	256
재 산 세	6,461	1,380	850	1,624	-	-	1,305	-	1,300
자동차세	10,319	6	2	327	9,428	30	29	-	494
레 저 세	0	-	-	-	-	-	-	-	-
담배소비세	0.5	-	-	0	-	-	-	-	0.5
지방소비세	-	-	-	-	-	-	-	-	-
지방소득세	924,760	156	31,982	8,656	-	185,356	-	691,500	7,108
지역자원시설세	1,360	79	810	437	-	-	0.3	-	33
지방교육세	19,520	332	12,735	2,169	2,941	-	845	-	497
지난년도 수입	8,551	147	7,647	75	6	329	234	-	10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세입결산 총괄현황"

❍ '22회계연도 당해연도분에 대한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25조 9,482억 2,7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액 22조 8,855억 7,400만원보다 3조 626억 5,400만원 증가된 바,

- ①지방소득세(2조 7,823억 1,600만원 증가), ②지방소비세(5,710억 4,600만원 증가), ③주민세(1,120억 4,600만원 증가), ④재산세(912억 9,200만원 증가), ⑤레저세(752억 5,000만원 증가) 등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표 3-6〉 지방세 세목별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 (A)	세입결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합 계 주1)	22,885,574	25,948,227	3,062,654	13.3%
취 득 세	6,204,612	5,871,174	△333,437	△5.4%
③ 주 민 세	616,633	728,679	112,046	18.2%
④ 재 산 세	3,827,592	3,918,884	91,292	2.4%
⑥ 자 동 차 세	1,216,532	1,025,804	△190,727	△15.7%
⑤ 레 저 세	29,891	105,141	75,250	251.7%
담 배 소 비 세	571,531	588,594	17,063	3.0%
② 지 방 소 비 세	2,189,240	2,760,286	571,046	26.1%
① 지 방 소 득 세	6,052,140	8,834,456	2,782,316	46.0%
지역자원시설세	309,683	325,407	15,724	5.1%
지 방 교 육 세	1,867,720	1,789,797	△77,922	△4.2%

※ 주1) 당해연도분 지방세 수입으로 한정함에 따라 “지난년도수입” 제외

- ①지방소득세 수입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의 이유로 경기 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및 개인사업자 소득, 상용근로자수, 월평균 임금 등이 증가하여 당초 세입예산액(6조 521억 4,000만원) 보다 46.0%, 2조 7,823억 1,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표 3-7〉 지방소득세 수납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 (A)	세입결산 (B)	증감 (C)=(B)-(A)	증감률 (C)/(A)
합 계	6,052,140	8,834,457	2,782,316	46.0
양도소득분	784,387	1,013,945	229,558	29.3
종합소득분	683,755	1,261,589	577,834	84.5
법인소득분	1,678,164	3,058,418	1,380,254	82.2
특별징수분	2,905,834	3,500,505	594,671	20.5

- ②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액의 23.7%(소비지출분 17.7%, 감면보전분 6%)를 시·도별로 안분하는 세목으로 '22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의 안분비율과 비교할 때 소비지출분(5%)은 13.0%로 같으나 감면보전분(6%)은 0.4% 증가한 바,

  ▪ 민간소비 진작 등으로 부가가치세 징수실적이 증가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2조 1,892억 4,000만원) 보다 5,710억 4,600만원 초과 수납된 것임

  ▪ 지방소비세의 세액 비율은 '22회계연도에는 23.7%이나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3년도에는 25.3%까지 인상될 예정으로 향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특수성이 반영되도록 소비지출분 및 감면보전분에 대한 안분비율 상향 의견을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③주민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 증가와 상용근로자 월평균임금이 '21회계연도 390만원에서 '22회계연도 408만원으로 4.6% 증가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6,166억 3,300만원)보다 1,120억 4,600만원 초과수납된 것임

- ④재산세 수입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서울시 공시가격이 '22회계연도보다 11.21% 인상되어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3조 8,275억 9,200만원)보다 912억 9,2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⑤레저세 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해 예산액을 298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 경기 재개로 인해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251.7%, 752억 5,000만원 초과수납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⑥자동차세의 경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세 한시 인하로 당초 편성된 세입예산액(1조 2,165억 3,200만원) 보다 △1,907억 2,700만원(△15.7%) 부족수납된 것으로 제출되었음

❍ 특별시세 체계는 재산과세, 소득, 소비활동 등과 연동되어 경기 변동에 따라 세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지방세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세수 증진·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⑵ 시세 세입중 미수납액 관련

❍ '22회계연도에 대한 시세세입 결산결과 **미수납액**은 직전 회계연도 보다 16.0%, 1,123억 7,900만원 증가한 8,142억 9,2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8〉 시세세입 수납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022	27,089,200	26,163,797	96.6	814,292	3.0
2021	26,777,061	26,001,188	97.1	701,913	2.6
2020	24,320,748	23,393,017	96.2	661,478	2.7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된 시세 수입중 당해연도에 징수하지 못하여 다음 해부터 장기간에 걸쳐 징수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은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3,489억 700만원과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4,653억 8,400만원으로 확인됨

- '22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미수납액(7,019억 1,300만원)보다 증가한 것으로 무재산 등 고의성 있는 시세 체납사례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지방세 체납 및 회피사례에 대하여 출국정지 신청 기준을 더욱 낮추는 등 보다 직접적인 징수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2회계연도에 발생된 시세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23년 2월말 기준으로 11.2%(914억 2,400만원)가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지난 '21회계연도에 발생된 미수납액(7,019억 1,300만원)중 30.7%, 2,155억 6,900만원만 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미납된 시세에 대한 징수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지방세 미수납액(8,142억 9,200만원) 발생 사유별 현황을 검토하면, 무재산이 67.5%, 5,499억 1,5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납세태만(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이 17.9%, 1,461억 400만원, 납기 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 5.9%, 483억 2,6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미수납액 징수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9〉 지방세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미수납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유예	결손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기 미도래
합 계	814,292 (100.0)	549,915 (67.5)	27,232 (3.3)	146,104 (17.9)	34,532 (4.2)	697 (0.1)	5 (0.0)	914 (0.1)	4,598 (0.6)	1,829 (0.2)	134 (0.0)	48,326 (5.9)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348,906 (100.0)	209,488 (60.0)	7,536 (2.2)	80,346 (23.0)	1,358 (0.4)	52 (0.0)	- (0.0)	123 (0.0)	1,533 (0.4)	9 (0.0)	114 (0.0)	48,325 (13.9)
취 득 세	49,190	14,836	592	10,095	816	-	-	-	8	-	-	22,840
주 민 세	7,842	5,369	39	2,293	5	18	-	-	1	-	114	
재 산 세	44,595	24,938	498	13,120	1	11	-	-	624	-	-	5,400
자 동 차 세	53,975	41,189	390	11,904	30	-	-	-	27	-	-	430
지방소득세	161,551	103,299	5,745	35,038	443	18	-	-	850	9	-	16,146
지역자원시설세	2,557	1,382	38	994	-	-	-	-	23	-	-	118
지방교육세	29,196	18,475	234	6,902	63	5	-	123	-	-	-	3,391
지난년도분 미수납액	465,384 (100.0)	340,423 (73.1)	19,694 (4.2)	65,753 (14.1)	33,171 (7.1)	642 (0.1)	5 (0.0)	790 (0.2)	3,062 (0.7)	1,820 (0.4)	20 (0.0)	- (0.0)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 또한,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 연도 수입에 대한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은 7,784억 5,800만원이나 이중 서울시 체납 전담부서인 38세금징수과의 실제 수납액은 5.5%(428억 5,800만원)이고,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2,155억 6,900만원)을 고려하면 38세금징수과의 수납 비율은 19.9% (428억 5,800만원)로서 25개 자치구가 나머지 80.1%(1,727억 1,000만원)를 징수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 서울시와 자치구의 체납징수 인원에 차이가 있고, 1인당 징수액에도 차이가 있어 징수액의 절대치를 비교하는데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서울시 실제수납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액 비율이 '21회계연도는 23.9%, '22회계연도는 19.9%로 오히려 △134억 7,100만원 더 적게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전담부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3-10〉 지방세 미수납액중 지난년도 수입에 대한 징수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2년도	'21년도	'20년도
지난년도수입	예산액			210,000	201,005	222,078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A)	778,458	699,543	834,347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B)	215,569	235,753	184,628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률		(C)=(B)/(A)	27.7	33.7	22.1
	38세금징수과	예산액		42,600	39,000	39,000
		징수결정액		388,014	298,432	463,896
		실제수납액	(D)	42,858	56,330	35,786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E)=(D)/(A)	5.5	8.1	4.3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38세금징수과 실제수납률	(F)=(D)/(B)	19.9	23.9	19.4
		참고	조직구성	5	5개팀	5개팀
			현원	41	40명	41명
	자치구	예산액		167,400	162,005	183,078
		징수결정액		390,444	401,110	370,450
		실제수납액	(G)	172,710	179,422	148,841
		서울시 전체 징수결정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H)=(G)/(A)	22.2	25.6	17.8
		서울시 전체 실제수납액 대비 자치구 실제수납률	(I)=(G)/(B)	80.1	76.1	80.6
		참고	조직구성	71개팀	70개팀	70개팀
			현원	371명	370명	350명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⑶ 시세 세입중 불납결손액 관련

❍ ’22회계연도에 대한 시세 세입 결산결과 **불납결손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0.2%, 371억 5,300만원 증가한 1,111억 1,100만원이며 이 중 당해 연도분 불납결손액은 129억 3,700만원, 지난 연도분은 975억 5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표 3-11〉 지방세 불납결손액 사유별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불납결손액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2022	111,111	56	733	17,291	2,089	73,216	5	185	12,862	4,669
	(100.0)	(0.1)	(0.7)	(15.6)	(1.9)	(65.9)	(0.0)	(0.2)	(11.6)	(4.2)
2021	73,958	48	107	16,514	776	42,930	4	16	8,424	5,135
	(100.0)	(0.1)	(0.1)	(22.3)	(1.1)	(58.0)	(0.0)	(0.0)	(11.4)	(6.9)
2020	266,252	9	309	20,529	879	134,237	9	1	103,079	7,195
	(100.0)	(0.0)	(0.1)	(7.7)	(0.3)	(50.4)	(0.0)	(0.0)	(38.7)	(2.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 ’22년 1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22년 2월부터 그동안 사용하던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개정하였으나 명칭만 다를 뿐 개념은 유사하며 정리보류 또한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정리보류 또한 납세의무를 소멸시켜 주는 것인 바,

- 정리보류 이후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도 있어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직전까지 수시로 재산 조사를 실시한 이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 및 체납처분을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정리보류를 적용하여 해당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운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2〉 지방세 세목별 불납결손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불납결손액	배분금액 부족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방불명	무재산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면제	국세결손	평가액 부족	기타
합계	111,111	56	733	17,291	2,089	73,216	5	185	12,862	4,669
당해연도수입	12,937	2	4	-	459	8,945	0.1	34	1,707	1,782
취득세	269	-	-	-	11	51	-	-	83	123
주민세	900	0.05	0.5	-	0.8	555	-	0.1	32	311
재산세	754	-	0.4	-	45	143	-	8	151	404
자동차세	1,020	0.6	4	-	14	428	0.1	4	199	367
지방소득세	9,991	1	0.1	-	386	7,765	-	21	1,239	575
지역자원시설세	57	-	0.2	-	7	13	-	1	12	21
지방교육세	611	0.1	1	-	13	294	0.03	3	109	187
지난년도수입	97,505	53	727	17,291	1,608	63,962	5	145	11,032	2,67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⑷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회계연도중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세수가 가감되는 세입원으로서 시세 수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재원의 안정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22년도 예산편성시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세외수입은 연평균 △2.0%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예산액(1조 8,882억 7,100만원)보다 △29.2%, △5,516억 6,900만원 감소된 1조 3,366억 100만원이 실제 수납된 것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중 **이자수입**은 1,212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코픽스(COFIX) 금리인상등으로 인해 40.2%, 487억 6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사업수입**은 9,49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DMC 랜드마크용지 매각(7,500억원) 불발 등으로 △79.6%, △7,561억 400만원 부족 수납이 발생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산액(1조 4,238억 8,900만원)보다 △50.6%, △7,211억 4,000만원 감소된 7,027억 4,9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 임시적 세외수입중 **보조금 반환수입**은 1,789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예산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 등의 사유로 63.4%, 1,134억 3,800만원 초과 수납되는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4,564억 9,600만원)보다 36.1%, 1,648억 4,100만원 증가된 6,213억 3,700만원이 실제수납된 것으로 확인됨

〈표 3-13〉 일반회계 세외수입 결산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예산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예산액	실제 수납액	수납률
세외수입	1,888,271	1,336,601	70.8	1,752,711	1,115,326	63.6	1,704,504	856,690	50.3
경상적 세외수입	1,423,889	702,749	49.4	1,250,794	523,116	41.8	1,276,804	428,242	33.5
재산 임대수입	154,234	137,268	89.0	144,847	120,742	83.3	152,550	111,039	72.8
사용료 수입	142,832	148,134	103.7	148,041	116,739	78.8	136,264	105,044	77.1
수수료 수입	44,616	44,379	99.5	40,390	54,626	135.2	2,698	2,590	96.0
사업수입 주1)	949,551	193,447	20.4	881,440	166,027	18.8	927,682	169,503	18.3
징수교부금 수입	11,383	9,541	83.8	14,024	10,912	77.8	14,715	11,036	75.0
이자수입	121,271	169,978	140.2	22,050	54,067	245.2	42,892	29,026	67.7
임시적 세외수입	456,496	621,337	136.1	494,477	587,341	118.7	427,700	428,448	100.2
재산매각 수입	52,835	56,573	107.1	106,761	15,806	14.8	57,956	30,109	52.0
자치단체 간부담금	14,599	13,641	93.4	10,598	10,591	99.9	14,694	14,003	95.3
보조금 반환수입	178,922	292,360	163.4	141,413	303,641	214.7	7,038	9,431	134.0
기타수입	180,852	221,681	122.6	204,387	218,526	106.9	319,943	354,701	110.9
지난년도 수입	29,288	37,080	126.6	31,316	38,775	123.8	28,068	20,201	72.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884	12,514	158.7	7,439	4,868	65.4	-	-	-
과징금	317	1,916	603.4	410	838	204.1	-	-	-
이행강제금	0	0	-	-	-	-	-	-	-
변상금	3,371	7,899	234.3	3,334	4,942	148.2	-	-	-
과태료	4,062	2,637	64.9	3,562	2,830	79.5	-	-	-
환수금	-	9	-	-	95,859	-	-	-	-
부담금	133	52	39.0	131	△3,838	△2918.0	-	-	-

주1) 매각사업수입 △7,500억원(DMC 랜드마크용지) 포함

⑸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 수입은 대표적인 의존재원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①보통교부세, ②특별교부세, ③부동산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되나, 서울시에는 ①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 ②특별교부세, ④소방안전교부세가 교부되고 있음

〈표 3-14〉 지방교부세 세입결산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실제수납액	예 산 액 대 비 실제수납액 차 이
		본 예 산	추 경 예 산	간 주 처 리		
	Ⓐ=Ⓑ+Ⓒ+Ⓓ	Ⓑ	Ⓒ	Ⓓ	Ⓔ	Ⓕ=Ⓔ-Ⓐ
지 방 교 부 세	266,946	200,228	52,532	14,185	268,342	1,397
보 통 교 부 세	220,579	168,930	51,649	-	220,579	0
특 별 교 부 세	14,185	-	-	14,185	15,582	1,397
소방안전교부세	32,181	31,298	883	-	32,181	0

- 보통교부세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본예산에 1,689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소방안전교부세는 본예산에 312억 9,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 보통교부세의 경우 ’22년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행정안전부가 당초 내시보다 36억 7,400만원 증액된 1,726억 400만원으로 확정통보 하였으나 회계연도 개시이후 행정안전부가 지난 ’21회계연도 보통세 정산분(153억 4,500만원)을 추가 통보하고, 정부의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교부금액(2,205억 7,900만원)을 변경통지 함에 따라 기정예산(1,689억 3,000만원)보다 516억 4,900만원 증액된 2,205억 7,9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바 있음

- 소방안전교부세는 당초 본예산에 31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행정안전부가 지난 '22년 4월, '21년도 세계잉여금 정산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8억 8,300만원)을 추가 교부하는 것으로 통보함에 따라 8억 8,300만원 증액된 321억 8,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 아울러 '22회계연도중 예산총칙에 근거하여 간주처리한 141억 8,500만원을 특별교부세로 세입조치함에 따라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세입예산액(2,669억 4,600만원)보다 세입결산액(2,683억 4,200만원)이 초과수납(13억 9,7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됨

❍ 지난 '14년도에 개정된 관련 법령은 분권교부세로 교부되던 금액을 '19년도까지 보통교부세로 교부하는 것으로 한정하되 2020년도 이후에는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서울시는 지난 '22년 11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부서장회의'에서 분권교부세 보전분 제도 원안유지 의견을 제출하여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교부기한을 '25년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한 바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 구체적인 공문을 받은 바가 없는 구두계약에 불과하여 향후 보통교부세 교부액 현실화 및 교부 재원의 안정성이 담보되도록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⑹ 국고보조금등 관련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특정 사무 또는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경비의 용도를 지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 관련 기준에는 세입과목중 **국고보조금등(511)**으로 편성하되, ①중앙정부에서 통보한 국고보조금,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수입, ③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각종 기금에서 지원되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세입처리 하도록 정하고 있어 서울시도 동 기준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수납한 것임

○ '22회계연도 세입결산 결과,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은 6조 3,955억 1,9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5,204억 7,200만원)보다 △1.9%, △1,249억 5,300만원이 부족수령된 바,

- 결산결과를 세입과목별로 검토하면, ①**국고보조금(511-01)**의 경우, 6조 547억 5,2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6조 1,874억 9,000만원)보다 △2.1%, △1,327억 9,200만원이 부족수령 되었으며,

-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의 경우, 465억 2,4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452억 4,500만원)보다 2.8%, 12억 7,900만원이 초과수령 되고,

- ③**기금(511-03)**의 경우, 2,942억 4,100만원이 실제수납 되어 예산액(2,877억 3,600만원)보다 2.3%, 65억 500만원이 초과수령된 것임

〈표 3-15〉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 과목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실제수납액		예산액 대비 부족수령액	
			수납률		부족수령률
	(A)	(B)	(B)/(A)	(C)=(B)-(A)	(C)/(A)
일반회계 국고보조금등(511)	6,520,472	6,395,519	98.1	△124,953	△1.9
국고보조금(511-01)	6,187,490	6,054,752	97.9	△132,792	△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511-02)	45,245	46,524	102.8	1,279	2.8
기금(511-03)	287,736	294,241	102.3	6,505	2.3

※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결산서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표 3-16〉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별 세입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A)	실제수납액 (B)	부족수령액 (B)-(A)
계			
일 반 회 계 주1)	6,520,472	6,395,519	△124,953
특 별 회 계	2,315,146	2,039,900	△275,246
기 타 특 별 회 계 주1)	2,312,276	2,037,730	△274,54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9,793	118,789	△11,004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183,969	183,964	△5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7,517	17,517	-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909,834	674,605	△235,229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132,822	131,855	△966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33,167	32,071	△1,096
학 교 용 지 부 담 금 특 별 회 계	-	-	-
의 료 급 여 기 금 특 별 회 계	868,001	842,480	△25,520
한 강 수 질 개 선 특 별 회 계	30,178	29,454	△723
소 방 특 별 회 계	6,995	6,995	-
공 기 업 특 별 회 계 주2)	2,870	2,170	△700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2,170	2,170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700	-	△700

※ 백만원 단위 미만 절사한 것임

주1)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①국고보조금(511-01)

②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511-02)

③기금(511-03)을 포함한

국고보조금등(511)에 대한 세입결산 현황임

주2)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①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173)중 국고보조금수입(173-01)과

②타회계전입금수익(672)중 국고보조금(672-06)에 대한 수입결산 현황임

자료근거 : ① 「2022회계연도 결산서」 중 "세입결산"

② 「202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9기)」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③ 「2022년도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중 "수입예산결산보고서"

3. 특별회계 세입결산

❍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5조 709억 8,400만원)의 98.6%, 14조 8,575억 3,9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미수납액(2,123억 4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 미수납액(1,186억 7,200만원)보다 78.9%, 936억 3,200만원 증가하였으나 불납결손액(11억 4,000만원)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394.9%, △33억 6,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3-17〉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미 수 납 액		불납결손액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 비율	
2 0 2 2	15,070,984	14,857,539	98.6	212,304	1.4	1,140
2 0 2 1	13,809,285	13,686,110	99.1	118,672	0.9	4,502
2 0 2 0	13,850,082	13,666,870	98.7	181,735	1.3	1,47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23. 4.29)

❍ 그러나 특별회계중 ①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520억 1,300만원), ②수도사업특별회계(509억 6,000만원), ③교통사업특별회계(381억 1,000만원), ④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371억 7,200만원), ⑤주택사업특별회계(281억 7,500만원) 등에서 대규모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어 해당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세수확보 방안이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18〉 특별회계별 미수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불납결손 (징수결정액대비)	미수납액 (징수결정액대비)
합 계	15,070,984	14,857,539 (98.6)	1,140 (0.1)	212,304 (1.4)
기타특별회계	13,163,607	13,054,089 (99.2)	187 (0.0)	109,330 (0.8)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191,057	2,191,057 (100.0)	- (-)	- (-)
③ 교통사업특별회계	2,343,088	2,304,803 (98.4)	174 (0.0)	38,110 (1.6)
④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36,317	299,145 (88.9)	- (-)	37,172 (11.1)
⑤ 주택사업특별회계	2,981,464	2,953,289 (99.1)	- (-)	28,175 (0.9)
도시개발특별회계	2,402,336	2,401,777 (100.0)	- (-)	558 (0.0)
균형발전특별회계	208,794	208,794 (100.0)	- (-)	-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5,197	10,086 (66.4)	- (-)	5,111 (33.6)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02,188	1,702,188 (100.0)	-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3,115	33,115 (100.0)	- (-)	- (-)
소방특별회계	950,045	949,830 (99.9)	12 (0.0)	202 (0.0)
공기업특별회계	1,907,377	1,803,449 (94.6)	953 (0.0)	102,973 (5.4)
② 수도사업특별회계	898,548	846,853 (94.2)	735 (0.1)	50,960 (5.7)
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08,828	956,596 (94.8)	218 (0.0)	52,013 (5.2)

-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미수납액(381억 1,000만원) 중 93.3%, 355억 6,300만원이 납세태만(납부여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제출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미수납액(371억 7,200만원) 중 80.2%, 298억 1,800만원이 납기미도래인 것으로 확인됨

〈표 3-19〉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미수납액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 또는 부도	채무자 회생법에 의한유예	격리 또는 입원	소송계류	국외이주	자금압박	기 타	납기미도래
합 계		109,330	601	58	36,089	1,571	921	-	1,256	-	10,649	23,704	34,478
		(100.0)	(0.6)	(0.1)	(33.0)	(1.4)	(0.8)	(-)	(1.1)	(-)	(9.7)	(21.7)	(31.5)
	교통사업	38,110	567	50	35,563	22	921	-	-	-	-	985	-
		(100.0)	(1.5)	(0.1)	(93.3)	(0.1)	(2.4)	(-)	(-)	(-)	(-)	(2.6)	(-)
	광역교통	37,172	-	-	411	734	-	-	67	-	9	6,130	29,818
		(100.0)	(0.0)	(0.0)	(1.1)	(2.0)	(0.0)	(0.0)	(0.2)	(0.0)	(0.0)	(16.5)	(80.2)
	도시개발	558	-	-	-	-	-	-	-	-	-	558	-
		(100.0)	(-)	(-)	(-)	(-)	(-)	(-)	(-)	(-)	(-)	(100.0)	(-)
	주택사업	28,175	-	-	-	-	-	-	-	-	10,639	12,914	4,622
		(100.0)	(-)	(-)	(-)	(-)	(-)	(-)	(-)	(-)	(37.8)	(45.8)	(16.4)
	학교용지	5,111	-	-	-	806	-	-	1,188	-	-	3,114	-
		(100.0)	(-)	(-)	(0.0)	(15.8)	(-)	(-)	(23.3)	(-)	(-)	(60.9)	(-)
	소방	202	34	8	112	7	-	-	-	-	-	-	38
		(100.0)	(17.0)	(4.0)	(55.9)	(3.9)	(-)	(-)	(-)	(-)	(-)	(-)	(18.9)
	균형발전	0.3	-	-	-	-	-	-	-	-	-	0.3	-
		(100.0)	(-)	(-)	(-)	(-)	(-)	(-)	(-)	(-)	(-)	(100.0)	(-)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결정액(8,985억 4,800만원)의 94.2%인 8,468억 5,300만원이 실제수납 된 것으로 제출됨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8,985억 4,8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요금감면 해제와 경기활성화 등으로 인해 직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7,989억 1,800만원)보다 12.5%, 996억 3,000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의 경우에도 직전 회계연도(137억 3,400만원)보다 371.0%, 372억 2,600만원 증가된 509억 6,0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미수납액(509억 6,000만원) 중 **납기미도래**(납부기한이 결산연도 이후이기 때문에 체납액은 아니지만 수납되지 않은 금액)를 사유로 68.7% 350억 1,8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23년도에는 수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0〉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2~'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2	898,548 (100.0)	846,853 (100.0)	735 (100.0)	50,960 (100.0)
당해연도분	885,307 98.5	836,256 98.7	0 0.0	49,051 (96.3)
지난년도수입	13,241 (1.5)	10,596 (1.3)	735 (100.0)	1,909 (3.7)
2021	798,918 (100.0)	781,516 (100.0)	3,667 (100.0)	13,734 (100.0)
당해연도분	779,319 (97.5)	767,808 (98.2)	- (-)	11,515 (83.8)
지난년도수입	19,599 (2.5)	13,713 (1.8)	3,667 (100.0)	2,218 (16.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5 ('23. 4.29)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1조 88억 2,800만원)의 94.8%인 9,565억 9,600만원이 실제수납된 바,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1조 88억 2,8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 징수결정액(1조 20억 7,700만원)보다 0.7%, 67억 5,100만원 증가하였으나, 미수납액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209억 300만원)보다 248.8%, 311억 1,000만원 증가한 520억 1,3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은 520억 1,300만원이고, 이중 **납기미도래**를 사유로 68.7% 357억 4,100만원이 미수납된 것으로 확인되어 ’23년도에는 반드시 수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3-2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 (’22~’2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2		1,008,828 (100.0)	956,596 (100.0)	218 (100.0)	52,013 (100.0)
	당해연도분	989,383 (98.1)	944,200 (98.7)	0 -	45,183 (86.9)
	지난년도수입	19,444 (1.9)	12,396 (1.3)	218 (100.0)	6,829 (13.1)
2021		1,002,077 (100.0)	980,722 (100.0)	451 (100.0)	20,903 (100.0)
	당해연도분	982,513 (98.0)	966,647 (98.6)	- -	17,517 (83.8)
	지난년도수입	19,564 (2.0)	14,075 (1.4)	451 (100.0)	3,386 (16.2)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5 (’23. 4.29)

Ⅳ. 세출결산

1. 불용액 관련

⑴ 불용액(집행잔액) 현황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은 예산현액(53조 4,687억 9,900만원)의 3.7%인 1조 9,951억 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1,806억 8,100만원)보다 8,144억 2,300만원 증가한 것임

❍ 불용액은 ①회계연도중 자연재해나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②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바, ’22회계연도에는 ③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업취소 등으로 발생된 사례도 있어 ’2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사례 모두를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결과로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는 결산승인안 심사 시마다 매년 불용액 발생규모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22회계연도에는 두 번의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회계연도중 집행하기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 ’22년 5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및 ’22년 9월, 50인 이상 행사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환경적 제약이 완화되었음에도 2조원에 육박하는 불용액이 발생된 바, 불용액 규모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회계연도중 감액 대상 사업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결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표 4-1〉 회계연도별 불용액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 계 연 도	예 산 현 액	불 용 액 주1)	불 용 률
2 0 2 2	53,468,799	1,995,105	3.7
2 0 2 1	47,759,128	1,180,681	2.5
2 0 2 0	46,798,514	1,223,944	2.6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5,310억 7,400만원)보다 3,293억 8,300만원 증가한 8,604억 5,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특별회계는 직전 회계연도(6,496억 700만원)보다 4,850억 4,000만원 증가한 1조 1,346억 4,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 공기업특별회계중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49억원(예산현액 대비 10.2%)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1,080억원)보다 불용률이 △0.4% 포인트 감소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3억원(예산현액 대비 8.1%)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563억원)보다 불용액이 24.9%, 140억 5,700만원 증가하였음

-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808억 7,900만원(예산현액 대비 16.0%)이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1,545억 3,600만원)보다 불용액이 211.1%, 3,263억 4,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444억 6,000만원(예산현액 대비 12.7%) 불용되어 직전 회계연도(42억 9,700만원)보다 불용액이 550.4%, 401억 6,300만원 증가하였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292억 1400만원)중 90.8%, 265억 1,300만원이 불용된 바, 관련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법정전출금인 학교용지매입비는 정산지연으로 예산현액(19억 9,500만원)의 0.4%, 800만원만 교육청으로 전출하여 19억 8,700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예탁금(예산현액 262억원)은 18억 2,000만원이 실제 예탁되어 예산현액 대비 93.1%, 243억 8,000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으로 제출됨

〈표 4-2〉 회계별 불용액 발생 현황 ('22~'21)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주1)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합계	53,468,799	1,995,105 (3.7)	47,759,128	1,180,681 (2.5)
일반회계	38,319,642	860,457 (2.2)	33,834,846	531,074 (1.6)
특별회계	15,149,156	1,134,647 (7.5)	13,924,281	649,607 (4.7)
기타특별회계	13,247,111	959,291 (7.2)	12,093,854	485,297 (4.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2,201,609	34,165 (1.6)	1,672,498	26,204 (1.6)
교통사업 특별회계	2,292,776	190,577 (8.3)	1,806,703	102,437 (5.7)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350,236	44,460 (12.7)	356,524	4,297 (1.2)
주택사업 특별회계	3,002,632	480,879 (16.0)	2,732,163	154,536 (5.7)
도시개발 특별회계	2,425,711	82,750 (3.4)	2,639,398	124,206 (4.7)
균형발전 특별회계	208,872	11,253 (5.4)	244,732	17,098 (7.0)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29,214	26,513 (90.8)	29,965	4,924 (16.4)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752,290	68,420 (3.9)	1,677,966	11,264 (0.7)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33,731	978 (2.9)	33,966	2,548 (7.5)
소방 특별회계 주2)	950,036	19,293 (2.0)	899,934	37,781 (4.2)
공기업특별회계	1,902,045	175,356 (9.2)	1,830,427	164,310 (9.0)
수도사업 특별회계	867,963	70,357 (8.1)	815,087	56,300 (6.9)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34,081	104,998 (10.2)	1,015,340	108,009 (10.6)

※ 주1)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비율임

주2)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19.12.10 제정, '21. 1. 1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방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조례」('21. 3.25 제정, '21. 3.25 시행)를 제정하여 기존 "소방안전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소방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는 불용액을 발생사유별로 구분하도록 정하고 있음

〈표 4-3〉 불용액 발생사유별 현황(알반회계,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 계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주1)	예산절감액 주2)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주3)	낙찰차액 주4)	지출잔액 주5)	예비비 주6)
2022 회계연도	불용액	1,995,105	302,036	-	771,840	84,915	750,653	85,660
	구성비	100.0	15.1	-	38.7	4.3	37.6	4.3
구 분		합 계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1 회계연도	불용액	1,180,681	112,585	-	323,227	75,308	595,680	73,879
	구성비	100.0	9.5	-	7.4	6.4	50.5	6.3
구 분		합 계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2020 회계연도	불용액	1,223,944	146,583	-	347,592	59,535	635,423	34,809
	구성비	100.0	12.0	-	28.4	4.9	51.9	2.8

※ 주1) 보조금정산금액 : 보조사업 정산 후 자체재원으로 광역은 시·도비, 기초는 시·군비만 해당

주2) 예산절감 :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에 편성된 일정액을 일괄 배정하지 않아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주3)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행정주체의 자의(自意)에 의한 계획변경 취소, 행정객체의 의지(他意)에 의한 사업 미시행

-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의 변경이나 취소
- 지방자치단체 자체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 예산을 집행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로 주민이나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없이 예산을 미집행한 때
  - 집단민원 발생으로 쓰레기매립장건립사업 미착공
  - 토지소유자의 합의 불가로 도로사업 미착공
  - 행정소송 발생으로 보상금 미집행
  - 정원이 20명인데 충원을 할 수 없어 실제인원 10명으로 직제를 운영함으로써 발생된 잔액
  - 국·과 단위 홍보물 제작이 시·도 단위 홍보물 발간으로 국·과 단위 홍보물 미제작으로 인한 잔액

주4) 낙찰차액 : 발주금액과 계약금액의 차이금액 중 기중 재사용금액을 제외한 잔액

주5) 지출잔액 : 세출예산을 배정 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

주6) 예비비 : 예비비 과목(801)의 잔액을 기재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22회계연도에 발생한 불용액중 38.7%, 7,718억 4,000만원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3,232억 2,700만원)보다 4,486억 1,300만원 증가하였고,

❍ **지출잔액**의 경우, 전체 불용액의 37.6%, 7,506억 5,300만원으로 구분되어 직전 회계연도(5,956억 8,000만원)보다 1,549억 7,3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2회계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완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감액조정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지출잔액**, **보조금 정산잔액** 등 발생사유별 불용액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모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은 ①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지침이 변경 또는 취소되었거나, ②서울시 자체적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③집단민원, 토지소유자 합의 불가 등의 사유로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작성할 것으로 정하고 있음

❍ 실·본부·국중 불용액 발생규모가 가장 큰 주택정책실은 서울시 전체 불용액(1조 9,951억 500만원)중 25.4%, 5,068억 9,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3,936억 1,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제출되고,

- 평생교육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불용액중 11.6%, 2,316억 1,9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중 99.5%, 2,305억 8,9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되었음

- 도시교통실의 경우에도 2,159억 5,400만원이 불용되고 불용액중 54.4%, 1,175억 5,200만원이 **지출잔액**을 사유로, 877억 4,500만원(40.6%)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을 사유로 불용된 것으로 제출됨

- 아울러 복지정책실의 불용액(1,778억 7,000만원)중 47.8%, 736억 2,400만원이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한 불용액이며 700억 5,000만원(45.5%)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되었음

- 복지정책실은 매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과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동 유형의 불용액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감액된 것으로 변경내시됨에 따라 이미 편성된 국비에 대해 세입·세출예산을 감액조정 하여야 함에도 추경을 통해 감액조정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이른 바 '재원없는 불용' 과

- 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가 '보조금 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된 것이 다수인 것으로 향후에는 사업부서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총괄부서도 국고보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22회계연도의 경우,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조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17회계연도부터 지속적으로 1조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고, '22회계연도에는 2조원에 근접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예산편성시 소요예산에 대한 정밀 추계를 기반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회계연도중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 실·본부·국별 불용액 발생사유[주1)]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불용액 (계)		발생사유별 불용액					
		구성비[주2)]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1,995,105**	**100.0**	**302,036**	**-**	**771,840**	**84,915**	**750,653**	**85,660**
주택정책실	506,895	25.4	58,115	-	393,615	122	53,982	1,059
평생교육국	231,619	11.6	9	-	19	1,000	230,589	-
도시교통실	215,954	10.8	6,917	-	87,745	2,331	117,552	1,407
복지정책실	177,870	8.9	86,791	-	53,926	106	37,045	-
시민건강국	154,004	7.7	73,624	-	70,050	789	9,540	-
물순환안전국	114,996	5.8	1,669	-	13,239	31,650	67,551	885
여성가족정책실	89,435	4.5	39,233	-	28,633	3871	21,180	-
기획조정실	85,248	4.3	-	-	59	86	7,636	77,465
상수도사업본부	70,357	3.5	7,912	-	1,455	12,547	43,698	4,743
도시기반시설본부	53,213	2.7	773	-	43,628	153	8,559	97
안전총괄실	49,434	2.5	1,152	-	22,989	13,366	11,925	-
기후환경본부	35,664	1.8	16,903	-	3,087	1,118	14,555	-
경제정책실	31,371	1.6	1,711	-	2,811	1,165	25,682	-
균형발전본부	30,563	1.5	316	-	21,360	1,244	7,642	-
푸른도시여가국	23,094	1.2	3,475	-	7,060	5,007	7,550	-
재무국	20,818	1.0	-	-	33	171	20,613	-
소방재난본부	19,293	1.0	513	-	744	1,700	16,335	-
행정국	16,360	0.8	1	-	3,201	559	12,597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0,790	0.5	1,999	-	4,637	200	3,952	-
미래청년기획단	10,242	0.5	66	-	-	155	10	-
디지털정책관	9,250	0.5	17	-	269	4,340	4,623	-
문화본부	8,776	0.4	577	-	3,030	1,432	3,736	-
한강사업본부	7,696	0.4	12	-	1,988	2,923	2,771	-
홍보기획관	5,062	0.3	-	-	3,743	492	826	-
의회사무처	4,423	0.2	-	-	1,793	242	2,387	-
관광체육국	2,941	0.1	219	-	208	128	2,386	-
미래공간기획단	2,624	0.1	-	-	1,736	385	502	-
디자인정책관	2,066	0.1	-	-	411	483	1,171	-
인재개발원	1,630	0.1	-	-	63	78	1,489	-
서울역사박물관	735	0.0	13	-	27	101	593	-
도시계획국	580	0.0	-	-	40	200	338	-
감사위원회	553	0.0	-	-	123	17	411	-
시립미술관	501	0.0	-	-	0	186	315	-
자치경찰위원회	303	0.0	-	-	60	6	236	-
비상기획관	276	0.0	7	-	10	0	259	-
민생사법경찰단	190	0.0	-	-	10	2	178	-
기술심사담당관	157	0.0	-	-	11	20	126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75	0.0	-	-	10	-	65	-
대변인	27	0.0	-	-	-	5	21	-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는 전체 불용액 중 각 실·본부·국별 불용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⑵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업 및 이월예산 불용사업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 발생규모가 50억원 이상 발생한 사업은 46건, 1조 3,193억 7,500만원으로 ’22회계연도중 발생된 불용액(1조 9,951억 100만원)의 66.1%에 해당됨

〈표 4-5A〉 불용액 발생규모 5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평생교육국	지방교육세 전출	2,224,856	190,308	8.6	-
주택정책실	청년 매입임대 사업	396,025	155,672	39.3	-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384,350	138,868	36.1	-
복지정책실	의료급여사업	1,749,396	68,415	3.9	-
도시교통실	운수업계(택시) 유가보조금 지원	136,404	64,313	47.1	-
주택정책실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108,092	55,515	51.4	-
주택정책실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	219,272	49,225	22.4	-
주택정책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사업	218,692	48,367	22.1	-
도시교통실	운수업계(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162,742	45,833	28.2	-
주택정책실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229,784	39,548	17.2	-
주택정책실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144,368	39,046	27.0	-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8,316	32,092	16.2	-
도시교통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교통개선분담금계정)	33,800	30,700	90.8	-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5,311	29,631	21.9	-
복지정책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867,985	25,505	2.9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4-5B〉 불용액 발생규모 5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주택정책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6,200	24,380	93.1	-
주택정책실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101,585	23,407	23.0	-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562,599	14,764	2.6	-
평생교육국	담배소비세 전출	281,201	14,752	5.2	-
복지정책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008,449	13,667	1.4	-
도시교통실	운수업계(버스) 연료보조금	33,966	13,632	40.1	-
복지정책실	기초연금 지급	2,740,152	12,011	0.4	-
경제정책실	서울형 뉴딜일자리	84,721	11,020	13.0	508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307,870	10,381	3.4	36,475
안전총괄실	고가차도 철거	12,044	10,141	84.2	194
균형발전본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1차)	10,000	10,000	100.0	-
도시교통실	1~8호선 코로나19 대응 지원	28,585	9,910	34.7	-
상수도사업본부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 지원	16,294	9,426	57.9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02,903	8,913	8.7	-
주택정책실	공공원룸주택 매입·건설 공급	27,430	8,800	32.1	-
주택정책실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78,695	8,768	11.1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14,894	8,362	7.3	3,357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표 4-5C〉 불용액 발생규모 50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다음연도 이월액
상수도사업본부	정 수 센 터 시 설 정 비	54,986	8,223	15.0	5,710
주 택 정 책 실	시 유 지 활 용 공 공 주 택 공 급	28,352	7,614	26.9	-
물 순 환 안 전 국	서 운 로 일 대 저 지 고 지 수 로 정 비	17,901	7,454	41.6	1,744
주 택 정 책 실	역 세 권 공 공 임 대 주 택 등 매 입	15,188	7,216	47.5	-
여성가족정책실	첫 만 남 이 용 권 지 원	66,348	7,210	10.9	-
여성가족정책실	영 아 수 당 지 원	79,920	7,065	8.8	-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6,489	7,053	42.8	-
평 생 교 육 국	친 환 경 학 교 급 식 지 원	218,329	6,894	3.2	-
여성가족정책실	지 역 아 동 센 터 운 영 지 원 (자 체)	24,027	6,554	27.3	-
안 전 총 괄 실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 성 사 업	6,685	6,473	96.8	-
도 시 교 통 실	지하철 9호선 2·3단계구간 위탁운영관리	19,739	6,027	30.5	-
여성가족정책실	가 정 양 육 수 당 지 원	115,422	5,737	5.0	-
기 후 환 경 본 부	전 기 차 충 전 인 프 라 구 축	36,432	5,479	15.0	12,048
여성가족정책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36,256	5,004	13.8	-

※ 예비비 및 반환금, 인력운영비 제외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소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 가내시('21. 9)를 근거로 '22년도 본예산에 1조 109억 4,400만원(국비 6,868억 1,600만원 포함)을 편성하였으나,

- '22년 8월, 기초생활급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감액분(△16억 8,300만원)과 대응되는 시비(△8억 1,200만원)를 다른 세부사업(해산장제 급여)으로 변경하였으며

- '22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기 편성액(국비 6,868억 1,600만원)보다 최종 △75억원 감액한 6,776억 3,300만원으로 변경내시하고, 전액(6,776억 3,300만원)을 교부한 바,

〈표 4-6〉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및 편성·수령현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단위 : 백만원)

중앙정부 내시현황					국비 예산액	국비 수령액	예산액 대비 부족 수령액
가내시 ('21.9)	확정 내시 ('21.12)	1차 변경 내시 ('22.8)	2차 변경 내시 ('22.10.13)	3차 변경 내시 ('22.10.19)	(가)	(나)	(나)-(가)
686,816	686,816	685,133 주1)	678,733	677,633	685,133	677,633	△7,500

※ 자료근거 : ①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4061 ('22. 8.10)
②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5678 ('22. 5.15) 등

주1) '22년 8월 1차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편성액중 △16억 8,300만원을 단위사업내 다른 세부사업(해산장제 급여 16억 8,300만원 증액)으로 변경사용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1조 84억 4,900만원(국비 6,776억 3,300만원)중 국비 75억원이 포함된 136억 6,7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136억 6,700만원)은 ①국비 편성액(6,851억 3,300만원)과 수령액(6,776억 3,300만원)간 차액 75억원(**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재원없는 불용'사례이며 ②국비에 대응편성된 시비 61억 6,700만원은 **보조금정산잔액**을 사유로 불용처리된 것으로 확인됨

〈표 4-7〉 불용액 발생현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 용 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 산 절 감 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 비 비
1,008,449	13,667 (1.3)	6,167 (0.6)	- -	7,500 (0.7)	-	-	-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동 사업의 경우,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의결('22. 8. 5)된 후 변경내시가 통보('22.10.19)되어 추가적인 추경을 통해 국비와 이에 대응편성된 시비를 감액조정 하는 것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장부상 허수만 발생시킨 국비 불용액(75억원)은 물론 대응편성된 시(61억 6,700만원)까지 불용됨으로써 결산상 비효율적 재정운용 결과를 발생시킨 사례로 사료됨

❍ 복지정책실 장애인지립지원과 소관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은 '22년도 본예산에 7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1.8%, 30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58.1%, 42억 4,700만원은 **지출잔액**을 사유로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산출기초로 한국전력 전기요금 감면 대상인 중증장애인 10만세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57,073세대가 감면 신청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보다 정밀한 산출기초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 발생규모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 불용액 발생현황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301	4,247 (58.1)	-	-	-	-	4,247 (58.1)	-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보건복지부 가내시('21. 9)를 근거로 '22년도 본예산에 98억 2,100만원(국비 55억 7,800만원 포함)이 편성되었으나,

- '22년 8월,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대한 국비 교부액을 기 편성액(국비 55억 7,800만원)보다 △27억 8,600만원 감액한 27억 9,200만원으로 변경내시 하고, 전액(27억 9,200만원)을 교부한 바,

〈표 4-9〉 국고보조금 내시현황 및 편성·수령현황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 : 백만원)

중앙정부 내시현황				국비 예산액	국비 수령액	예산액 대비 부족 수령액
가내시 ('21.9)	확정 내시 ('21.12)	1차 변경 내시 ('22.3)	2차 변경 내시 ('22.8)	(가)	(나)	(나)-(가)
5,578	4,247	2,739	2,792	5,578	2,792	△2,786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결산결과 발생된 불용액(28억 8,300만원)중 국비 편성액(55억 7,800만원)과 수령액(27억 9,200만원)간 차액 27억 8,6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이른바 '재원없는 불용'으로 확인됨

-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적기에 소요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사 등의 절차가 순연될 가능성이 높고, 사업 완료까지 시민이 불편과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 이미 편성된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가 필요하나,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019회계연도부터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 이월 또한 발생되고 있어 세출 예산 집행에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10〉 불용액 발생현황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불용액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0,358[주1)]	2,883 (27.8)	94 (0.9)	-	2,786 (26.8)	1 (0.0)	2 (0.0)	-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주1) '21회계연도로부터 명시이월된 5억 3,700만원 포함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은 예산현액 1,148억 9,400만원중 7.3%, 83억 6,2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의 불용액(83억 6,200만원)중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82억 9,000만원으로 국비가 당초 편성액(280억 7,300만원) 보다 △82억 9,000만원 부족 수령됨에 따라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되고 국비에 대응 편성된 시비도 **보조금정산잔액**으로 1,600만원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에서 발생된 불용액중 82억 9,000만원은 교부되지 않는 국비로서 감액조정 하더라도 해당 재원을 다른 사업에서 사용할 수 없어 감추경에 대한 실익이 없으나,

▪ 기 편성된 국비가 회계연도중 교부되지 않는 것이 확실시됨에도 예산액을 감액조정 하지 않는다면 결국 세입결산에는 미수납이 발생되고, 세출결산 결과에는 불용액 발생규모가 증가되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회계연도중 감추경이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11〉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불용액 발생현황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명시이월	불용액						
			보조금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114,894[주1)]	3,357 (2.9)	8,362 (7.3)	16 (0.01)	-	8,290 (7.2)	-	55 (0.04)	-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 ) 안의 수치는 예산현액 대비 비율임

주1) 제2회 추경 108억 700만원 증액, 전년도 명시이월 134억 2,500만원 포함

- 또한 동 사업의 '22년도 당초 예산(906억 6,200만원)은 국비 280억 7,300만원과 시비 45억 8,900만원 그리고 지방채 580억원을 발행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한 것이나,

- 사업 예산중 차량기지 손실보상 소송 등 판결 지연에 따라 33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음에도 '22년 12월 12일, 4.45% 이율로 1개월 만기 지방채 580억원 전액을 발행한 것으로

- 명시이월한 만큼 지방채 발행을 유보하고, '자금없는 이월'을 통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동 사업을 위한 지방채는 '22년 12월 12일에 발행하였음에도 동 사업은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이미 '22년 2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제출하고 있는 바,

  ▪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 그 연도 또는 매 분기의 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음에도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실물없는 장부상의 예산액만을 근거로 예산을 先집행한 것으로 사료되어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규정에는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으나,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된 시설 공사가 비상재해복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채 발행은 건전재정 운영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것으로 지방채 발행 규모, 발행 시기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회계연도중 지방채 발행 시기에 따라 당해연도 이자부담 예산규모가 변동될 수

있어 발행 시기 등의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 시기를 조정함에 있어도 법령에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지방채 발행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집행에 부적정성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의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1,300만원으로 연도말 지방채 발행(3,240억원)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돌려막기' 사례일 수도 있어 연도말 지속적인 고금리 조건에서도 지방채를 발행한 것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사료됨

〈표 4-1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①	'23년도 본예산 기편성액 ②	실잔액 ①-②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3,613	0	23,613

※ 자료근거 : 2023년도 세입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서

○ 전년도 이월예산 발생사업중 '22회계연도에도 20억원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업은 35개 사업, 1,143억 1,900만원으로 검토되며

- 해당 사업중 다음연도로 이월이 재차 발생한 사업은 14개 사업, 469억 7,600만원인 것으로 검토됨

- 특히, '21회계연도에 예산 이월이 발생된 사업중 '22회계연도에 30억원 이상 불용된 세부사업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예산현액 대비

21.9%, 296억 3,100만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예산현액 대비 7.3%, 83억 6,200만원),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예산현액 대비 11.1%, 87억 6,800만원), **위례신사선 건설(민자)**(예산현액 대비 72.6%, 34억 6,800만원) 등으로 동일한 세부사업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발생하고 있는 바,

- 반복적으로 불용 및 이월되는 사업은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에 한정하여 우선 편성하고, 예산집행시에는 이월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는 것에 집중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됨

〈표 4-13A〉 직전 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2회계연도 불용액(2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1→'22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2→'23 이월액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2,645	198,316	32,092	16.2	-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241	135,311	29,631	21.9	-
주택정책실	신혼부부청년임차보증금 지원사업	39	101,585	23,407	23.0	-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53,200	307,870	10,381	3.4	-
안전총괄실	고가차도 철거	11,144	12,044	10,141	84.2	-
주택정책실	공공주택 건설(추가8만호)	785	78,695	8,768	11.1	-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3,425	114,894	8,362	7.3	3,357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센터 시설 정비	3,961	54,986	8,223	15.0	-
물순환안전국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정비	15,815	17,901	7,454	41.6	-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022	16,489	7,053	42.8	-
안전총괄실	백년다리(한강대교 남단 보행교) 조성사업	6,685	6,685	6,473	96.8	-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5,385	36,432	5,479	15.0	5,749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계량기 교체	1,859	21,426	4,825	22.5	-
푸른도시여가국	월드컵공원 유지관리	4,136	12,301	4,442	36.1	2,007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1,166	22,930	3,691	16.1	-
물순환안전국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044	22,274	3,675	16.5	-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신사선 건설(민자)	3,470	4,780	3,468	72.6	1,300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29,839	42,939	3,357	7.8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증용역	3,357	3,357	3,278	97.7	-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79	26,611	3,254	12.2	-

〈표 4-13B〉 직전 회계연도 이월 발생사업중 '22회계연도 불용액(20억원이상) 세부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21→'22 이월액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22→'23 이월액
안전총괄실	성산대교 성능개선	8,055	10,913	3,132	28.7	-
균형발전본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13,520	14,341	3,112	21.7	-
주택정책실	옥인동 역사문화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4,119	8,050	3,025	37.6	736
행정국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560	4,075	2,992	73.4	-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9,583	21,949	2,929	13.3	1,456
상수도사업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400mm이상) 정비	10,456	50,676	2,885	5.7	16,842
물순환안전국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1,889	20,665	2,833	13.7	2,365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37	10,358	2,883	27.8	-
안전총괄실	노후 포장도로 정비	904	80,298	2,881	3.6	3,870
물순환안전국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및 개선	1,825	10,395	2,701	26.0	2,030
안전총괄실	한강상 교량 연결로 구조개선(올림픽대교 남단)	784	16,380	2,669	13.3	1,426
물순환안전국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수보강	2,045	20,091	2,573	12.8	-
균형발전본부	마장축산물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098	3,118	2,292	73.5	558
안전총괄실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개선	519	4,999	2,247	44.9	1,000
물순환안전국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8,841	17,441	2,131	12.6	4,280

⑶ 기타 및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

○ 서울시가 '22회계연도에 추진한 12개 세부사업은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4〉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균형발전본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1차)	10,000	10,000
도시교통실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	2,134	2,134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899	899
도시교통실	GTX-B 여의도환승센터 기본계획	800	800
안전총괄실	영등포시장로터리 일대 지하공간개발 민간투자사업	770	770
소방재난본부	동북권 시민안전체험관 등 건립	738	738
안전총괄실	한남1고가 방음벽 설치	500	500
주택정책실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438	438
물순환안전국	청계천 가로수 보호틀(태양광) 설치	400	400
도시교통실	티머니 복합정산을 위한 타당성 용역	400	400
푸른도시여가국	위례공원 유지관리	395	395
미래공간기획관	강북어린이 전문병원 및 공공청사 복합개발 조성	300	300

※ 예비비 및 반환금 제외
예산현액(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으로 한정

○ 균형발전본부 소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자치단체 부담금(1차)**은 예산현액 100억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20년 3월,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20. 3.13)하고, 관련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21. 9.10)을 거쳐 상생발전지원금 총 500억원(서울시 350억원, 노원구 150억원)중 서울시 부담금(1차) 100억원 편성한 것이나,

- 의정부시의 정책 환경변화(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에 대한 취소 공약)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진행을 중단하여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 관련 협약에는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이 고시되면 100억원 규모의 1차 지원금(총 지원예산의 30%)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고시까지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1차 지원금 100억원 전액을 편성한 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임

- 동 사업은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추경을 통해 사업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한정된 세출재원의 효율적 편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교통실 소관 **공영차고지 CNG충전소 설치**는 '22년도 본예산 편성시 3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변경사용(△11억 1,500만원)이후 예산현액 21억 3,4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임

- 사업별설명서 및 변경사용 계획서를 검토하면 동 사업은 기부채납된 CNG 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협상이 결렬될 경우 서울시가 직접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한 것이나, 기존 CNG충전업체와 협상이 완료됨에 따라 시 재정을 투입하여 충전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되어 예산 현액 전액을 불용처리 한 것으로 확인함

- 동 사업은 CNG충전소 운영을 위한 협상 결렬을 대비하여 편성한 예산이

나 필요시 예비비를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으로 사료됨에도 예산을 확보한 결과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비효율적 예산 편성 사례로 판단됨

- 더욱이 CNG충전업체와의 협상은 '22년 12월이 되어서야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업예산중 34.3%에 해당하는 △11억 1,500만원을 두 차례(9월 13일, 11월 4일)에 걸쳐 감액 변경 사용한 것은 사업추진 필요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 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주택정책실 소관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예산현액 4억 3,800만원)은 '22년도 본예산 편성시 29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증금 지원 방식을 현금지원에서 융자로 변경하고자 '22년 7월, 제2회 추경 예산을 통해 일반회계 사업에서 △20억원을 감액하고, 사회복지기금의 신규 융자사업으로 20억원을 증액한 사업임에도 기금 지출계획현액과 일반회계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바,

-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한 이후에도 동일 단위사업내 다른 세부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을 변경하였고, 변경이후 예산 전액(4억 3,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기금전출금(20억원)의 경우에도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여 △18억원을 감액 변경하고, 변경이후 지출계획 현액(2억원)을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4-15〉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출 과 목	'22년도 본예산	증감액	'22년도 제2회 추경	변경내역		예산현액	불용액
				감액	증액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990	△2,000	990	△551	-	438	438
				-	551[주1)]		
기 금 전 출 금	-	2,000	2,000	△1,800		200	200
				-	1,800[주2)]		

※ 자료근거 : '22년도 결산서 재구성

주1) 주거급여수급자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주2) 저소득 주택임대료 보조(사회보장적수혜금)

- 지난 ’22년 7월,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시 우리위원회는 일반회계 사업의 기금 전출 부적정 및 사회보장사업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사전절차(사회보장 협의) 미추진에 대해 지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회보장협의 지연(’22년 11월 완료)으로 예산현액 및 기금 지출계획 현액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사료됨

- 동 사례의 경우, 사업부서의 사업 준비 미흡 및 법정 절차 미이행 등으로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야기한 사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 소관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예산현액 26억 5,000만원)의 경우, **배달종사자 민간상해보험 단체 가입 보험금** 25억원은 전액 불용처리 되고, 사무관리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00만원)중 일부만 집행(2,700만원)된 것으로 확인됨

〈표 4-16〉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		불용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1회계연도	보험금	2,500	2,467	-	32	1.3
’22회계연도	보험금	2,500	-	-	2,500	100.0
	사무관리비	120	118	98.3	2	1.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	27	90.0	3	10.0

※ ’22회계연도, ’21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동 사업은 ’21년 6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보험금 25억원을 편성한 신규 사업으로, ’21년 12월부터 ’22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22년도에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22년도 본예산에 보험금 2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22년 6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예정(’23년 7월)됨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사업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감소하여 소요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불용사례의 경우 서울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배달종사자에 대한 상해보험 사업의 보장 기간은 ’22년 12월까지 지속되고 있었으나, 그 기간 국가의 정책 환경변화,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소요예산의 불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으로 사료됨에도

- 추경예산을 통해 경정하지 않음으로써 예산현액 25억원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한 사례로 사업주관 부서에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소관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예산현액 1,682억 2,300만원중 1,673억 4,9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2,100만원)과 집행잔액(8억 5,2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결산서를 제출하였음

〈표 4-17〉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		불용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2회계연도	계	168,223	167,349	99.4	852	0.5
	사무관리비	230	29	12.6	180	78.2
	사회보장적 수혜금	2,500	1,827	73.0	672	26.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65,493	165,493	100	-	0.0

※ ’22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682억 2,300만원이 교부되어 '22년 6월 15일에 간주 처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기재하여 보고한 예산이나,

  ▪ 결산서 첨부자료의 보조금 집행현황 및 반납명세서에는 예산현액 대비 △8억 5,200만원이 부족 수납(1,673억 3,700만원)된 것으로 명시하여 제출한 바,

- 실제로는 1,682억 2,300만원 전액이 '22년 6월 15일 수납되어 간주 처리까지 마쳤으나, 보건복지부가 이미 교부한 국고보조금중 8억 5,200만원을 반납요청하여 동일 회계연도중 '**과오납금반환**'으로 반납처리 하였음에도 '장부상 재원없는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한 것임

- 사업부서로서는 회계연도중 별도의 세출예산 편성없이 과오납금반환을 통해 보조금을 반환한 것일 수 있으나, 동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내시에 따라 교부되어 서울시의 세입예산으로 수납하는 국고보조금인 바, 서울시가 주체적으로 지방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 후의 감면 등을 사유로 반환하는 과오납반환금과는 성격이 다른 재원으로 판단됨

- 다만, 관련 법령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는 있음

- 그러나 보조금의 경우 사용잔액과 이자를 법률에 따라 정산하고 반납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과오납금 반환으로 처리한 것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과오납금반환으로 당해연도에 반납한 것으로 사료됨

- 사업부서로서는 보건복지부가 반납을 요청함에 따라 당해연도 추가경정예산이나 다음연도 본예산을 통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반납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 관련 지침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출과목으로 별도 편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및 반납요청에 따른 반납의 경우라 할지라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외 서울시가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는 법적 재량권은 없는 바,

- 동 사례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로 판단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아울러 ①반납고지서에는 반납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이나 벌칙이 없고, ②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은 상계(相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정산 이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세출과목으로 별도 편성하여 반환하는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이외에도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 숲 조성**에서 3,500만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서 1억 4,100만원을 중앙부처의 반납요청이라 하며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당해연도에 과오납급 반환으로 반납한 사례가 확인되는 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표 4-18〉 2022회계연도 교부된 국고보조금중 과오납금반환으로 반납한 내역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국비변경내시 및 반환요청	과오납금으로 반납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숲조성	○ 변경내시 및 반환요청일자 : '22.10. 6. ○ 변경내시 및 반환요청액 : 35	○ 반납일 : '22.10. 7. ○ 반납액 : 35
푸른도시여가국	미세먼지 차단숲조성	○ 변경내시 및반환요청일자 : '22.10. 4. ○ 변경내시 및 반환요청액 : 141	○ 반납일 : '22.10.28. ○ 반납액 : 141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679 ('23. 5.15)

2. 이체 관련

○ 예산의 이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변경(이체)하여 사용하는 것임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 발생된 조직개편에 따라 당해연도에 발생한 모든 재정운영 내역을 새로운 조직에 맞게 재편성하는 것으로서 사업관리에 대한 직무권한의 변동에 한정되며 사업의 목적·내용이 변경되는 사항은 아님

- '22회계연도에 서울시에서 발생된 예산의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실·본부·국 및 부서간 이체가 발생된 것으로 1,285건, 4조 7,823억 3,700만원이 이체된 것으로 제출됨

〈표 4-19〉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체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별		발생건수	증	감
소 계		1,285	4,782,337	△4,782,337
	일 반 회 계	1,025	4,122,045	△4,122,045
	특 별 회 계 주1)	260	660,291	△660,291

※ 주1) 기타특별회계(257건, 660,176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하수도3건, 115백만원) 포함

○ 예산의 이체는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업을 이관하는 부서로서는 이관하기 전까지 대상 사업을 소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있고, 사업을 이관받는 부서로서도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이체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이월시키는 사례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 행정조직을 재구조화할 경우에는 기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연동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20A〉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계	1,285	1,285	△4,782,337	4,782,337	
시민소통기획관	6	20	△1,371	2,938	<감액> ■ 시민소통기획관→경제정책실 △1,371(6건) <증액> ■ 시민소통기획관←경제정책실 1,367(6건) ■ 시민소통기획관←시민협력국 1,571(14건)
약자와의동행추진단	3	2	△406	406	<감액> ■ 약자와의동행추진단→복지정책실 △406(3건) <증액> ■ 약자와의동행추진단←행정국 406(2건)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1	6	△3,430	6,852	<감액>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도시계획국 △3,430(1건) <증액>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 6,852(6건)

〈표 4-20B〉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여 성 가 족 정 책 실	194	185	△791,098	778,917	<감액> ■ 여성가족정책실내 조직변경 △778,917(185건) ■ 여성가족정책실→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6,852(6건) ■ 여성가족정책실→경제정책실 △1,715(1건) ■ 여성가족정책실→평생교육국 △3,612(2건) <증액> ■ 여성가족정책실내 조직변경 △778,917(185건)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00	98	△170,494	174,204	<감액> ■ 노동공정상생정책관내 조직변경 △169,985(95건)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안전총괄실 △643(5건) <증액> ■ 노동공정상생정책관내 조직변경 △169,851(95건)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시민건강국 4,353(3건)
스마트도시정책관	5	8	△11,183	11,579	<감액> ■ 스마트도시정책관내 조직변경 △11,183(5건) <증액> ■ 스마트도시정책관내 조직변경 11,183(5건) ■ 스마트도시정책관←행정국 395(3건)
남 북 협 력 추 진 단	4	4	△160	160	<감액> ■ 남북협력추진단내 조직변경 △160(4건) <증액> ■ 남북협력추진단내 조직변경 160(4건)

〈표 4-20C〉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기 획 조 정 실	17	63	△112,773	151,794	<감액> ■ 기획조정실내 조직변경 △112,773(17건) <증액> ■ 기획조정실내 조직변경 112,773(17건) ■ 기획조정실←경제정책실 6,477(14건) ■ 기획조정실←공공개발기획단 414(6건) ■ 기획조정실←도시계획국 0.7(2건) ■ 기획조정실←시민협력국 15,060(15건) ■ 기획조정실←안전총괄실 15,858(1건) ■ 기획조정실←평생교육국 1,209(8건)
경 제 정 책 실	34	14	△15,371	6,768	<감액> ■ 경제정책실내 조직개편 △3,681(7건) ■ 경제정책실→기획조정실 △6,477(14건) ■ 경제정책실→시민소통기획관 △1,367(6건) ■ 경제정책실→푸른도시국 △3,845(7건) <증액> ■ 경제정책실내 조직변경 3,681(7건) ■ 경제정책실←시민소통기획관 1,371(6건) ■ 경제정책실←여성가족정책실 1,715(1건)
복 지 정 책 실	74	59	△433,327	374,725	<감액> ■ 복지정책실내 조직변경 △374,319(56건) ■ 복지정책실→평생교육국 △59,008(18건) <증액> ■ 복지정책실내 조직변경 374,319(56건) ■ 복지정책실←약자와의동행추진단 406(3건)

〈표 4-20D〉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도 시 교 통 실	54	36	△148,583	48,278	<감액> ■ 도시교통실내 조직변경 △47,798(35건) ■ 도시교통실→안전총괄실 △100,785(19건) <증액> ■ 도시교통실내 조직변경 47,798(35건) ■ 도시교통실←도시기반시설본부 △479(1건)
문 화 본 부	84	61	△155,193	151,046	<감액> ■ 문화본부내 조직변경 △151,026(60건) ■ 문화본부→도시계획국 △400(3건) ■ 문화본부→디자인정책관 △227(2건) ■ 문화본부→시립미술관 △3,539(19건) <증액> ■ 문화본부내 조직변경 151,026(60건) ■ 문화본부←도시계획국 △19(1건)
기 후 환 경 본 부	118	118	△445,558	445,558	<감액> ■ 기후환경본부내 조직변경 △445,558(118건) <증액> ■ 기후환경본부내 조직변경 445,558(118건)
행 정 국	7	23	△4,142	17,194	<감액> ■ 행정국→스마트도시정책관 △395(3건) ■ 행정국→시민건강국 △3,340(2건) ■ 행정국→약자와의동행추진단 △406(2건) <증액> ■ 행정국←시민협력국 △17,194(23건)

〈표 4-20E〉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평 생 교 육 국	16	30	△13,930	75,759	<감액> ■ 평생교육국내 조직변경 △12,721(8건) ■ 평생교육국→기획조정실 △1,209(8건) <증액> ■ 평생교육국내 조직변경 12,721(8건) ■ 평생교육국←복지정책실 59,008(18건) ■ 평생교육국←시민협력국 417(2건) ■ 평생교육국←여성가족정책실 3,612(2건)
관 광 체 육 국	16	16	△24,735	24,735	<감액> ■ 관광체육국내 조직변경 △24,735(16건) <증액> ■ 관광체육국내 조직변경 24,735(16건)
시 민 건 강 국	135	134	△370,625	369,613	<감액> ■ 시민건강국내 조직변경 △366,272(132건) ■ 시민건강국→노동공정상생정책관 △4,353(3건) <증액> ■ 시민건강국내 조직변경 366,272(132건) ■ 시민건강국←행정국 △3,340(2건)
시 민 협 력 국	79	25	△40,289	6,045	<감액> ■ 시민협력국내 조직변경 △6,045(25건) ■ 시민협력국→기획조정실 △15,060(15건) ■ 시민협력국→시민소통기획관 △1,571(14건) ■ 시민협력국→평생교육국 △417(2건) ■ 시민협력국→행정국 △17,194(23건) <증액> ■ 시민협력국내 조직변경 6,045(25건)

〈표 4-20F〉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공공개발기획단	7	-	△614	-	<감액> ■ 공공개발기획단→기획조정실 △414(6건) ■ 공공개발기획단→도시계획국 △200(1건)
디자인정책관	-	2	-	227	<증액> ■ 문화본부←디자인정책관 227(2건)
안전총괄실	20	43	△80,223	165,792	<감액> ■ 안전총괄실내 조직변경 △64,364(19건) ■ 안전총괄실→기획조정실 △15,858(1건) <증액> ■ 안전총괄실내 조직변경 64,364(19건) ■ 안전총괄실←도시교통실 100,785(19건) ■ 안전총괄실←노동공정상생정책관 △643(5건)
도시계획국	25	26	△11,818	15,823	<감액> ■ 도시계획국내 조직변경 △11,793(21건) ■ 도시계획국→기획조정실 △0.7(2건) ■ 도시계획국→문화본부 △19(1건) ■ 도시계획국→주택정책실 △4(1건) <증액> ■ 도시계획국내 조직변경 11,793(21건) ■ 도시계획국←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3,430(2건) ■ 도시계획국←공공개발기획단 200(1건) ■ 도시계획국←문화본부 400(3건)

〈표 4-20G〉 실·본부·국간 이체현황

(단위 : 백만원, 건)

실·본부·국	건수		증감액		비교
	감	증	감	증	
주 택 정 책 실	49	55	△244,981	254,755	<감액> ■ 주택정책실내 조직변경 △24,498(49건) <증액> ■ 주택정책실내 조직변경 244,981(49건) ■ 주택정책실←균형발전본부 9,769(5건) ■ 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 4(1건)
균 형 발 전 본 부	114	109	△1,650,516	1,640,746	<감액> ■ 균형발전본부내 조직변경 △1,640,746(109건) ■ 균형발전본부→주택정책실 △9,769(5건) <증액> ■ 균형발전본부내 조직변경 1,640,746(109건)
푸 른 도 시 국	65	72	△16,323	20,168	<감액> ■ 푸른도시국내 조직변경 △16,323(65건) <증액> ■ 푸른도시국←경제정책실 3,845(7건) ■ 푸른도시국내 조직변경 16,323(65건)
물 순 환 안 전 국	57	57	△34,703	34,703	<감액> ■ 물순환안전국내 조직변경 △34,703(57건) <증액> ■ 물순환안전국내 조직변경 34,703(57건)
도시기반시설본부	1	-	△479	-	<감액>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교통실 △479(1건)
시 립 미 술 관	-	19	-	3,539	<증액> ■ 시립미술관←문화본부 3,539(19건)

3. 이용 관련

○ 예산의 이용은 정책사업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관련 법령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총칙으로서 이용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 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 ’22년도 서울시 예산서중「예산총칙」제8조를 통해 ⑴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⑵지방채상환(원리금 등), ⑶재해대책 및 복구비에 한정하여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지난 ’14회계연도 이후 ’22회계연도까지 정책사업간 예산의 이용이 발생된 바 없음

4. 전용 관련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단위사업 또는 편성목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 ’22회계연도의 경우, 예산현액(53조 4,687억 9,900만원)의 0.05%에 해당하는 267억 8,400만원, 132건을 전용하여 지난 ’21회계연도(168건)와 비교하면 전용 건수는 △36건 감소하였으나, 전용액은 직전 회계연도(267억 100만원)보다 8,200만원 증가한 것으로 검토됨

- ①일반회계의 경우, 90건, 165억 7,4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54건, △38억 700만원 감소된 것이며,

- 특별회계 중 ②기타특별회계는 36건, 81억 3,000만원을 전용하여 직전 회계연도보다 14건, 20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고, ③공기업특별회계는 6건, 20억 7,8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4건, 17억 9,400만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1〉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2020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건수	전용액
합 계	132	26,784	168	26,701	216	60,641
일반회계	90	16,574	144	20,382	174	47,910
특별회계	42	10,209	24	6,318	42	12,731
기타특별회계	36	8,130	22	6,034	37	11,509
공기업특별회계주1)	6	2,078	2	284	5	1,221

※ 주1)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이 정하는 예산 전용 기준에 따라 분류

○ ’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전용은 관련 법령에 따른 전용 제한을 벗어난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지난 ’20년 6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예산 전용 후, 분기별로 지방의회에 그 내역을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 서울시는 ’22회계연도 1분기 16건의 전용내역이 발생되었음에도 2～4분기 전용내역만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22〉 예산의 전용

○ 전용절차 : 전용요구(사업부서) → 심사(예산부서) → 결정(자치단체장) → 관계부서에 통지(예산부서) → 지방의회에 제출*(예산부서)

*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내역 제출

○ 전용제한 :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등

- 전용 후 재전용 또는 변경사용 할 수 없으며, 인건비(기준인건비 범위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401), 차입금원금상환(601), 차입금 이자상환(311), 예수금원리금상환(705)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편성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음

※ 단, 차입금원금상환(601)과 차입금이자상환(311)간, 기준인건비 범위 내 편성목간에는 상호 전용 가능

※ 전용받고자 하는 단위사업 내에 세부사업이 없는 경우는 전용 불가

※ 시설비 및 부대비(401)의 경우 동일 편성목이라도 단위사업간 또는 다른 단위사업의 세부사업과의 전용 불가. 다만, 동일한 세부사업내 통계목간 상호 변경사용은 가능

❍ 조직별 전용 현황을 검토하면 28개 실·본부·국에서 132건에 대해서 전용을 한 바,

- 시민건강국은 17건(63억 1,200만원), 균형발전본부는 12건(27억 200만원), 미래청년기획단은 3건(21억 6,000만원)을 전용한 것으로 확인됨

- 시민건강국은 '21회계연도에도 전용을 42건(31억 9,500만원)하여 건수 기준으로 전용을 가장 많이 한 조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의 소관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계획 및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예산의 전용은 불가피하였을 것이나, 간주처리하며 통계목을 잘못 편성하는 등 행정적 오류를 전용으로 치유한 사례도 있어 전용 제도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될 것으로 판단됨

〈표 4-23〉 실·본부·국별 전용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실·본부·국[주1)]	전 용 건 수	전 용 액	전체 전용액 대비
계	132	26,784	100.0
시민건강국	17	6,312	23.6
균형발전본부	12	2,702	10.1
미래청년기획단	3	2,160	8.1
문화본부	11	2,108	7.9
경제정책실	11	2,088	7.8
상수도사업본부	4	2,062	7.7
도시교통실	13	1,953	7.3
재무국	2	1,756	6.6
주택정책실	6	1,055	3.9
디지털정책관	3	904	3.4
기후환경본부	7	783	2.9
평생교육국	4	664	2.5
복지정책실	10	419	1.6
미래공간기획관	2	400	1.5
인재개발원	1	390	1.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	244	0.9
안전총괄실	1	194	0.7
소방재난본부	1	125	0.5
푸른도시여가국	5	78	0.3
기획조정실	1	77	0.3
여성가족정책실	5	76	0.3
행정국	1	60	0.2
도시계획국	1	58	0.2
자치경찰위원회	1	48	0.2
디자인정책관	1	30	0.1
물순환안전국	2	16	0.1
의회사무처	1	9	0.0
홍보기획관	2	5	0.0

※ 주1) 전용액 규모순

1.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포함)
2. “구성비”는 전체 실·본부·국(상수도사업본부 포함)의 전용액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 소관 실·본부·국별로 검토하면 시민건강국 소관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은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간호사, 임상병리사 등 임시인력을 채용·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사업을 수행하고자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35억 7,0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4-24〉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코로나 대응 한시인력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3,570	△3,570	-	’22. 4.27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3,570	

-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금을 경상적 사업비로 내시하였으나, 서울시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잘못 편성한 바, 오류를 경정하고자 전용하여 이른바 ‘자체치유’를 한 사례에 해당하나,

- 이미 국비 교부 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통계목을 명시하였고, 세부사업명에서도 한시인력 지원을 위한 경상적 사업이라는 점이 명확함에도 통계목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잘못 편성한 이후 전용을 통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수정한 것은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전용제도를 남용한 사례로써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는 서울경찰청이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위하여 교통단속 캠코더 등 자본적 물품을 구매하고자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4,800만원을 전용한 것임

〈표 4-25〉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사무관리비	48	△48	-	'22. 3.29
〃	자산및물품취득비	-	-	48	

- 동 사업은 경찰청이 국고보조금을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교부함에 따라 ①'22년도 예산안중 **교통안전 활동**의 사업내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②예산안 심사시 별도 세부사업인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사업(**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으로 수정요청함에 따라 수정안에 포함하여 '22년 12월 31일 의결한 바 있으나, ③'22년도 예산서에는 **교통장비, 운영비(자본보조)** 사업을 **사무관리비**(4,800만원)로 기재하고 있음

- 따라서 동 전용 사례는 경찰청이 국고보조금을 자본형성적 사업비로 교부하였으나, 서울시가 **사무관리비**로 잘못 편성하였고, 전용을 통해 오류를 수정한 사례로 단순 취급될 수 있으나,

- 예산심사 과정중 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별도 세부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800만원을 편성하여 의결하였음에도 집행기관 임의로 해당 세부사업의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로 기재한 이후 전용을 통해 시의회가 당초 의결한 예산과목(**자산 및 물품취득비**)으로 정정한 것은 관련 법령으로 정한 예산의 의결권을 침해한 행태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결결과를 임의로 변조한 경위에 대해 문서로써 설명하여야 할 것이며, 법규위반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과 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택배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치구를 통해 영세 택배사업장 휴게시설 개선 및 휴게실 내 에어컨, 정수기 등의 구매를 지원하고자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3,0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4-26〉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	△30	-	’22. 6. 9
〃	자치단체자본보조	-	-	30	

- 동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자치구 공모를 통한 시설 개선 및 자본성 물품구매비 지원 예산으로 명시하였음에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하고, 이후 예산 집행 전 오류를 경정하고자 전용한 사례로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전용제도가 적정하게 활용된 사례인지 재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은 당초 공모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22년 5월, 서울시 직접 수행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하고자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5,000만원을 전용하였음

〈표 4-2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106	△50	-	’22. 5.25
〃	행사운영비	-	-	45	
〃	사무관리비	20	-	5	

- 해당 사업은 '21회계연도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방식 변경을 위해 세부사업 내 통계목을 전용하여 보조사업자 선정방식에서 직접사업 추진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여 지난 '21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 바,

- 직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전용을 통해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22회계연도에도 동일한 사유로 전용을 한 것은 의회의 심사 취지를 등한시하는 사례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결산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유사 사안을 개선하지 않고 반복 발생시키는 것은 결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의회의 결산 승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일 수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 인생설계 학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세부사업 내 통계목 간 9억 4,000만원을 전용한 바,

〈표 4-28〉 청년 인생설계 학교 관련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청년 인생설계 학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40	△940	-	'22. 5.18
〃	사무관리비	10	-	940	

- 지난 '22년 4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21년 대행사업비 잔액 반납 및 대행사업 종료가 공문으로 제출된 이후 '22년 5월, 사업부서가 사업방식을 위탁에서 직접수행으로 변경하고자 예산을 전용한 것임

▪ 그러나 현행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예산이 확정된 이후 사업 추진방식, 기간 등 대규모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축소된 사업기간에 따라 소요예산을 경정하는 적법한 절차가 적용될 필요가 있었던 사안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당초 동 사업은 ①1월부터 5월까지 대행협약 체결 및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②6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이전 연도와는 달리 출연기관과 협약체결을 하지 않음에 따라 ①5월, '청년인생설계학교 사업 추진계획' 수립, ②6월, 계약체결, ③7월, 참여자 모집공고, ④8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정이 순연됨으로써 사업 수혜대상자가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문학의 집 서울 지원**은 보조사업 예산인 **민간경상보조** 1억 8,600만원을 ①**서울문화진흥 활성화**에 7,000만원, ②**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에 7,1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

- 동 사업은 문학의 집 시설을 운영·관리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시설 운영을 제외한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문학광장 사업에 포함시켜 서울시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여 7,000만원을 서울문화진흥 활성화 사업에 전용함.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중 7,100원은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업에 7,100만원을 전용하고, 나머지 4,500만원은 전액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표 4-29〉 문학의 집 서울 지원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 승인일
문학의 집 서울 지원	민간경상보조	186	△141	-	-
〃	시설비	35	-	-	-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사무관리비	110	-	70	’22. 5. 9
초·중·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지원	사무관리비	2,433	-	71	’22.12. 5

-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바, 동 사업의 경우처럼 계획변경에 따라 보조사업이 종료되어 해당 예산과목에 편성된 소요예산이 전액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용이 아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신규사업 또는 확대운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경정하여 추진하는 방법이 우선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례로 판단됨

○ 경제정책실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은 ‘2022 서울뷰티위크 행사’를 확대추진하고자 ①**뷰티도시서울 추진**으로부터 **사무관리비** 1억 3,000만원, **기타자본이전** 1억 2,000만원을 ②**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의 **행사운영비**(2억 3,300만원), **기타보상금**(1,600만원)으로 전용 및 변경하였음

〈표 4-30〉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예산 전용·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	증	전용/변경 승인일
①뷰티도시서울 추진	사무관리비	910주1)	△130주2)	-	'22. 8. 5
〃	기타자본이전	120	△120주3)	-	
②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700	-	233	
〃	기타보상금	-	-	16	

※ 주1)〈뷰티도시서울 추진(세부사업)〉 중 사무관리비 당초 예산액은 18억 1,000만원으로 표기된 예산액(9억 1,000만원)은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을 위하여 서울산업진흥원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 운영방식을 변경하고자 2차례 전용(△9억원) 후, 남은 잔액임

주2) **△1억 3,000만원**[△1,600만원(기타보상금으로 '전용'), △1억 1,300만원(행사운영비로 '변경')]

주3) **△1억 2,000만원**(행사운영비로 '전용')

- 전용·변경의 재원인 ①**뷰티도시서울 추진**은 '22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하여 8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추경 편성 후 교육장소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협의되어 기 편성된 교육장소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2억원을 포함하여 2억 5,000만원을 ②**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에 전용·변경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1〉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예산 최종 현황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계	본예산	1·2회추경	전용	변경
계	950	700	-	136	113
행사운영비	933	700	-	120	113
기타보상금	16	-	-	16	-

- 관련 법령은 예산의 이·전용을 운용함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쪽보다는 이·전용의 사유가 타당한가 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①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은 '22년도 본예산안에는 12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 등이 지적되어 △5억 8,000만원이 감액된 7억원으로 확정된 사업임에도

▪ **예산의 전용·변경**을 통해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사실상 복원한 것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5. 명시이월 관련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 관련 법령은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종료 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53조 4,687억 9,900만원중 0.6%, 3,480억 7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3,480억 700만원)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이 포함된 것임

〈표 4-32〉 2022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명시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현 액	명 시 이 월 액	명 시 이 월 률
합 계	**53,468,799**	**348,007**주1)	**0.6**
일 반 회 계	38,319,642	81,713	0.2
기 타 특 별 회 계	13,247,111	253,964	1.9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02,045	**12,329**주2)	0.6

※ 주1) **'22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22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의 이월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달리 이월의 종류를 건설개량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구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관련 법령은 건설개량이월에 대해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사용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는 바,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사용되는 명시이월과 비교하면 예산의 이월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나, 승인권자 등에 차이가 있어 상호 구별되는 제도임

○ 그러나 지난 '22년 12월에 개정된 행전안전부의 관련 법령에는 여전히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설개량이월액을 명시이월로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바,

- 서울특별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에 건설개량이월과 명시이월이 구분되도록 관련 기준 개정을 요청하였으나, '22년 12월 개정된 관련 기준에는 서울시가 건의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에는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해 이월예산이 보다 명확하게 표기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결산서의 첨부서류중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작성시 '자금 없는 이월' 사유에 지방채 사업을 추가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채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세출재원을 편성하는 사업은 이월액을 표기하면 재원부담을 순연시키는 사례로 인지할 수 있으나, 당해연도에 지방채가 미발행된 경우에는 이를 구분표기함으로써 당해연도에 편성된 재원이 다음연도까지 연결되는 재정운용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사료됨

〈표 4-33〉 결산서 첨부서류 중 이월명세서 관련 개정사항

〈당초 기준〉		〈개정 기준('23. 1. 1 시행)〉	
항 목	작성요령	항 목	작성요령
⑬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자금 없는 이월 (신설)	⑬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 자금 없는 이월 · 지방채 발행 사업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지방채 발행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자금의 이월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 처리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수도사업특별회계(49억 6,400만원)와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73억 6,500만원)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을 제외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명시이월액은 3,356억 7,700만원으로

- 서울특별시가 지난 '22회계연도에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조정한 바 있어 명시이월액 발생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4,450억 5,500만원)보다 △1,393억 7,7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사료됨

○ '23년도 예산심사시 우리 시의회는 예산안과 함께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제출받아 심사하고 '22회계연도중 집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113개 세부사업, 174개 통계목에 대해 3,726억 7,800만원의 명시이월을 승인('22.12)하였으나,

-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당초 승인액(3,726억 7,800만원)보다 △370억원 감소된 3,356억 7,700만원이 실제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출된 바,

- 시의회로부터 승인된 명시이월액(3,726억 7,800만원)보다 실제 명시이월액(3,356억 7,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안 제출일('22.11. 1) 이후 회계연도 종료('22.12.31)까지 예산을 집행한 결과로 사료됨

- 다만, 당초 승인된 명시이월액중 90.0%만 실제 명시이월된 것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가능성이 있어 이월이 필수적이지 않은 사업까지 포괄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포함시켜 우리 시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한정된 예산심사기간에 해당 사업까지 이월승인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비효율을 발생시킨 사례로 향후에는 명시이월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정하여 요청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4〉 2022회계연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통계목 기준)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합 계 ① + ②	53,468,799	178	348,007주1)	0.6
명 시 이 월 (계) ①	51,566,754	164	335,677주2)	0.9
일 반 회 계	38,319,642	75	81,713	0.2
기 타 특 별 회 계	13,247,111	89	253,964	1.9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201,609	10	23,492	1.1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292,766	19	17,590	0.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50,236	3	4,774	1.4
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	3,002,632	6	36,354	1.2
도 시 개 발 특 별 회 계	2,425,711	46	169,145	7.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208,872	5	2,606	1.2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9,214	-	-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0	-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3,731	-	-	-
소 방 특 별 회 계	950,036	-	-	-
건설개량이월 (계) ②	1,902,045	14	12,329	0.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1,902,045	14	12,329	0.6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	867,963	8	4,964	0.6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081	6	7,365	0.7

※ 주1) **'22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이 포함된 것임

주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자료근거 : ①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②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표 4-35〉 회계연도별 명시이월 및 건설개량이월 현황('22~'20)

(단위 : 백만원, 건, %)

회계연도	구 분			예산현액 (가)	명시이월(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건설개량이월(공기업특별회계)		
					건수 (통계목기준)	이월액 (나)	이월률 (나)/(가)
2022	합계 ①+②+③			53,468,799	178	348,007주1)	0.6
	명시이월		소계 ①+②	51,566,754	164	335,677주2)	0.9
			일반회계 ①	38,319,642	75	81,713	0.2
			기타특별회계 ②	13,247,111	89	253,964	1.9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902,045	14	12,329	0.6
2021	합계 ①+②+③			47,759,128	208	471,129주1)	1.0
	명시이월		소계 ①+②	45,928,700	195	445,055주2)	0.9
			일반회계 ①	33,834,846	85	85,451	0.3
			기타특별회계 ②	12,093,854	110	359,603	3.0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1,830,427	13	26,074	1.4
2020	합계 ①+②+③			46,798,514	300	450,684주1)	1.0
	명시이월		소계 ①+②	44,638,787	284	423,097주2)	0.9
			일반회계 ①	32,943,048	113	184,969	0.6
			기타특별회계 ②	11,695,738	171	238,128	2.0
	건설개량이월		공기업특별회계 ③	2,159,727	16	27,586	1.2

※ 주1)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된 것임

주2)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발생된 명시이월액**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발생된 건설개량이월액을 제외하고 순수한 명시이월액만을 합산한 것임)

자료근거 : ①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등 재구성

○ 그 외에도 당초 확정된 '22회계연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명시이월액을 임의 정정한 사례가 2건 발생된 것으로

- 관련 법령 등 관련 규칙과 기준에는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22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을 확정하는 '23년 1월 10일 이후에 이미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변경한 것으로 검토됨

▪ 도시교통실 소관 **당산역 광역버스환승정류소 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은 사업부서가 '23년 2월 24일 명시이월액 변경을 요청하여 예산부서가 3월 2일 승인한 것으로

〈표 4-36〉 당초 확정된 명시이월액을 정정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1월 10일자로 확정된 명시이월액 (가)	변경된 명시이월액 ('22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도 시 교 통 실	당산역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	2,562	1,562	△1,000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 역 철 도 건 설	5,944	-	△5,944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48 ('23. 1.11)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343 ('23. 4. 5)

-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의 경우에는 지난 '22년 11월, 「2023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명시이월명세서에 포함되어 54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 승인요청 하였으나, 심사과정중 명시이월 요청액을 59억 4,500만원으로 수정요청함에 따라 이를 승인한 것으로, 서울시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23년 1월, '22회계연도 이월예산을 확정하며 동 사업에 대해 59억 4,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나,

- 명시이월예산을 확정한 이후 1개월 이상 경과된 지난 ’23년 2월 24일, 이미 명시이월한 59억 4,400만원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변경요청한 것으로 확인됨

〈표 4-37〉 당초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정정한 사업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명	세 부 사 업 명	1월 10일자로 확정된 사고이월액 (가)	변경된 사고이월액 (’22 결산서) (나)	증감액 (나)-(가)
도 시 교 통 실	도 시 고 속 도 로 환승정류장(당산역)	3,534	1,638	△1,896
도시기반시설본부	별내선(8호선연장) 광 역 철 도 건 설	23,673	-	△23,673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 합 개 발	1,355	-	△1,355

※ 자료근거 : ①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348 (’23. 1.11)
② 서울특별시, 예산담당관-4343 (’23. 4. 5)

- 관련 법령 등 관련 기준과 규칙은 1월 10일까지 이월액을 “확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확정된 이월액을 1월 10일 이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단서조항이 없음에도 확정된 이월액을 임의 변경한 것은 오류정정의 범위를 초월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더욱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22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을 확정한 ’23년 1월 10일 이후 확정된 사고이월액을 변경한 사례가 3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도시교통실 소관 **도시고속도로 환승정류장(당산역)** 사업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별내선(8호선연장) 광역철도건설** 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경우, 회계 관리 부서가 ’23년 2월 24일 사고이월액 변

경을 요청하여 예산부서가 '23년 3월 2일 승인한 것으로 확인됨

- '22회계연도 종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확정한 이월액을 변경한 5개 사례는 모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매해 예산심사 시 결산 이후 각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서울시가 본예산에 미리 세입 조치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회계연도 개시 이후 대규모 지출 등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바,

  ▪ '23년도 본예산의 경우에도 서울특별시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93억 1,300만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이전에 편성하였고, 해당 재원을 미리 편성하지 않았다면 확정된 이월액을 변경하는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졌을 것으로 사료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명시·사고이월액을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66억 3,100만원의 세입결손이 발생되어 '23회계연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편성된 순세계잉여금(93억 1,300만원)을 포함하여 △159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8〉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단위 : 백만원)

특별회계명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가)	'23년도 본예산 기편성액 (나)	조정필요액 (가)-(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31	9,313	△15,94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⑵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 건설개량이월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서울특별시가 운용하는 회계중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

❍ '22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1조 9,020억 4,500만원) 대비 0.6%, 123억 2,9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60억 7,400만원)보다 △137억 4,4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검토됨

〈표 4-39〉 공기업특별회계 건설개량이월 발생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건, %)

구분		예산현액 (가)	건설개량이월		
			건수 (세목 기준)	건설개량이월액 (나)	건설개량이월률 (나)/(가)
2022 회계연도	계	1,902,045	14	12,329	0.6
	수도사업특별회계	867,963	8	4,964	0.6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34,081	6	7,365	0.7
2021 회계연도	계	1,830,427	13	26,074	1.4
	수도사업특별회계	815,087	10	22,218	2.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015,340	3	3,856	0.3
2020 회계연도	계	2,159,727	16	27,586	1.2
	수도사업특별회계	858,899	9	11,134	1.2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00,827	7	16,452	1.2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회계별로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건설개량이월액은 49억 6,4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222억 1,800만원)보다 △172억 5,400만원 감소하였으며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도 직전 회계연도(10건)보다 2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건설개량이월액은 73억 6,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8억 5,600만원)보다 35억 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목을 기준으로 한 건설개량이월 발생건수도 직전 회계연도(3건)보다 6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사업별로 건설개량이월 내역을 검토하면,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는 예산현액 22억원중 **감리비** 2억원 전액이 건설개량이월 된 바,

〈표 4-40〉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목	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2,200	2,000	2,000	200	-
시설비 및 부대비	시 설 비	2,000	2,000	2,000	-	-
	감 리 비	200	-	-	200 (건설개량이월)	-

※ 자료근거 : ① 2022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사업부서는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감리)를 하고자 지난 '22년 10월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동 용역과 관련된 공고를 2회 실시하였으나 2회 모두 유찰됨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22회계연도 내에는 동 예산의 집행이 불가하여 **감리비** 2억원 전액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은 '21년도부터 '28년도까지 단기·중기·장기 사업을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기초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이 늦어져 준공기한이 연장되면 공사 착공시점이 순연되고 이후 절차도 순연될 개연성이 높아 공정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소관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는 예산현액 133억 700만원중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9억 1,900만원을 건설개량이월한 것임

- 동 사업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위탁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탄천센터 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공법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나,

▪ '22년 2월, 최초 공고시 유찰, '22년 4월 재공고시에도 유찰되어 '22년 6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회계연도내 실시설계까지 준공하였으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공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건설개량이월한 것으로 제출됨

〈표 4-41〉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세목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	13,307	8,758	8,734	3,919	652
시설비	560	560	535	-	24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747	8,198	8,198	3,919 (건설개량이월)	628

※ 자료근거 : ① 2022 사업연도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②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소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은 예산현액 60억 9,200만원('21회계연도 건설개량이월액 20억원 포함)중 8.4%, 5억 1,4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예산현액의 72.3%, 44억 9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42〉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예산이월현황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이월액(계)		건설개량 이월액		사고이월액	
			이월률		건설개량 이월률		사고 이월률
계	6,092	4,923	80.8	514	8.4	4,409주1)	72.3
시 설 비	5,655	4,490	79.3	505	8.9	3,984	70.4
감 리 비	13	9	69.2	9	69.2	-	-
시 설 부 대 비	424	424	100.0	-	-	424	100.0

※ 주1) '21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20억원)중 17억 1,600만원이 재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9기)

- 동 사업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21회계연도 결산심사시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 20억원이 재이월(사고이월)되거나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21회계연도에 건설개량이월 되었던 20억원중 17억 1,600만원이 '22회계연도에도 재이월되었음

■ 사업부서는 사업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인·허가절차 등을 이행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발주 시기가 늦어졌으며 인허가에 따른 조건을 반영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회계연도 내에 소요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제출함

- 동 사업은 '21년 11월, 사업부서가 수립한 변경방침에는 ①인·허가절차가 '21년 12월 마무리되고 ②'22년 4월 건축공사 및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③'22년 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인·허가절차는 예측한 시기('21.12)보다 10개월 가량 지연된 '22년 10월 종료된 것으로 확인됨

〈표 4-43〉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인허가 현황

신청일자	내용	승인부처	진행사항
'21.11.23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남양주시 → 경기도	승인('22. 4. 4)
'22. 2.14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	본부 → 남양주시	승인('22. 9. 5)
'22. 1.28	·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신청	본부 → 남양주시	승인('22.10.27)
'22. 1.28	· 건축허가 신청	본부 → 남양주시	승인('22.10.27)

▪ 사업부서는 당초 예정보다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22년도에 공사를 착공하더라도 회계연도 내에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지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22회계연도중 제출한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동 사업의 예산을 감액조정하지 않아 직전 회계연도와 유사한 사유(인·허가절차 지연)로 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 소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는 선행공사가 지연되고 실제 공사시 설계와 상이한 현장 여건 등으로 예산현액 226억 5,800만원중 9.2%, 21억 200만원이 건설개량이월 되고, 예산현액 대비 67.3%, 152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44〉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

세목	예산현액	이월액(계)	이월률	건설개량 이월액	건설개량 이월률	사고이월액	사고 이월률
계	22,658	17,356	76.5	2,102	9.2	15,254주1)	67.3
시 설 비	20,649	16,163	78.2	1,404	6.7	14,758	71.4
감 리 비	1,957	1,167	59.6	674	34.4	493	25.1
시 설 부 대 비	52	26	50.0	24	46.1	2	3.8

※ 주1) '21회계연도로부터 건설개량이월된 공사비(120억 2,300만원)중 119억 5,600만원이 재이월된 것임

자료근거 : 2022년도 서울특별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제59기)

- 사업부서의 이월방침에는 ①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서부로 확장공사」구간(광암정수센터~서부초교) 공사 완료 이후 ②상수도 부설공사를 실시 할 수 있고, ③공사구간중 일부 구간은 녹색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구 관련부서의 인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22회계연도 4분기가 되어야 관련 절차를 완료하여 건설개량이월 및 사고이월이 필요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음

■ 동 사업은 상수도관의 장기 사용으로 인한 혼탁수 발생을 방지하고자 '28년 11월까지 광암정수센터~잠실·오금 구간의 배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인 바, 공사가 지연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비용이 증가될 수 있어 편성된 소요예산을 회계연도내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4-45〉 건설개량이월이 발생된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원인 행위액 (나)	원인행위 미필액 (가)-(나)	지출액	건설개량이월	
						이월액 (다)	이월률 (다)/(가)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센터 슬러지 자체처리시설 설치	12,747	8,198	4,548	8,198	3,919	30.7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986	43,851	11,135	40,449	2,305	4.1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2,658	20,448	2,210	5,194	2,102	9.2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6,945	4,318	2,626	3,204	1,939	27.9
물순환안전국	월곡로2 성북중앙교회 사각형거 이설	880	91	788	91	788	89.5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6,092	5,033	1,059	623	514	8.4
물순환안전국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3,300	2,542	758	1,031	480	14.5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시설 복개공원화	200	-	200	-	200	100.0
상수도사업본부	서비스장비 확충 및 환경개선	6,908	6,295	613	5,873	41	0.5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302	207	95	207	37	12.2

※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건설개량이월 없음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6. 사고이월 관련

○ 관련 법령은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에 대해 다음 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22회계연도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53조 4,687억 9,900만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7,660억 5,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6,904억 7,300만원)보다 755억 8,500만원 증가하였음

〈표 4-46〉 회계연도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건, %)

구 분		예산현액 (가)	사고이월		
			건 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나)	사고이월률 (나)/(가)
2022 회계연도	계	53,468,799	708	766,058	1.4
	일반회계	38,319,642	304	193,448	0.5
	특별회계주1)	15,149,156	404	572,610	3.8
2021 회계연도	계	47,759,128	709	690,473	1.4
	일반회계	33,834,846	296	183,674	0.5
	특별회계주1)	13,924,281	413	506,799	3.6
2020 회계연도	계	46,798,514	687	610,921	1.3
	일반회계	32,943,048	316	167,379	0.5
	특별회계주1)	13,855,466	371	443,542	3.2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표 4-47〉 예산의 이월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가)	이월액 계 (나) =(다)+(라)+(마)	이월률 (나)/(가)	명시이월액 (다)	이월률 (다)/(가)	건설개량 이월액 (라)	이월률 (라)/(가)	사고이월액 (마)	이월률 (마)/(가)
2022	53,468,799	1,114,064	2.0	335,677주1)	0.6	12,329	0.0	766,058	1.4
2021	47,759,128	1,161,603	2.4	445,055주2)	0.9	26,074	0.1	690,473	1.4
2020	46,798,514	1,061,606	2.3	423,097주3)	0.9	27,586	0.1	610,921	1.3

※ 주1) '22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3,480억 7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123억 2,9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2) '21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4,711억 2,9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260억 7,4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주3) '20회계연도 결산서에 기재된 명시이월액(4,506억 8,400만원)에서 실제 명시이월액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개량이월액(275억 8,600만원)을 제외**한 것임

자료근거 : ①각 회계연도 결산서, ②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등 재구성

❍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 이월과 다르게 예산을 이월할 때 의회로부터 의결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한정하여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22회계연도에는 지난 '21회계연도와 '20회계연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었고, 여름철 수해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두 번의 추경을 하였으나,

- '2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된 사고이월액(7,660억 5,800만원)은 지난 '21회계연도 사고이월액(6,904억 7,300만원)보다 10.9%, 755억 8,500만원 증가된 바,

- 명시이월액과 건설개량이월액은 '21회계연도보다 감소되었으나,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고이월은 상대적인 편의성이 있어 사고이

월액 발생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사료됨

■ 회계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예측되는 세출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소요예산 경정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48〉 회계연도 이월액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2회계연도 (A)	'21회계연도 (B)	증감 (C)=(A)-(B)	증감률 (C)/(B)
이 월 액 계		1,074,007	1,161,603	△87,596	7.5
	명 시 이 월 액	335,677	445,055	△109,378	24.6
	건설개량이월액	12,329	26,074	△13,745	52.7
	사 고 이 월 액	766,058	690,473	75,585	11.0

○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현황을 검토하면 푸른도시여가국(1,442억 1,300만원, 18.8%), 안전총괄실(1,171억 3,300만원, 15.3%), 물순환안전국(1,065억 9,200만원, 13.9%), 상수도사업본부(603억 400만원, 7.9%). 기후환경본부(566억 3,500만원, 7.4%)의 사고이월 규모는 총 4,848억 8,000만원으로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7,660억 5,800만원)의 63.2%가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푸른도시여가국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8.8%에 해당하는 1,442억 1,300만원(통계목 기준 70건)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에서는 **자연휴양림 조성**(예산현액 61억 5,000만원의 50.0%, 30억 7,500만원), **단절된 녹지축 연결**(예산현액 25억 3,800만원의 95.5%, 24억 2,4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예산현액 380억 100만원의 42.6%, 162억 2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예산현액 2,798억 8,300만원의 26.1%, 729억 2,3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 안전총괄실의 경우,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5.3%에 해당하는 1,171억 3,300만원(통계목 기준 93건)이 사고이월된 바,

- **일반회계**에서는 **도로사업소 사무환경개선**(예산현액 17억 3,200만원의 15.4%, 2억 6,600만원), **도시기반시설 선제적 관리로 장수명화**(예산현액 6억 3,700만원의 38.0%, 2억 4,2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예산현액 38억 2,500만원의 98.6%, 37억 7,1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음

-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예산현액 290억 200만원의 30.2%, 87억 5,200만원),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예산현액 88억 3,900만원의 62.4%, 55억 1,600만원) 등이 사고이월 되었음

-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월드컵 대교 건설**(예산현액 522억 9,900만원의 60.4%, 316억 800만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예산현액 660억 3,000만원의 9.4%, 61억 8,100만원), **노들로 구조개선**(예산현액 103억 8,300만원의 58.9%, 61억 1,300만원) 등이 사고이월된 것임

〈표 4-49〉 실·본부·국별 사고이월 발생 사유[주1)]

(단위 : 백만원, 건, %)

실·본부·국명	사고이월 건수 (통계목 기준)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	사유별 사고이월액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합 계	734	766,058	100.0	184,211 (24.0)	113,933 (14.8)	177,425 (23.1)	7,586 (0.9)	22,972 (2.9)	25,590 (3.3)	133,228 (17.3)	101,110 (13.1)
푸른도시여가국	70	144,213	18.8	4,186	102,186	30,267	481	320	16	3,952	2,802
안 전 총 괄 실	93	117,133	15.3	74,295	9,348	22,384	24	266	1,360	9,454	-
물순환안전국	117	106,592	13.9	35,901	-	28,154	105	17,094	412	4,735	20,189
상수도사업본부	48	60,304	7.9	23,218	-	27,037	-	-	8,800	279	968
기후환경본부	21	56,635	7.4	-	-	7,620	-	1,413	-	965	46,636
경 제 정 책 실	44	45,570	6.0	23,545	-	5,343	-	34	-	16,646	-
문 화 본 부	48	39,908	5.2	7,323	2,119	15,064	-	1,158	3,588	10,654	-
도 시 교 통 실	45	33,444	4.4	3,659	278	4,764	696	108	2,861	5,749	15,324
도시기반시설본부	9	27,460	3.6	-	-	12,603	-	-	5,076	9,743	36
균형발전본부	44	22,397	2.9	6,535	-	2,583	1,168	-	2,839	9,269	-
평 생 교 육 국	15	19,835	2.6	-	-	4,572	-	-	-	15,263	-
한강사업본부	21	19,716	2.6	3,581	-	5,687	-	1,310	-	3,269	5,866
시 민 건 강 국	16	13,901	1.8	159	-	3,644	-	19	176	2,739	7,161
복 지 정 책 실	12	11,079	1.5	-	-	-	-	-	-	11,079	-
주 택 정 책 실	30	8,177	1.1	-	-	73	-	694	44	6,869	496
미래공간기획관	15	6,239	0.8	-	-	-	-	520	-	5,719	-
관 광 체 육 국	9	6,192	0.8	-	-	454	-	-	-	5,723	15
소방재난본부	11	5,866	0.8	-	-	4,541	-	30	-	1,055	239
디지털정책관	13	5,062	0.7	-	-	2,168	-	-	-	2,453	440
재 무 국	1	4,990	0.7	-	-	-	4,990	-	-	-	-
도 시 계 획 국	11	2,815	0.4	-	-	-	-	-	-	2,815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	2,523	0.3	-	-	-	-	-	-	2,523	-
디자인정책관	5	1,440	0.2	1,142	-	204	-	-	-	93	-
홍 보 기 획 관	4	1,102	0.1	-	-	-	-	-	-	820	281
행 정 국	5	898	0.1	51	-	-	-	-	-	195	650
시 립 미 술 관	3	609	0.1	609	-	-	-	-	-	-	-
여성가족정책실	4	474	0.1	-	-	-	46	-	-	427	-
기 획 조 정 실	3	442	0.1	-	-	-	-	-	-	442	-
자치경찰위원회	4	434	0.1	-	-	20	-	-	413	-	-
서울역사박물관	5	307	0.0[주2)]	-	-	233	73	-	-	-	-
미래청년기획단	3	280	0.0[주2)]	-	-	-	-	-	-	280	-
의 회 사 무 처	1	5	0.0[주2)]	-	-	-	-	-	-	5	-

※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대비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율임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구성비 경우, 서울역사박물관(0.04%), 미래청년기획단(0.03%). 의회사무처(0.00006%)임

자료근거 : ①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②'22회계연도 결산서 재구성

○ 관련 기준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원인별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이월 사유를 집행잔액의 경우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정하지 않고 있으나,

-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지연, 사전절차지연 등으로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구분하고 있는 바, ①공사추진중 장애발생을 사유로 1,842억 1,100만원(서울시 사고이월액의 24.0%), ②사전절차지연을 사유로 1,774억 2,400만원(서울시 사고이월액의 23.1%), ③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1,332억 2,800만원(서울시 사고이월액의 17.3%) 등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제출됨

〈표 4-50〉 사유별 사고이월 발생 현황 (’22~’20)[주1)]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계 (구성비)[주2)]	사유별 사고이월액 (구성비)[주2)]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보상협의 지연	사전절차 지연	유관사업 지연	사업계획 변경	관급 및 외자재 구매지연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기타
2022	766,058	184,211	113,933	177,425	7,586	22,972	25,590	133,228	101,110
	(100.0)	(24.0)	(14.8)	(23.1)	(0.9)	(2.9)	(3.3)	(17.3)	(13.1)
2021	690,473	123,947	13,920	121,680	10,589	84,648	8,818	198,567	128,301
	(100.0)	(17.9)	(2.0)	(17.6)	(1.5)	(12.2)	(1.2)	(28.7)	(18.5)
2020	610,921	126,266	56,782	153,083	13,393	30,066	11,360	185,032	34,936
	(100.0)	(20.7)	(9.3)	(25.1)	(2.2)	(4.9)	(1.9)	(30.3)	(5.7)

※ 주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주2) ( ) 안의 수치는 전체 사고이월액 중 사유별 사고이월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4.0%, 1,842억 1,1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39억 4,700만원)보다 602억 6,400만원 증가된 바, 공사추진 중 예상치 못한 장애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등을 통해 예산액을 감액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22회계연도에는 상·하반기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증·감 조정할 수 있었음에도 1,842억 1,100만원이 동 사유로 사고이월된 것은 소요예산 경정의 필요성을 판단하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23.1%, 1,774억 2,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16억 8,000만원)보다 557억 4,500만원 증가된 것으로 검토됨

- 동 사유로 발생한 사고이월은 ①관련 위원회 심의, 인허가, 주민의견 청취 등 선행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거나 재심의를 거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②중앙정부·자치구 또는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측면이 있으나,

-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편성된 예산이 이월이나 불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재원을 확보한 이후, 회계연도 내에 사전절차 이행이 지연되거나 불가함에 따라 기편성된 예산이 실제 집행으로 실행되지 못한 사례가 다수인 것으로 사료됨

  ▪ 사전절차가 지연되어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결과적으로 총사업비 증가 및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산 확보 시 계획한 대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 회계연도 개시 이후 특정 상황 발생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사전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되면 추경을 통해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경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7.3%, 1,332억 2,8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985억 6,700만원)보다 △653억 3,900만원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나

- 용역계약 체결시 회계연도 중 준공되지 못할 것이 확실시될 경우에는 ①회계연도중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계약하거나, ②사고이월 하기보다는 의회의 승인을 얻는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방안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은 통계목 기준 18건으로, 사고이월액은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4.8%, 1,139억 3,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39억 2,000만원)보다 1,000억 1,300만원 증가된 것임

-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729억 2,4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4억 9,900만원)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와의 보상 협의가 수월하지 않아 사고이월 된 것으로 검토됨

- 그러나 162억 300만원이 사고이월된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의 경우,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사유를 분류하고 있으나, 사실상 보상을 위한 사전절차인 토지분할·물건조사·감정평가 등이 지연되어 사고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토지분할·물건조사·감정평가 등은 사업추진 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사전절차"에 해당됨에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고이월의 원인을 사업부서가 아닌 민간 등으로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에는 사고이월 관련 방침을 수립할 때 사고이월에 대한 원인별 분류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토지분할·물건조사·감정평가 등의 절차는 서울특별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국토정보공사 및 자치구, 그리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 의뢰 등을 통해 처리되는 것으로 사업부서의 의지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22회계연도 사고이월액(7,660억 5,800만원)의 14.8% 규모에 해당하는 1,139억 3,3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된 예산규모는 서울시 전체 사고이월액의 13.1%, 1,011억 1,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283억 100만원)보다 △271억 9,100만원 감소된 것으로 검토됨

〈표 4-51〉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사고이월 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실	월드컵 대교 건설	시설비	52,299	31,609	60.4%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29,115	19,050	65.4%
경제정책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시설비	32,498	15,397	47.4%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시설비	15,094	14,737	97.6%
안전총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시설비	27,429	8,318	30.3%
경제정책실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시설비	21,198	7,386	34.8%
안전총괄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시설비	62,820	5,957	9.5%
안전총괄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시설비	8,129	5,481	67.4%
문화본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설비	8,820	5,424	61.5%
문화본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시설비	10,979	5,393	49.1%
안전총괄실	남부순환로(개봉사거리) 평탄화	시설비	9,297	4,447	47.8%
균형발전본부	광화문 시민광장 조성	시설비	41,330	3,927	9.5%
한강사업본부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조성	시설비	7,187	3,275	45.6%
푸른도시여가국	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	시설비	7,118	3,200	45.0%
안전총괄실	중차량노선 시설물 성능개선	시설비	9,000	2,874	31.9%
균형발전본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시설비	14,371	2,634	18.3%
안전총괄실	도시고속도로 연결로 추가설치	시설비	5,579	2,043	36.6%
안전총괄실	신당역~신당지하상가 연결통로 설치공사	시설비	3,040	1,940	63.8%
상수도사업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이상) 정비	시설비	4,210	1,734	41.2%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내부 방식	수선유지비	2,377	1,720	72.3%

주1) 통계목 기준, “공사추진중 장애발생”으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4-52〉 사전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상수도사업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이상) 정비	시설비	15,654	13,567	86.7%
도시기반시설본부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교통개선분담금)	시설비	20,725	11,880	57.3%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수선유지비	18,106	8,382	46.3%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시설비	38,997	7,714	19.8%
문화본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시설비	14,447	6,382	44.2%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1,081	6,299	20.3%
안전총괄실	노들로 구조개선	시설비	9,665	5,874	60.8%
문화본부	서서울미술관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시설비	7,096	5,722	80.6%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시설비	11,576	5,628	48.6%
안전총괄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 (교통개선분담금 계정)	시설비	8,129	5,481	67.4%
안전총괄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시설비	5,600	4,991	89.1%
평생교육국	50+캠퍼스 확충	시설비	7,193	4,231	58.8%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시설비	5,107	3,985	78.0%
한강사업본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시설비	8,939	3,836	42.9%
안전총괄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시설비	3,825	3,771	98.6%
시민건강국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 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시설비	3,720	3,645	98.0%
푸른도시여가국	서오릉근린공원(2지구) 조성	시설비	3,696	3,459	93.6%
푸른도시여가국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	6,150	3,075	50.0%
물순환안전국	수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시설비	9,531	2,982	31.3%
도시교통실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3,264	2,977	91.2%

주1) 통계목 기준, “사전절차 지연”사유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4-53〉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시 설 비	80,423	13,949	17.3%
경제정책실	로봇과학관 건립	시 설 비	16,070	7,996	49.8%
안전총괄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시 설 비	62,820	5,957	9.5%
문화본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시 설 비	10,979	5,393	49.1%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 설 비	9,814	5,175	52.7%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시 설 비	14,487	5,093	35.2%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시 설 비	9,391	4,648	49.5%
문화본부	서울사진미술관건립	시 설 비	9,766	4,341	44.4%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시 설 비	14,913	4,207	28.2%
미래공간기획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시 설 비	8,980	3,927	43.7%
평생교육국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5,537	3,681	66.5%
주택정책실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설 비	9,798	3,499	35.7%
평생교육국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무관리비	9,157	3,126	34.1%
복지정책실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시 설 비	5,406	2,896	53.6%
경제정책실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시 설 비	8,029	2,887	36.0%
균형발전본부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시 설 비	13,144	2,645	20.1%
균형발전본부	경복궁 광화문 월대 등 문화재 복원 및 주변 정비	시 설 비	14,371	2,634	18.3%
한강사업본부	암사초록길 조성	시 설 비	10,234	2,486	24.3%
평생교육국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전산개발비	2,959	2,274	76.8%
도시교통실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 지원(시비 보조)	시 설 비	5,328	2,039	38.3%

주1) 통계목 기준, “용역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표 4-54〉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 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시설비	279,883	72,924	26.1%
푸른도시여가국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	38,002	16,203	42.6%
푸른도시여가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시설비	15,775	8,562	54.3%
안전총괄실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시설비	5,816	4,771	82.0%
푸른도시여가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시설비	2,488	2,403	96.6%
문화본부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설비	2,682	2,120	79.0%
안전총괄실	율곡로(창경궁앞)구조개선	시설비	13,835	1,481	10.7%
안전총괄실	장기미집행 도로 토지보상비	시설비	37,878	1,210	3.2%
안전총괄실	동호로~장터길 연결체계 개선	시설비	4,999	1,000	20.0%
푸른도시여가국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시설비	61,700	823	1.3%
안전총괄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시설비	11,139	569	5.1%
푸른도시여가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구공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17,016	499	2.9%
도시교통실	보행불편해소를 위한 횡단보도 확충정비	시설비	4,578	376	8.2%
푸른도시여가국	응봉근린공원(성동)조성 - 금호산 지역	시설비	400	367	91.7%
푸른도시여가국	온수근린공원 (13지구 등 4개소) 조성	시설비	388	288	74.4%
안전총괄실	금호로 확장	시설비	800	180	22.5%
안전총괄실	방학로(신동아아파트 사거리 ~우이동 광장) 도로확장	시설비	1,551	137	8.9%
푸른도시여가국	오동근린공원(가지구) 경계부 재조성	시설비	167	118	70.3%

주1) 통계목 기준, “보상협의 지연”으로 발생것은 모두 18개 세부사업임

〈표 4-55〉 기타 사유로 사고이월 된 주요 사업[주1)]

(단위 : 백만원)

실·본부·국	세 부 사 업	통계목	예산현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300,536	36,029	12.0%
도시교통실	저상버스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53,950	8,873	16.4%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기타보상금	9,023	6,370	70.6%
기후환경본부	수소차 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921	6,300	23.4%
도시교통실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시설비	6,118	5,754	94.0%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시설비	9,391	4,648	49.5%
물순환안전국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	시설비	17,442	4,281	24.5%
물순환안전국	센터내 토목 및 건축시설물 보수공사	수선유지비	9,590	3,073	32.0%
물순환안전국	국가하천 유지보수	시설비	6,325	2,471	39.1%
푸른도시여가국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	17,896	2,128	11.9%
물순환안전국	제어계측설비 유지보수 및 개량	시설비	2,880	1,511	52.5%
기후환경본부	운행경유차 저공해 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950	1,456	6.6%
기후환경본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7,825	1,362	17.4%
물순환안전국	농축 및 소화설비 유지보수	시설비	5,322	1,247	23.4%
물순환안전국	농축시설 유지보수 및 개량	시설비	6,945	1,114	16.0%
물순환안전국	오니처리분야 기계설비 유지보수	시설비	6,960	1,083	15.6%
한강사업본부	한강저수로 정비	시설비	3,033	1,045	34.5%
기후환경본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779	1,043	37.5%
물순환안전국	홍제천(종로구)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시설비	2,385	902	37.8%
물순환안전국	수처리분야 계측기 유지관리	시설비	2,260	832	36.8%

주1) 통계목 기준, “기타”사유로 발생된 사고이월액 규모가 큰 20개 세부사업임

⑴ 주요 사고이월 발생사례 검토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조성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된 근린공원 용지에 대하여 실효되기 전에 보상하여 도시내 녹지 비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 2,798억 8,300만원의 26.0%, 729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30.5%, 855억 3,9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제출됨

- 서울시는 법령에 따라 도시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20회계연도부터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보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토지주의 보상협의 불응외에도 토지분할 및 물건조사 등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보상절차를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지난 21회계연도의 경우에도 토지주가 보상협의에 불응하는 등의 사유로 1,857억 4,5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례가 있고, '22회계연도 사고이월액 729억 2,300만원의 경우에도 전액 직전 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재이월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21회계연도로부터 재이월(사고이월)된 729억 2,300만원의 경우에는 회계연도 종료 직전 감정평가가 완료된 부지에 대해 ’23년도로 소요예산을 사고이월하여 보상사업을 계속하고자 한 것으로 사료됨

〈표 4-56〉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결산결과 (’22~’2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22	279,883	121,419	158,463	85,539	72,923 (전액 재이월)	0주1)
2021	450,542	264,467	186,075	185,745	329	1
2020	250,027	149,441	585	585	-	100,000

주1)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사업의 불용액은 625원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특히, 보상사업의 특성상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토지주가 서울시의 보상의지를 신용하지 않아 불용을 감수하더라도 일정규모의 소요예산 편성이 필요하나

- 동 사업의 경우, 세출재원중 지방채를 일부 포함하고 있어 회계연도내 집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까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추진방식이나 소요재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개선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기후환경본부 친환경차량과 소관 **전기차 보급**은 결산결과 예산현액 3,078억 7,000만원의 11.8%, 364억 7,5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03억 8,100만원이 불용된 바,

〈표 4-57〉 전기차 보급 결산결과 ('22~'2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불 용 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2	307,870	249,964	36,475	-	36,475	11,048	10,381
2021	355,543	277,587	53,200	-	53,200	24,047	707
2020	246,727	172,166	70,528	50,400	20,128	2,652	1,380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동 사업은 지난 '20회계연도의 경우에도 연말에 신청한 차량의 출고까지 2개월 상당의 기간이 필요함을 사유로 예산현액(2,467억 2,700만원)의 28.5%, 705억 2,800만원이 이월되었고, '21회계연도에도 동일 사유로 예산현액 3,555억 4,300만원의 14.9%, 532억원이 사고이월된 사례가 있음

- 동 사업은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부서가 당해연도 물량 예측 등을 통해 예산액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월액 발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것이나 매년 동일한 사유로 수 백억원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되고 있어 환경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이월액 및 불용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소관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은 예산현액 143억 7,800만원의 51.0%, 73억 3,8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표 4-58〉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계	14,378	6,452	7,338	-	7,338	587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52	1,304	-	-	-	248
사무관리비	1,170	1,121	-	-	-	48
공공운영비	908	97	791	-	791	8
연구용역비	253	70	176	-	176	7
기타보상금	9,022	2,495	6,369	-	6,369	157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71	1,364	-	-	-	107
기타 자본이전	-주1)	-	-	-	-	-

주1) 서울특별시, 스마트건강과-6375 ('22.12.20)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사업 예산 전용 계획"
- 통계목 **기타자본이전** 8,000만원의 경우, 전액 동일사업 **사무관리비**로 전용함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지난 ’22년 7월, ’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통해 **연구용역비**(2억 5,300만원)를 편성하였으나,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ISP 용역의 준공기한이 ’23년 3월로 연기됨에 따라 1억 7,6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고,

- **기타보상금**(90억 2,200만원)과 **공공운영비**(9억 800만원)의 경우에도 서울형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제공 및 건강관리도구 구매 용역을 ’23년 12월까지로 계약함에 따라 기타보상금 63억 6,900만원, 공공운영비 7억 9,1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확인됨

〈표 4-59〉 2022년도 추진일정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3,855	
기간제근로자 선발 및 인건비 지급	’22.01~’22.12	1,552	헬스케어 매니저 인건비 지급
시범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22.01~’22.12	300	헬스케어 시범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SW 업그레이드
헬스케어 포인트 지급	’22.01~’22.12	1,000	건강활동 이벤트 진행 건강목표 달성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자문회의 운영 및 사업홍보	’22.01~’22.12	670	방송, 인쇄물 등을 통해 사업홍보
사무공간 대여 및 사무기기 임대	’22.01~’22.12	250	헬스케어 매니저 사무공간, 사무기기 등 임대 및 사무용품 구매
시범사업 평가 분석 및 실태조사	’22.10~’22.12	50	본 사업 전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실태조사 진행
헬스케어시스템 전용 DB서버 구축	’22.08~’22.12	1,471	헬스케어 앱 운영 플랫폼 성능개선과 DB서버 구축
헬스케어 신규 서비스 제공	**’22.08~’22.12**	**808**	**헬스케어 스타트업 연계 서비스 및 공공클라우드 사용**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2.08~’22.12**	**253**	**서울형 헬스케어 플랫폼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스마트 밴드 구매	**’22.08~’22.12**	**7,500**	**스마트 밴드 구매**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1002

- 동 사업의 경우, 지난 '22년 7월, 제2회 추경안 심사시 첨부서류로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에는 스마트 워치 또는 밴드를 제공하는 용역을 '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23년 12월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는 회계연도중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며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였으나, 결산시에는 절차이행 등이 예정보다 지연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된 것으로 재정운용결과를 제출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 소관 **월드컵 대교 건설**은 지난 '22년 10월,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각종 지장물으로 인한 이설 협의, 하천 관리부서의 풍수해기간 공사제한 등 공사추진중 장애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현액(541억 4,100만원)의 58.3%, 316억 8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동 사업은 월드컵 대교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2년도 본예산에 75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난 7월, '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회계연도내 공사일수 부족을 사유로 △280억원을 감액하여 '22년도 예산액을 472억 6,3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음

〈표 4-60〉 월드컵 대교 건설 결산결과 ('22~'18)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2022	54,141	22,531	31,608	-	31,608	1
2021	66,477	59,594	6,878	-	6,878	5
2020	80,241	75,763	4,477	-	4,477	0주1)
2019	72,478	57,233	15,241	5,000	10,241	3
2018	51,185	42,982	8,178	1,927	6,251	24

주1) '20회계연도 결산결과 동 사업의 불용액은 60원임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 월드컵 대교 건설은 지난 2010년 3월 착공하여 2021년 9월 개통하였으나 '23년 현재, 13년째 공사를 계속하고 있고, '23년도에도 지난 1월 준공예정일을 연기한 바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다양한 민원 및 자치구의 요구 등에 대응함을 사유로 공사시작 이후 설계를 15회 변경한 사실이 있어 공사추진 및 예산 집행에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문화본부 박물관과 소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22회계연도 본예산에 시설비(144억 7,600만원)와 감리비(5억 5,200만원) 등을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현액(156억 6,300만원)의 96.6%, 151억 3,600만원이 이월된 것임

〈표 4-61〉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 계 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 계	15,663	518	15,136	8,000	7,136	8
사무관리비	95	95	-	-	-	-
연구용역비	70	70	-	-	-	-
시 설 비	14,446주1)	65	14,381	8,000	6,381	-
감 리 비	985	231	754	-	754	-
시설부대비	66주1)	57	-	-	-	8

주1) 서울특별시, 박물관과-1017 ('22. 9.20)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사업 예산 변경 계획"
- 통계목 **시설비**중 3,000만원을 **시설부대비** 3,000만원으로 변경함

※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시설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144억 4,600만원)중 0.4%, 6,500만원만 당해연도에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55.3%, 8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44.3%, 63억 8,100만원은 사고이월된 바,

▪ 사업부서가 지난 '21년 11월,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심사시 첨부서류로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22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3년 8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 공사 주관부서가 '22년 6월 수립한 방침에는 착공일로부터 787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22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시행하는 1차 공사기간은 '22년 8월부터 '23년 11월까지로 확인되는 바, 예산확보를 위해 제출된 사업별설명서와는 달리 실제로는 이월이 전제된 예산편성 사례로 판단됨

〈표 4-62〉 2022년도 추진일정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5,160	
건축공사	’22.03~’23.08	15,049	건축공사 착공, 공사감리 및 회의 진행, 설계의도 구현비 지급
자문위원회 운영	’22.01~’22.12	5	건립추진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가 소자문위원회 진행
토지구입	’22.01~’22.02	15	건립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구입
임시수장고 조성	’22.01~’22.12	90	임시수장고 환경 조성 및 유물수장대, 항온항습기, 보안경비시설 설치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문화본부)」, p.805

▪ 특히, ’22년 9월 13일 착공하여 487일 후인 ’24년 1월 12일 준공하는 것으로 계약된 것으로 확인되어 명시이월된 **시설비**(80억원)의 경우에도 ’24년도까지 재이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감리비**의 경우에도 예산현액(9억 8,500만원)중 76.5%, 7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된 바,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용역) 기간도 순연되어 소요예산을 사고이월한 것이나,

▪ 동 공사의 감리용역은 ’22년 8월 29일부터 ’23년 9월 19일(계약일로부터 387일)까지로 계약되어 지난 ’21회계연도에 명시이월된 4억 3,300만원중 2억 100만원이 재이월(사고이월)된 것으로 검토됨

- 아울러 결산서의 첨부서류인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에는 동 사업의 이월 사유에 대해 ①명시이월은 사전절차 지연, ②사고이월은 공사진행에 따른 예산집행시기 미도래로 기재하고 있으나

▪ 사전절차인 횡성군의 인가는 ’22년 2월 이미 승인되었으며 오히려 공고, 계약 등이 늦어져 이월된 것임에도 이월 사유를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은 서울시가 이월 사유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관련 기준은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 작성시 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월명세서 및 이월비 집행명세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소관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은 예산현액(55억 3,600만원)의 66.4%, 36억 8,0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예산현액(91억 6,700만원)의 34.0%, 31억 2,5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음

-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과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은 ’22년 2월부터 ’22년 12월까지 11개월간 서울 거주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게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 당초에는 ’22년도 소요예산으로 ’23년도 1～2월까지 교육 서비스를 중단없이 제공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22년 12월 16일 제정되어 사업예산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은 지난 ’21년 5월, 제출된 ’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당시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사업근거로 제시하였으나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의 조항은 선언적인 규정이므로 사업추진 근거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고, 사업부서의 방침에도 “향후 조례 제정 필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 그럼에도 사업부서가 사업의 효과성 및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21회계연도부터 ’23년도까지 예산편성 필요성을 주장함에 따라 소요예산을 의

결한 사업임에도 결산에 따른 이월 사유를 “관련 조례 미비”로 기재한 것은 자기모순적 행태로 사료됨

▪ 더욱이 사업부서는 금년도 과업지시서에도 콘텐츠 제공시기를 “시작일로부터 2024년 2월까지 항시 서비스 가능한 콘텐츠 제공”으로 명시하고 있어 향후 ’23회계연도 결산의 경우에도 사고이월 등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사업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63〉 서울런 관련 사업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5,536	1,548	3,680	-	3,680	308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9,167	5,545	3,125	-	3,125	495

※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은 예산현액(32억 4,200만원)의 78.8%, 25억 5,6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21.1%, 6억 8,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임

〈표 4-64〉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계	3,242	-	2,556	-	2,556	685
공공운영비	283	-	283	-	283	-
전산관리비	2,959	-	2,273	-	2,273	685

※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동 사업은 ’22년도 본예산 심사시에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으며 예결위 심사에서도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전액 삭감하여 의결한 사업이나,

■ 회계연도 개시 이후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일부 통계목을 조정하여 ’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동 사업을 다시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추진 의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사례가 있음

- 사업부서는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22년 5월 방침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플랫폼 구축 용역이 ’23년 8월로 준공이 연기됨에 따라 감리용역도 ’23년 8월로 연기되어 지출원인 행위액 25억 5,600만원 전액을 “집행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한 것으로 확인됨

〈표 4-65〉 2022년도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편성 경과

(단위 : 백만원, %)

통계목	예산안 Ⓐ	의회감액 Ⓑ	기정예산 Ⓒ	제1회추경안 Ⓓ	본예산대비 추경증액요청비 Ⓔ=Ⓓ/Ⓑ
계	3,502	△3,502	0	3,242	92.6
공공운영비	283	△283	0	283	100.0
전산개발비	2,959	△2,959	0	2,959	100.0
사무관리비	250	△250	0	-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10	0	-	-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예산(안) 사업별설명서(평생교육국)」, p.123

■ 동 사업은 ’22년 5월, 수립한 방침에는 시스템 구축 완료 시점을 ’23년 3월로 예측하고, 실제 서비스 개시는 ’23년 4월로 계획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어 이미 방침수립 시점부터 예산의 이월이 고려된 사업으로 판단되나

▪ ’22년 3월, 제1회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서울시가 제출한 사업별설명서에는 ’22년 12월까지 플랫폼 구축을 완료할 것으로 적시되어 있어, 의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감액조정 등을 피하고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부서에 대한 엄중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66〉 2022년도 추진일정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3,242	
행안부 사전협의	’22.04~’23.05	-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행안부 사전협의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22.05~’22.12	3,242	서울형 교육 플랫폼 구축 및 관련 운영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 p.425

❍ 은평병원 소관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은 예산현액(14억 8,700만원)의 93.2%, 13억 8,700만원(**시설비**) 전액이 사고이월되고, **기타자본이전** 1억원은 전액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67〉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결산결과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합계	1,487	-	1,387	-	1,387	100
시설비	1,387	-	1,387	-	1,387	-
기타자본이전	100	-	-	-	-	100

※ 자료근거 :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 은평병원은 지난 ’20년 8월, 노후시설 개선 및 시립 정신병원의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23년 12월까지 기존 건물의 일부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 ’21년 2월, ’24년 5월까지로 리모델링 기간을 연장하고 일부 병실을 재배치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바 있음

- 그러나 회계연도 개시 직후인 ’22년 1월, 병원 이전 이후에 관련 공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설계용역 착공일이 늦어져 준공일도 연기되어 시설비 전액(13억 8,700만원)이 사고이월된 것임

  ▪ 사업부서는 ’22년 1월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회계연도 내에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계획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협의 등 사전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난 ’22회계연도에는 3월, 7월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감액조정할 기회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 향후에는 회계연도내 사전절차 미이행 등으로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액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4-68〉 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 계약현황

계 약 일 자	2022년 09월 19일		
착 수 일 자	2022년 09월 20일		
완 수 일 자	2023년 03월 18일	총 완 수 일 자	2023년 05월 17일
	총 부 기 계 약 금 액		금 차 계 약 금 액
계 약 금 액	14억 8,000만원		11억 400만원

서울특별시, 총무부-31631 ('22. 9.21) "계약체결통보[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1차)]"

⇓

계 약 일 자	2022년 09월 19일		
변경전금차완수일자	2022년 03월 18일	변경후금차완수일자	2022년 05월 02일
변경전총완수일자	2023년 05월 17일	변경후총완수일자	2023년 05월 17일
	총 부 기 계 약 금 액		금 차 계 약 금 액
변 경 전 계 약 금 액	14억 8,000만원		11억 400만원
변 경 금 액	0원		2억 8,200만원
변 경 후 계 약 금 액	14억 8,000만원		13억 8,700만원

서울특별시, 총무부-37475 ('22.12. 6) "변경계약 체결통보[은평병원 현대화사업(리모델링) 설계용역(1차)]"

〈표 4-69A〉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푸른도시여가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279,883	121,419	72,923	26.1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보급	307,870	249,964	36,475	11.8
안전총괄실	월드컵 대교 건설	54,141	22,231	31,608	58.4
물순환안전국	난지물재생센터 3차(총인) 처리시설 설치	35,130	15,962	19,168	54.6
상수도사업본부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이상) 정비	50,676	30,948	16,842	33.2
푸른도시여가국	도시계획시설(녹지) 조성 및 재정비	38,001	4,772	16,203	42.6
경제정책실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38,606	13,890	16,135	41.8
상수도사업본부	광암수계 배수관로 정비	22,658	5,194	15,254	67.3
도시기반시설본부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125,053	106,338	14,374	11.5
도시교통실	저상버스 도입	53,949	45,074	8,873	16.4
안전총괄실	제2자유로 종점부(난지도길) 입체화(교통개선분담금 계정)	29,022	20,087	8,752	30.2
푸른도시여가국	암사역사공원 조성	15,774	2,208	8,561	54.3
상수도사업본부	아리수 생산재료비 (입상활성탄 구매)	18,417	9,264	8,535	46.3
물순환안전국	차집관로 보수공사	18,106	9,700	8,382	46.3
경제정책실	로봇과학관 건립	16,592	8,568	7,996	48.2
푸른도시여가국	시공원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53,447	45,590	7,713	14.4
경제정책실	양재 R&D 기업지원시설 조성	22,357	8,569	7,677	34.3
시민건강국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14,378	6,452	7,338	51.0
문화본부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15,663	518	7,136	45.6
문화본부	서서울미술관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8,450	2,054	6,360	75.3
기후환경번부	수소차 보급	36,616	24,154	6,300	17.2
기후환경본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6,432	18,904	6,298	17.3

〈표 4-69B〉 주요 사고이월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4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안전총괄실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66,030	59,849	6,181	9.4
안전총괄실	노들로 구조개선	10,383	3,906	6,113	58.9
도시교통실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6,446	421	6,025	93.5
푸른도시여가국	생활밀착형 공원 조성	11,684	5,867	5,642	48.3
관광체육국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10,497	4,976	5,518	52.6
문화본부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2,003	6,480	5,518	46.0
안전총괄실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교통개선분담금 계정)	8,853	3,332	5,516	62.3
문화본부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9,472	4,046	5,424	57.3
복지정책실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21,444	16,113	5,328	24.8
안전총괄실	동부간선도로 확장 (녹천교~의정부시계)	6,000	1,004	4,990	83.2
재무국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12,690	7,700	4,990	39.3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내부 방식	13,741	7,355	4,843	35.2
안전총괄실	봉화산(중화역 주변) 도로확장	5,816	1,045	4,770	82.0
안전총괄실	남부순환로 (개봉사거리) 평탄화	10,135	5,466	4,668	46.1
한강사업본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9,407	4,451	4,647	49.4
평생교육국	50+캠퍼스 확충	8,227	3,615	4,572	55.6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 교육시설 확충	6,092	623	4,409	72.4
평생교육국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15,932	11,305	4,394	27.6
문화본부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1,176	6,773	4,373	39.1
물순환안전국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17,441	11,029	4,280	24.5
미래공간기획관	송현동 부지 활용 및 공원화 사업	9,429	5,164	4,052	43.0

〈표 4-70A〉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물순환안전국	면목로 62~104간 하수관로 개량	600	-	600	100.0
물순환안전국	CSOs 간이처리시설 수질개선 시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00	-	200	100.0
푸른도시여가국	낙산근린공원 (하늘공원 전망대) 조성	50	-	50	100.0
물순환안전국	중랑천(성동구) 횡단 징검다리 설치	653	-	653	100.0
주택정책실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사업	194	1	192	99.0
소방재난본부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1,615	17	1,597	98.9
푸른도시여가국	명일근린공원 조성	1,000	-	986	98.6
안전총괄실	태릉~구리IC간 도로확장	3,825	53	3,771	98.6
균형발전본부	국가상징 가로조성 (청와대~서울역~용산~한강구간)	600	-	591	98.5
서울역사박물관	청계천 스마트 박물관 구축	200	-	196	98.0
시민건강국	가락119안전센터-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건립	4,031	80	3,946	97.9
도시교통실	제4차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150	-	145	96.7
시민건강국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지원	166	-	159	96.1
푸른도시여가국	친환경 수공간 조성	500	19	480	96.0
복지정책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577	3	552	95.6
물순환안전국	난계로 238 일대 외 1개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380	-	363	95.6
푸른도시여가국	단절된 녹지축 연결	2,538	107	2,424	95.5
물순환안전국	군자-2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634	134	2,500	94.9
도시교통실	버스경영 및 재정운영 합리화 연구용역	200	-	189	94.8
주택정책실	주거종합계획 수립	305	5	287	94.3
도시교통실	충무로(돈화문로) 도로공간 재편	6,446	421	6,025	93.5

〈표 4-70B〉 사고이월률 90% 이상 사업현황 (사고이월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실·본부·국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사고이월액	사고이월률
시민건강국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리모델링) 추진	1,487	-	1,387	93.3
경제정책실	DMC 활성화	835	54	774	92.7
문화본부	문화재 실측도면 제작	200	2	185	92.5
물순환안전국	면목3-5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400	267	3,132	92.1
도시교통실	가로변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200	-	184	92.1
푸른도시여가국	응봉근린공원(성동) 조성-금호산 지역	400	14	366	91.7
물순환안전국	북가좌삼거리 일원 하수관로 개량	1,000	82	917	91.7
도시교통실	간데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3,413	286	3,126	91.6
복지정책실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1,182	88	1,077	91.2
푸른도시여가국	서오릉근린공원(2지구) 조성	3,895	235	3,533	90.7
물순환안전국	가로공원로76길 91외 1개소 누후 사각형거 개량	710	2,659	641	90.4
물순환안전국	목동2 빗물펌프장 토출관로 보강공사	500	49	450	90.1

⑵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사고이월

❍ 관련 조례는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시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은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어,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시민참여예산중 이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검토됨

〈표 4-71〉 2022회계연도 시민참여예산 집행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세부사업수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19	22,944	22,647	-	-	-	379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1 ('23. 4.17)

-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조례에 따라 단년도 사업에 한정하여 선정하는 제도임에도 그동안 사전절차 지연, 공사추진중 장애발생 등으로 소요예산을 이월하여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결산심사시 지적되었으나

- '22회계연도에는 시민참여예산 사업을 다음 해로 이월하지 않았으며 불용액의 경우에도 시민참여예산 예산현액(229억 4,400만원)중 1.6%, 3억 7,900만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

〈표 4-72〉 시민참여예산 결산결과 ('22~'20)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당초규모 (운영계획)	예산안 (서울시편성)	본예산 (의회의결)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2022	70,000주1)	25,540	22,834	22,944	22,565	-	379
2021	70,000주2)	60,513	42,390	43,361	40,907	109	2,689
2020	70,000주3)	67,501	61,167	61,167	56,186	876	4,105

※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 결산서

주1)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11008 ('20.12.24)

주2)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109 ('20. 1. 6)

주3)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1191 ('19. 2. 8)

7. 순세계잉여금 관련

❍ 결산상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국고보조금 실제반납금을 제외한 잉여금을 의미함

❍ '22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세계잉여금은 4조 1,379억 4,600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제출된 바, 직전 회계연도(6조 4,428억 4,500만원)보다 △35.7%, △2조 3,048억 9,900만원 감소된 것임

〈표 4-73〉 결산상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합 계		4,137,946	6,442,845	4,012,630
	일반회계	3,254,857	5,871,201	3,465,276
	특별회계 주1)	883,089	571,643	547,354

※ 주1)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 일반회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5조 8,712억 100만원)보다 △44.6%, △2조 6,163억 4,400만원 감소한 3조 2,548억 5,7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였고,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5,716억 4,300만원)보다 54.5%, 3,114억 4,500만원 증가한 8,830억 8,9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실적 개선, 개인사업자 소득 증가, 지방소비세 세율인상(21%→23.7%) 등의 요인으로 당초 일반회계 세입예산(38조 3,196억 4,200만원)보다 2조 3,945억 100만원 증가한 40조 7,141억 4,300만원이 수납되었고,

- 세출결산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32조 9,602억 200만원)보다 4조 1,565억 7,100만원 증가한 37조 1,167억 7,3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 (6조 2,127억 9,900만원)보다 △2조 6,154억 2,900만원 감소한 3조 5,973억 7,000만원이 발생한 바,

- 결산상 잉여금에서 이월액(2,751억 6,100만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673억 5,100만원)을 차감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직전 회계연도(5조 8,712억 100만원)보다 △2조 6,163억 4,400만원 감소한 3조 2,548억 5,700만원으로 제출됨

〈표 4-74〉 최종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22~'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최종예산 ①	38,050,516	33,482,498	32,682,236
전년도이월액 ②	269,125	352,348	260,811
예산현액 ③=①+②	38,319,642	33,834,846	32,943,048
세입결산액(수납액) ④	40,714,143	39,173,001	35,872,828
세출결산액(지출액) ⑤	37,116,773	32,960,202	31,952,141
결산상잉여금 ⑥=④-⑤	3,597,370	6,212,799	3,920,686
채무상환 ⑦	0	0	0
명시이월액 ⑧	81,713	85,225	184,969
사고이월액 ⑨	193,448	181,274	167,379
계속비이월액 ⑩	0	0	0
보조금실제반납금 ⑪	67,351	75,097	103,062
세계잉여금 ⑫=⑥-(⑦+⑧+⑨+⑩+⑪)	3,254,857	5,871,201	3,465,276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23. 4.29)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상 **세계잉여금**의 처리 방법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 '22회계연도에 발생된 일반회계 결산상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 중 관련 법령 등에 따라 ①시세수입 초과수납에 따른 자치구 전출(8,355억 3,100만원), ②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4,413억 3,900만원), ③타 회계전출(331억 7,900만원) 등 이른바 "법정정산분"(1조 3,100억 4,900만원)을 제외한 잉여금(1조 9,448억 800만원)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표 4-75〉 '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결산상 세계잉여금 사용계획

(단위 : 백만원)

세계잉여금	법정정산분				여유재원
	소계	자치구교부 ①	교육청전출 ②	타회계전출 등 ③	
3,254,857	1,310,049	835,531	441,339	33,179	1,944,808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23. 4.29)

- 서울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상 세계잉여금에서 법정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5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에서 발생된 세계잉여금(3조 2,548억 5,700만원)의 경우에도 법정정산분(1조 3,298억 8,100만원)을 제외한 1조 9,249억 7,600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9,624억 8,7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세계잉여금의 55.2%, 1조 624억 8,000만원을 적립할 것으로 확인됨

❍ 아울러 서울시의 경우, 일부 특별회계에 대해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23년도 세입예산안에 미리 편성

하고 있음

- 관련 법령은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와 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매년 6월 직전 회계연도 결산 이후 특별회계에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잉여금 전망분에 대해 서울시는 시행령이 아닌 행정안전부 회신을 근거로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대해 전년도 11월,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순세계잉여금 전망분을 미리 편성하여 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

- 서울시로서는 특별회계는 수입원이 한정되어 불가피한 편성일 수 있으나 회계연도 중 대규모 지출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경 재원을 미리 소진하게 되어 추가적인 재정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예결특위 예산 및 결산 심사과정중 지적하였음에도 '2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규모가 확정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23년도 세입예산에 편성한 바,

〈표 4-76〉 순세계잉여금 추계액의 세입예산안 편성 현황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22회계연도 결산상잉여금 (추 계 액)	2023년도 세입 편성액 (순세계잉여금)	잉여금 잔액
합 계		372,740	372,736	0
	교통사업특별회계	78,349	78,349	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313	9,313	0
	주택사업특별회계	157,636	157,636	0
	도시개발특별회계	74,788	74,788	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134	4,134	0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870	870	0
	소방특별회계	25,281	25,281	0
	수도사업특별회계	22,365	22,365	0

❍ 결과적으로 ’22회계연도 결산결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는 세계잉여금 발생규모가 ’23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의 추계액보다 감소되어 ’23회계연도중 기편성된 세입예산을 감액조정 하여야 하며 감액하지 않는다면 ’24년 6월, 결산시 세수결손이 확실시되어 ’23회계연도중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경우,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66억 3,1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본예산에 93억 1,300만원을 편성하여 실잔액은 △159억 4,400만원이 발생되었고,

-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3억 6,200만원임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8억 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실상 △5억 800만원이라는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하였고,

- **소방특별회계**의 경우에는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이 190억 8,800만원임에도 2023년도 본예산에 252억 8,100만원을 미리 편성한 결과 △61억 9,300만원의 세수결손이 발생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2023년도중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한강수질개선 특별회계**, **소방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한 감액조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매년 법령위반 사항임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동일한 편성 사례를 개선하지 않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4-77〉 순세계잉여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①	'23년도 본예산 기편성액 ②	실잔액 ①-②
합계		4,137,946	372,740	3,765,206
	일반회계	3,254,857	0	3,254,85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3,613	0	23,613
	교통사업특별회계	202,604	78,349	124,25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31	9,313	△15,944
	주택사업특별회계	431,536	157,636	273,900
	도시개발특별회계	98,876	74,788	24,087
	균형발전특별회계	11,174	0	11,174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385	0	7,38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318	4,134	14,18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362	870	△508
	소방특별회계	19,088	25,281	△6,193
	수도사업특별회계	49,246	22,365	26,881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27,514	0	27,51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세무과-8174 ('23. 4.29)

8. 지방채 관련

❍ ’22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11조 8,980억 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액(10조 7,749억 400만원)보다 9.4%, 1조 1,230억 9,800만원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지방채 현재액은 342억원으로 ’21회계연도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342억원을 **차입**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22회계연도에는 추가 차입이나 상환은 없어 직전 회계연도와 동일한 것으로 제출됨

❍ **특별회계**의 경우, ’22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직전 회계연도말(9조 9,907억 400만원)보다 12.2%, 1조 2,230억 9,800만원 증가된 11조 2,138억 200만원으로 제출된 바,

- **차입**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차입액(2조 9,390억 5,000만원)보다 △6,574억 240만원 감소된 2조 2,816억 2,600만원으로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①도시철도공채(7,560억 1,600만원), ②교통공사 공채 이관(7,593억 1,000만원), ③경전철 및 차량기지 건설 모집공채(3,240억원)에 총 1조 8,393억 2,600만원을 차입하였고,

▪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을 위해 7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①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1,500억원), ②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992억원), ③풍납토성 복원 보상 등(230억원)에 총 2,722억원을 차입하였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별내선 광역철도 건설비 확충을 위해 930억원을 차입하고,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을 위해 71억원을 차입하였음

▪ 서울시의 경우, 예산서중 예산총칙으로써 당해연도 지방채 발행규모를 정하고 있어 지난 ’22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812억 7,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00억원으로 공채발행 및 차입금 발행규모를 조정한 바 있음

〈표 4-78〉 2022회계연도 공채발행 및 차입금 발행한도 및 발행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2년도 본예산 발행한도 ①	'22년도 제2회 추경 발행한도 ②	증감 ③=②-①	'22년도 당해 발행규모[주1] ④	한도초과액 ⑤=④-②	비고 (전년도이월발행)
총계		1,708,895	1,506,949	△201,946	1,362,316	△144,633	160,000
일반회계		-	-	-	-	-	-
특별회계		1,708,895	1,506,949	△201,946	1,362,316	△144,633	160,000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계	1,134,675	1,134,675	-	1,080,016	△54,659	-
	도시개발 특별회계	173,220	181,274	8,054	119,300	△61,974	152,900[주2]
	주택사업 특별회계	280,000	70,000	△210,000	70,000	-	-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121,000	121,000	-	93,000	△28,000	-
	균형발전 특별회계	-	-	-	-	-	7,100[주3]

※ 주1) 전년도 이월발행분, 교통공사 공채 이관 제외
주2)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00억원, 신림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29억원
주3)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18억원,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개선 38억원, 시립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15억원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5007 ('23. 4.27)

- 지방채 상환의 경우, 특별회계는 직전 회계연도 상환액(9,120억 2,800

만원)보다 938억 2,400만원 증가된 1조 58억 5,200만원을 상환한 바,

▪ 회계별 지방채 상환내역을 검토하면,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9,778억 1,800만원을 상환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65억 6,0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441억 4,900만원을 상환하였음

❍ **기금**의 경우, '22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은 6,500억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을 위해 2,00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시기 도래 채무에 대하여 3,000억원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됨

❍ '22회계연도의 경우 일반회계와 5개 특별회계에서 발행한 지방채 그리고 기금에서 발행한 지방채(2,000억원)까지 포함하여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공채발행 및 차입금 한도 범위 내에서 차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서울시의 '22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총액(2조 4,816억 2,600만원)중 이월발행액(1,600억원)을 제외하면 2조 3,216억 2,600만원의 지방채가 발생된 것으로 지방채 발행한도액(2조 6,112억 9,500만원) 범위내로 사료되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인접(88.9%)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2회계연도 지방채 발행총액(2조 4,816억 2,600만원)중 ①이월발행액(1,600억원)과 ②도시철도공채 이관분(7,593억 1,000만원)을 제외하면 '22회계연도에는 지방채 1조 7,223억 1,600만원이 발행된 것으로 검토됨

- '22회계연도말 지방채 현재액의 경우, '21회계연도말(10조 7,749억 400만원)보다 1조 1,230억 9,800만원 증가한 11조 8,980억 200만원으로 확인되어 보다 적극적인 지방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4-79〉 2022년도 지방채 편성액 및 발행한도액 관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 방 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총 한도액[주1)]		2,611,295
	기본한도액		1,597,400
	별도한도액		1,013,895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공채 발행액	810,675
		'22년 차환채 발행액	183,220
		지역일자리사업(투자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000
지방채 발행규모	총 발행규모		2,321,626
	일반회계		-
	특별회계		2,121,626
	기금		200,0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일부 재구성, 교통공사 공채 이관 포함, 이월발행액 제외

주1)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7307 ('21. 7.15), "2022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제출"

❍ 특히, 회계연도 말('22년 12월 12일) 1개월 만기 공채 19건, 7,663억원을 발행한 바, 연중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연도말까지 공채 발행이 순연된 것으로 사료되나,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1,500억원을 포함한 5건 1,600억원은 '21회계연도에 승인된 지방채를 이월 발행한 것으로, 회계연도 종료에 임박하여 1개월 만기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필수적인 차입인지, 특별회계별 세수 결손 등을 희석하기 위한 발행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됨

- 더욱이, **도시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이월발행을 포함하여 2,722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23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본예산에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중 747억원을 미리 편성하였으나, '22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실 잔액은 240억원으로 제출된 바, 연도말 고금리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22회계연도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세수결손이 발생되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0〉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명	'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①	'23년도 본예산 기편성액 ②	실잔액 ①-②
도시개발특별회계	98,876	74,788	24,087

- **도시개발특별회계**중 지방채를 발행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의 경우, 예산현액(2,798억 8,300만원)의 53.6%, 1,500억원을 '22년 12월 12일 차입하였으나, 1,214억 1,900만원만 집행하고, 1,584억 6,300만원은 '23년도로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 사고이월액 (729억 2,400만원)은 직전 회계연도 명시이월액(1,857억 4,500만원)이 재이월된 것이고, 명시이월(855억 3,900만원)의 경우에도 토지주 보상 협의 미흡 및 사전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것으로써 제출되어 회계연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이자까지 발생시키며 지방채를 발행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의 경우 '자금 없는 이월'을 통해 지방채 발행을 다음 연도로 순연하여 이자 부담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미 지난 '21회계연도에 발행 승인된 지방채이기에 '22회계연도중 발행이 불가피하여 지방채를 이월발행한 것으로 사료되나,

- ’22회계연도에 예산 집행이 어려워 지방채 발행액중 729억 2,400만원을 ’23년도로 사고이월(자금있는 이월)한 것으로 검토되는 바, 연도말에 1개월 만기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 하여도 5억 5,600만원의 이자 부담을 불필요하게 발생시킨 사례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4-81〉 2022회계연도지방채발행현황(회계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발행일	발행액	차입선	발행금리(%)	상환기간
총계		2,481,62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소계	1,839,327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22.1차)	2022.06.30	475,783	매출공채(도시철도공채)	1.25	7년거치 일시상환
교통공사 도시철도공채 채무이관('22.2차)	2022.12.31	283,527	매출공채(도시철도공채)	1.25	7년거치 일시상환
도시철도공채(도시철도공채 차환)	2022.1.1.~12.31	756,016	매출공채(도시철도공채)	1.0	7년거치 일시상환
신림선 경전철 건설	2022.12.12	22,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동북선 경전철 건설	2022.12.12	58,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진접선(5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	2022.12.12	84,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지하철 건설부채 차환	2022.12.12	160,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주택사업특별회계	소계	70,000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2022.12.12	70,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도시개발특별회계	소계	272,20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원금상환	2022.12.12	23,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시공원)	2022.12.12	150,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양재대로 구조개선	2022.12.12	9,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신림~봉천터널 건설	2022.12.12	22,4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신림 공영차고지 빗물저류조 설치	2022.12.12	2,9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사업	2022.12.12	16,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상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2022.12.12	26,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상환)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2022.12.12	13,4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상환)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건설	2022.12.12	9,5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소계	93,000			
별내선(9호선연장) 광역철도 건설	2022.12.12	13,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GTX 등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2022.12.12	80,0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균형발전특별회계	소계	7,100			
시가지권역 구릉지 일대 교통편의 개선사업	2022.12.12	3,8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2022.12.12	1,8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시립청소년음악창작센터 건립	2022.12.12	1,500	모집공채(공모공채)	4.45	1개월물('23.1월 상환)
기금	소계	200,000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2022.02.11	200,000	모집공채(공모공채)	2.585	3년거치 일시상환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재구성

〈표 4-82〉 지방채 증감 현황[주1)]

(단위 : 백만원)

구 분	차입선	2021년도말 현재액	2022회계연도중 증감현황 차입 ①	상환 ②	증감 ①-②	2022년도말 현재액	2022 회계연도중 이자지급
총 계		10,774,904	2,481,626	1,358,528	1,123,098	11,898,002	194,212
일반회계(합계)		34,200	-	-	-	34,200	783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일반회계)	모집공채	34,200	-	-	-	34,200	783
특별회계(합계)		9,990,704	2,281,626	1,058,528	1,223,098	11,213,802	181,909
기타특별회계 (소계)		9,990,704	2,281,626	1,058,528	1,223,098	11,213,802	181,909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4,084,926	756,016	620,000	136,016	4,220,943	77,050
교통공사 공채 이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도시철도공채	662,999	759,310	97,818	661,491	1,324,490	10,494
도시철도 확충 및 안전개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집공채	260,000	-	260,000	△260,000	-	6,370
경전철 건설 및 차량기지 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모집공채	794,100	324,000	-	324,000	1,118,100	5,159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도시기금	760,174	-	44,149	△44,149	716,024	18,206
저소득 임대주택 매입 (주택사업특별회계)	모집공채	980,000	70,000	-	70,000	1,050,000	14,502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1,280,000	150,000	-	150,000	1,430,000	24,44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SOC 확충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674,600	99,200	-	99,200	773,800	16,626
풍납토성 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금융차입	30,960	-	30,960	△30,960	-	699
풍납토성 복원보상 (도시개발특별회계)	모집공채	48,000	23,000		23,000	71,000	859
신림-봉천터널 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23,443	-	3,025	△3,025	20,418	334
서부간선지하도로건설 (도시개발특별회계)	지역상생발전기금	41,200	-	2,575	△2,575	38,625	306
동부간선도로확장 등 (도시개발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31,400	-	-	-	31,400	428
동부간선도로확장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83,400	-	-	-	83,400	1,138
광역철도 건설비 부담 등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모집공채	190,000	93,000	-	93,000	283,000	4,392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등 (균형발전특별회계)	모집공채	45,500	7,100	-	7,100	52,600	900
공기업특별회계 (소계)		-	-	-	-	-	-
기금(합계)		750,000	200,000	300,000	△100,000	650,000	11,520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 (재난관리기금)	모집공채	750,000	200,000	300,000	△100,000	650,000	11,520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액 제외), 이월발행분 포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표 4-83〉 채무현황 및 2023년도중 차입 · 상환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차입선	발행시기	당초 발행액	발행조건		'22년도말 현재액	'23년도중 지방채 차입·상환계획			'23년도말 전망액
				발행금리	거치기간(상환기간)		차입	원금상환	이자지급	
채 무 총 계	(가)+(나)+(다)		12,206,908			11,898,002	1,833,107	2,162,891	179,601	11,568,217
지방채 주1)	(가)=Ⓐ+Ⓑ+Ⓒ		12,206,908			11,898,002	1,833,107	2,162,891	179,601	11,568,217
일 반 회 계	Ⓐ		34,200			34,200	-	-	783	34,200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건립 등	모집공채	'21.12.	34,200	2.29 (고정금리)	5년 (일시상환)	34,200	-	-	783	34,200
특 별 회 계	Ⓑ=①+②		11,522,708			11,213,802	1,833,107	2,162,891	167,315	10,884,017
기 타 특 별 회 계	①		11,522,708			11,213,802	1,833,107	2,162,891	167,315	10,884,017
도시철도공채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공채	2016~2022	4,220,943	1.0~1.5 (고정금리)	7년 (일시상환)	4,220,943	777,252	376,300	38,349	4,621,894
교통공사공채이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도시철도공채	2016~2017	1,324,490	1.25~2.0 (고정금리)	7년 (일시상환)	1,324,490	-	392,153	38,478	932,337
경전철건설및차량기지건설 (도시철도건설사업비)	모집공채	2019~2022	1,118,100	0.957~4.45 (고정금리)	1개월, 3년,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1,118,100	500,000	624,000	14,675	994,100
저소득임대주택매입 (주택사업)	주택도시기금	1995~2017	1,018,574	1.8(변동)~3.0 (고정)	10년거치 20년상환 30년거치 15년상환	716,024	-	48,166	16,827	667,858
저소득임대주택매입 (주택사업)	모집공채	2019~2022	1,050,000	1.06~4.45 (고정금리)	1개월, 3년, 4년,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1,050,000	395,000	310,000	16,434	1,135,000
장기미집행도시공원보상 (도시개발)	모집공채	2019~2022	1,430,000	1.297~4.4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30년 (일시상환)	1,430,000	20,000	150,000	19,809	1,300,000
강남순환도시고속도등SOC확충 (도시개발)	모집공채	2019~2022	773,800	1.751~4.4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773,800	45,854	124,996	14,411	694,658
풍납토성복원보상 (도시개발)	모집공채	2019~2022	71,000	1.79~4.45 (고정금리)	1개월, 10년, 1년 (일시상환)	71,000	10,000	23,000	944	58,000
신림-봉천터널건설 (도시개발)	지역상생발전기금	2019.12.20	24,200	1.5 (고정금리)	2년거치 8년상환	20,418	-	3,025	289	17,393
서부간선지하도로건설 (도시개발)	지역상생발전기금	2020.07.24	41,200	0.75 (고정금리)	2년거치 8년상환	38,625	-	5,150	275	33,475
동부간선도로 확장 등 (도시개발)	공공자금관리기금	2020.10.30	31,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31,400	-	-	428	31,400
동부간선도로 확장 (광역교통시설)	공공자금관리기금	2020.10.30	83,400	1.365 (고정금리)	5년거치 10년상환	83,400	-	-	1,138	83,400
광역철도건설비부담등 (광역교통시설)	모집공채	2019~2022	283,000	1.751~4.45 (고정금리)	1개월, 5년, 7년, 10년 (일시상환)	283,000	85,000	93,000	4,325	275,000
마을문화복합공간등문화시설확충 (균형발전)	모집공채	2019~2022	52,600	1.79~4.45 (고정금리)	1개월, 3년, 5년, 10년 (일시상환)	52,600	-	13,100	926	39,500
공 기 업 특 별 회 계	②		-			-	-	-	-	-
기 금	Ⓒ		650,000			650,000	-	-	11,503	650,000
재난관리기금 재원조성 (재난관리기금)	모집공채	'20년~'21년	650,000	1.237~1.729 (고정금리)	3년, 5년 (일시상환)	650,000	-	-	11,503	650,000
채 무 부 담 행 위	(나)		-	-	-	-	-	-	-	-
보 증 채 무 이 행 책 임 액	(다)		-	-	-	-	-	-	-	-

※주1) 지방채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을 포함함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표 4-84〉 부채 · 채무[주1)] 현황 (2022~2020)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1	2020
부채		44,776,082	43,540,404	38,778,150
채무		22,017,477	20,019,584	16,645,690
서울시	부채	19,360,205	18,793,543	14,562,810
	채무	11,898,002	10,774,904	8,142,182
서울시 투자기관	부채	25,415,876	24,746,860	24,215,339
	채무	10,119,475	9,244,680	8,503,508
서울교통공사[주2)]	부채	6,556,959	6,607,231	6,253,470
	채무	3,538,000	3,597,310	3,488,209
서울시설공단[주3)]	부채	199,348	186,577	167,579
	채무	-	-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부채	172,091	147,393	130,510
	채무	71,197	53,627	49,194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채	18,168,757	17,634,093	17,529,908
	채무	6,328,312	5,504,234	4,885,591
서울에너지공사	부채	307,276	170,298	133,872
	채무	181,965	89,506	80,512
서울물재생시설공단[주4)]	부채	11,442	1,266	-
	채무			-

※ 주1) 채무는 지방채증권과 차입금,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이행책임액을 포함함

주2)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17. 3. 3) 되어 **지하철 양공사(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를 서울교통공사로 통합** ('17. 5.31)

주3) 제27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17. 3. 3)되어 **공단 명칭변경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서울시설공단)**

주4) 제293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20. 4.29)되어 **서남,탄천 물재생센터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전환됨**('20.12.1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정담당관-4396 ('23. 4.13)

9.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결산 관련 검토

(1) 개 요

❍ 서울시는 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수도사업특별회계”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서 공기업특별회계는 “결산서, 사업보고서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 및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결산서는 관련 기준에 따라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와 별도로 제출하여 결산승인을 받고 있음

(2) 공기업특별회계 불용액 관련

❍ 공기업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결산 결과, 예산현액(8,679억 6,300만원)의 8.1%, 703억 5,700만원이 불용되고,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예산현액(1조 340억 8,100만원)의 10.2%, 1,049억 9,8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85〉 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가)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주1)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금액 (나)	비율 (나)/(가)
계	1,754,777	147,267	1,902,045	1,567,158	158,926	603	175,356	9.3
수도사업	817,380	50,582	867,963	731,733	65,268	603	70,357	8.1
공기업 하수도사업	937,396	96,684	1,034,081	835,424	93,657	-	104,998	10.2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주1) 공기업특별회계 세출결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사고이월과 건설개량이월액이 포함됨

❍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불용액을 집계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과는 달리 사업별 불용사유를 ①보조금 정산잔액, ②예산절감액, ③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④낙찰차액, ⑤지출잔액, ⑥예비비로 유형화하지 않고 있어 사업별 불용사유 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관련 기준처럼 사업별 불용사유가 유형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의 경우에도 사유별로 불용액이 관리되도록 개선요청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우리 위원회는 현행 관련 기준의 제한사항을 최소화시키고자 불용액 발생사유를 관련 기준에 준하여 제출받은 바,

-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703억 5,700만원) 중 **지출잔액**이 전체의 62.1%, 436억 9,800만원 발생되었고, **낙찰차액**이 17.8%, 125억 4,700만원 발생된 것으로 확인됨

〈표 4-86〉 수도사업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불용액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수도사업 특별회계	70,357	7,912	-	1,455	12,547	43,698	4,743
	(100.0)	(11.2)	-	(2.1)	(17.8)	(62.1)	(6.7)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548억 4,100만원이며, 이 중 76.4%, 419억 2,200만원이 13개 세부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토됨

〈표 4-87〉 사업비[주1)]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주택 내 녹에 취약한 급수관 교체지원	16,294	6,867	-	9,426	57.8
정수센터 시설 정비	54,986	40,449	5,710	8,223	14.9
수도계량기 교체	21,426	16,601	-	4,825	22.5
정수센터 시설 유지보수	22,930	18,773	465	3,691	16.1
장기사용 송배수관 (400mm 이상) 정비	50,676	30,948	16,842	2,885	5.6
장기사용 송배수관 (350mm 이하) 정비	51,367	48,928	-	2,439	4.7
상수도 블록시스템 공급체계 구축	16,828	13,362	1,710	1,756	10.4
아리수 생산재료비	146,256	136,003	8,535	1,718	1.1
노후 밸브 정비	25,902	24,355	-	1,546	5.9
배수지 내부 방식	13,741	7,355	4,843	1,542	11.2
배수지 등 정밀안전진단 점검 및 시설정비	8,380	6,956	-	1,424	16.9
미아 배수지 건설	1,570	324	-	1,246	79.3
상수도 밸브실 등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6,025	4,827	-	1,197	19.8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단기 해외연수 운영**은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을 대상으로 단기 국외훈련을 통해 체득한 우수정책 사례를 시정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현액(1억 3,000만원) 전액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 동 사업의 경우 '20회계연도부터 코로나19를 사유로 예산현액의 100%를 3개년도 연속 불용시킨 바, 감염병 추이는 사업부서가 예측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것이나 예산 성립 후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요예산을 삭감하여 세출 재원의 한정성을 공유하여야 할 것임에도 예산 전액을 반복적으로 불용 처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한 사례로 사료됨

〈표 4-88〉 회계연도별 단기 해외연수 운영 불용현황 ('20~'22)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사 유
2022	130	-	-	130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중단
2021	116	-	-	116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중단
2020	212	-	-	212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연수 중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및 **수도사업 해외진출**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집행률이 계속 70% 이하인 세부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취소 또는 축소를 사업집행 부진 사유로 기재하였으나,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어온 점을 고려하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실시하는 등 추진방식을 개선하거나 집행상황을 감안하여 추진 불가능한 경우에는 감액 경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표 4-89〉 상수도 인력의 전문화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		불용		불용사유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22	788	541	68.7	246	31.3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및 우수공무원 문화시찰 취소로 집행부진
2021	775	442	57.0	333	43.0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취소
2020	1,305	706	54.0	599	46.0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신규 전입자, 현장실습, 우수공무원 문화시찰, 워크숍) 중단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표 4-90〉 수도사업 해외진출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		불용		불용사유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불용률	
2022	60	14	23.4	46	76.6	코로나 19로 인한 공무국외출장 및 정책연수 취소로 집행부진
2021	59	18	31.0	41	69.0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제한 및 취소로 공무국외출장 제한, 정책연수 취소 등 사업추진에 중대한 지장
2020	118	24	20.4	93	79.6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 축소 및 우수공무원 문화시찰 취소로 집행부진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2회계연도에 발생된 불용액(1,049억 9,800만원) 중 **지출잔액**(58.8%, 617억 2,400만원)과 **낙찰차액**(29.0%, 304억 7,200만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표 4-91〉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불용액 발생사유

(단위 : 백만원, %)

회계명	불용액	발생사유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04,998	-	-	12,253	30,472	61,724	548
	(100.0)	-	-	(11.7)	(29.0)	(58.8)	(0.5)

※ 자료근거 : '22회계연도 결산서

- 공기업특별회계는 불용액 발생에 따른 잉여금이 해당 회계로 재순환되는 구조로 인하여 추경을 통해 당해연도 세출재원으로 재활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극적일 수 있으나, 타 회계로 전입·전출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특수성도 있어 향후에는 추경을 통해 세출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발생된 불용액 중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등에서 발생한 불용액을 제외한 **사업비**에서 발생 불용액은 1,019억 8,200만원이고, 그중 71.3%, 726억 6,800만원이 10억원 이상 불용이 발생한 사업으로 검토됨

〈표 4-92〉 사업비[주1)]중 주요 불용액 발생 현황 (불용액 10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예산현액	지 출 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 용 액	불 용 률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 사 업 비	198,316	166,223	-	32,092	16.2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 비	17,901	8,702	1,744	7,454	41.6
난지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 수 보 강	32,096	27,282	-	4,813	15.0
서남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 수 보 강	22,274	18,598	-	3,675	16.5
물재생센터 소화조 효율개선 실 증 용 역	3,357	78	-	3,278	97.7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6,611	23,192	164	3,254	12.2
중랑물재생센터 운영	50,334	47,460	-	2,874	5.7
중랑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 수 보 강	20,665	15,465	2,365	2,833	13.7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 수 및 개 선	10,395	5,663	2,030	2,701	26.0
탄천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보 수 보 강	8,889	6,277	-	2,611	29.4
탄천 하수처리구역 사각형거 보 수 보 강	20,091	17,518	-	2,573	12.8
하수 차집관로 유지보수	17,441	11,029	4,280	2,131	12.2
하수도 악취 저감 추진	10,095	8,595	180	1,318	13.1
서남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9,142	8,088	-	1,053	11.5

주1) 기본경비, 인건비성 경비, 예비비 제외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물재생시설과 소관 **서남 물재생센터 소각시설 개선**은 소각장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 및 악취 방지시설 보강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3억)의 41.6%, 1억 2,4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93〉 서남 물재생센터 소각시설 개선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소계	낙찰차액	지출잔액
시설비	300	175	-	124	20	104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동 사업은 사업설명서에 사업기간을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재하고, '22회계연도의 경우 소각시설 개선을 위한 정비방향 및 개선범위 등을 검토하고자 기본계획 용역비(3억원)를 편성하였으나, 예산현액의 41.6%(1억 2,400만원)를 불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고 정하고 있는 바,

  ▪ 동 사업은 ①'22년 2월, 기본계획 용역 입찰공고 의뢰, ②3월, 기본계획 용역계약 체결, ②4월,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 용역(수의)계약을 의뢰함에 따라, 5월경에는 예산의 불용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실소요예산으로 경정하여 다른 사업의 세출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물재생계획과 소관 **하수관로 수리(水理)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은 서울형 배수체계를 구축하고자 시행된 용역으로 예산현액(1억 9,200만원)의 49.6%, 9,5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됨

〈표 4-94〉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계	본예산	전년도 이월		
시설비	192	-	192	97	95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2 ('23. 4.17)

- 동 사업은 당초 '19년 8월, 용역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여 18개월 간 용역을 수행한 후 '21년 2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공정지연 및 추가과업 시행에 따라 3차례 용역기간 연장 및 1차례 용역금액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22년 7월에서야 용역을 준공함

- 지난 '21년도 예산편성 시점에는 동 용역이 '21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어 '19년도에 체결된 용역의 기간 연장, 과업범위 조정에 따른 잔여 공정율에 대한 용역비를 추가 정산·지급하기 위해 소요예산(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어 해당 예산은 전액 사고이월하고, '22년 7월, 용역 준공 시점에 용역 계약변경을 통해 정산금을 지급하고, 예산현액의 49.6%(9,500만원)를 불용처리한 것으로 확인됨

-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은 과거 서울시에서 유사한 용역을 시행한 사례가 없는 기술용역으로 용역기간 변경, 과업범위 조정 등 불가피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월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으면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바,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할지라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정밀추계하여 이월 및 불용되는 규모를 축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Ⅴ. 재무제표 (재무회계결산)

○ **재무제표**는 관련 법령에 의해 결산서를 구성하는 서류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와 **현금흐름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및 부속명세서**를 작성,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임

○ 재무회계 결산결과 2022회계연도 자산은 152조 1,708억 7,200만원, 부채는 19조 3,602억 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32조 8,106억 6,600만원임

○ 2022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결과 **비용**은 39조 6,214억 600만원이고, **수익**은 40조 6,431억 6,000만원으로 비용과 수익의 차액인 **재정운영결과**는 1조 217억 5,300만원 흑자임

〈표 5-1〉 재무제표(요약)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재정상태			재정운영		
	자산	부채	순자산	수익	비용	운영차액
2022	152,170,872	19,360,205	132,810,666	40,643,160	39,621,406	1,021,753
2021	149,366,846	18,793,544	130,573,302	40,058,042	38,024,213	2,033,829
증감액 (증감률)	2,804,026 (1.9)	566,661 (3.0)	2,237,364 (1.7)	585,118 (1.5)	1,597,193 (4.2)	△1,012,076 (△49.8)

※ 작성부서가 재무제표의 총괄설명중 '재무제표 요약'은 '백만원 단위'로 기재하고, 재정상태표 이하의 내용은 '원'단위로 기재하여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검토보고서의 경우, 백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함

1. 재정상태표 관련

○ **재정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

○ ’22회계연도말 **자산**은 152조 1,708억 7,2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149조 3,668억 4,600만원)보다 1.9%, 2조 8,040억 2,600만원 증가하였음

○ ’22회계연도의 **부채**는 19조 3,602억 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부채(18조 7,935억 4,400만원)보다 5,666억 6,100만원(3.0%) 증가하였음

○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132조 8,106억 6,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 순자산(130조 5,733억 200만원)보다 2조 2,373억 6,400만원(1.7%) 증가하였음

⑴ 자산

○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됨

○ 2022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자산은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83조 2,772억 8,000만원(54.7%), 도서관, 주차장, 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29조 7,407억 5,900만원(19.6%), 장기대여금,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18조 5,849억 600만원(12.2%), 현금 및 현금성자산인 **유동자산** 10조 5,056억 7,700만원(6.9%) 등의 순으로 구성됨

〈표 5-2〉 자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자 산 총 계	152,170,873	100.0	149,366,846	100.0	2,804,028	1.9
유 동 자 산 주1)	10,505,677	6.9	11,085,140	7.4	△579,463	△5.2
투 자 자 산 주2)	18,584,906	12.2	18,018,620	12.1	566,286	3.1
일반유형자산 주3)	8,975,640	5.9	8,184,681	5.5	790,960	9.7
주민편의시설 주4)	29,740,759	19.6	29,496,091	19.7	244,668	0.8
사회기반시설 주5)	83,277,280	54.7	81,924,745	54.8	1,352,536	1.7
기타비유동자산 주6)	1,086,608	0.7	657,568	0.4	429,041	65.2

※ 주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유동자산)

- 유동자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으로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금융상품,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 등을 말한다.

주2)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투자자산)

- 투자자산은 회계실체가 투자하거나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비유동자산으로서 장기금융상품, 장기융자금, 장기투자증권 등을 말한다.

주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일반유형자산)

- 일반유형자산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토지, 건물, 입목 등을 말한다.

주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주민편의시설)

-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1년 이상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자산으로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을 말한다.

주5)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사회기반시설)

- 사회기반시설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파급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지역사회의 기반적인 자산으로서 도로, 도시철도, 상수도시설, 수질정화시설, 하천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주6)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기타비유동자산)

-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으로서 보증금, 무형자산 등을 말한다.

○ **자산**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조 8,040억 2,800만원 증가한 바,

- 주요 증감 내용은 도로 및 도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1조 3,525억 3,600만원, 토지 등 일반유형자산 7,909억 6,000만원, 장기투자증권 등 투자자산 5,662억 8,6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현금성 자산 등 유동자산 5,794억 6,300만원이 감소한 것임

○ 직전 회계연도 대비 **증감내역**을 계정별로 검토하면

- **유동자산**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794억 6,300만원(△5.2%) 감소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보다 ①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3,241억 6,400만원 감소, ②정기예금 등 단기금융상품 △3,250억 6,500만원 감소, ③기타유동자산 △2,709억 3,300만원 감소, ④미수세금 1,390억 8,2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5-3〉 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0,505,676	11,085,140	△579,463	△5.2
① 현금및현금성자산 주1)	8,508,054	8,832,218	△324,164	△3.7
② 단기금융상품 주1)	204,935	530,000	△325,065	△61.3
④ 미수세금 주2)	675,555	536,473	139,082	25.9
미수세외수입금 주3)	290,039	206,082	88,957	40.7
미수정부간이전수익	353,305	231,845	121,460	52.4
단기대여금 주4)	38,676	38,042	634	1.7
재고자산 주5)	33,780	38,070	△4,290	△11.3
③ 기타유동자산	401,623	672,556	△270,933	△40.3

※ 주1) 현금및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과 기금의 연도말 예치금 통장금액
주2) 세입결산액 중 목적세와 보통세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3) 세입결산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 채권(대손충당금 차감)
주4)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대여금(대손충당금 차감)
주5) 판매 또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자산

- **투자자산**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5,662억 8,600만원(3.1%) 증가한 것으로 ①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주식투자 등 장기투자증권 4,637억 9,600만원 증가, ②민간 및 서울시 산하 공사·공단 융자금 등의 장기대여금 1,009억 6,800만원 증가 등에 따른 것임

〈표 5-4〉 투자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8,584,906	18,018,620	566,286	3.1
② 장 기 대 여 금 주1)	1,133,842	1,032,874	100,968	9.8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8,976	8,855	121	1.4
① 장 기 투 자 증 권 주2)	17,442,580	16,978,784	463,796	2.7
기 타 투 자 자 산	17,459	15,817	1,642	10.4

※ 주1) 결산일로부터 회수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대여금

주2) 민간이나 지방공사·공단 등 공기업에 대한 출자금 및 투자주식 등

- **일반유형자산**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7,909억 5,900만원(9.7%) 증가된 것으로 ①토지의 경우, 서울의료원남측과 송현동부지의 상호 교환취득(5,744억),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 결과 용도폐지 등 유형변경(66건, 2,158억원) 등으로 6,552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②건물의 경우, 애스플렉스센터 등 자산유형변경(6건, 1,827억), 감가상각(△632억) 등으로 1,260억 9,5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③항공기 및 선박등을 포함한 차량운반구 △138억 100만원 등은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5〉 일반유형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975,640	8,184,681	790,959	9.7
① 토 지	7,541,662	6,886,377	655,285	9.5
입 목	3,011	3,011	0	0.0
② 건 물 주1)	940,377	814,282	126,095	15.5
구 축 물 주1)	18,084	17,698	386	2.2
기 계 장 치 주1)	5,429	6,330	△901	△14.2
③ 차 량 운 반 구 주1)	86,929	100,730	△13,801	△13.7
집 기 비 품 주1)	216,771	209,507	7,264	3.5
임 차 개 량 자 산 주1)	625	158	466	294.7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62,748	146,584	16,164	11.0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주민편의시설**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2,446억 6,800만원(0.8%) 증가된 바, ①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경우, 관악도시자연공원 등 건설중인자산 완공대체(11건, 1,677억), 삼청근린공원 등 소규모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2,217억) 등 4,309억 2,700만원 증가하였고, ②문화 및 관광시설의 경우, 풍납토성 토지(2건, 2,710억) 및 소규모주택 매입(848억) 등 2,444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③체육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등은 △5,145억 7,900만원 감소 한 것으로 제출됨

〈표 5-6〉 주민편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29,740,759	29,496,091	244,668	0.8
도 서 관 주1)	84,621	84,108	513	0.6
주 차 장 주1)	1,492,859	1,469,775	23,085	1.6
① 공 원 주1)	11,257,911	10,826,984	430,927	4.0
박 물 관 및 미 술 관 주1)	422,932	391,905	31,027	7.9
동 물 원 주1)	9	25	△14	△60.8
수 목 원 및 휴 양 림 주1)	353,963	354,713	△749	△0.2
② 문 화 및 관 광 시 설 주1)	3,919,891	3,712,330	244,417	6.6
문화및관광시설사용수익권	(31,098)	(36,856)	5,758	15.6
③ 체 육 시 설 주1)	1,895,283	1,932,697	△37,412	△1.9
사 회 복 지 시 설 주1)	1,312,180	1,282,901	29,279	2.3
③ 의 료 시 설 주1)	672,764	825,384	△152,619	△18.5
③ 교 육 시 설 주1)	891,344	925,566	△34,221	3.7
기 타 주 민 편 의 시 설 주1)	5,653,182	5,653,455	△272	△0.0
③ 건설중인주민편의시설	1,783,813	2,073,105	△289,292	△14.0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사회기반시설**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1조 3,525억 3,600만원(1.7%) 증가한 바, ①도로의 경우, 동부간선도로(5,142억), 우면산터널등 사용수익권 변동분(5건, 7,798억)등 1조 3,525억 3,600만원이 증가하고, ②도시철도의 경우, 신림선경전철(4,132억), 하남선(3,268억)등 도시철도 8,127억 9,100만원 증가하였고, ③수질정화시설도 4,877억 3,300만원 증가하였으나, ④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조 1,424억 4,100만원, ⑤도시철도사용수익권은 △3,979억 6,000만원 감소된 것으로 제출됨

〈표 5-7〉 사회기반시설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83,277,280	81,924,744	1,352,536	1.7
① 도 로	61,666,039	60,372,922	1,293,117	2.1
도로사용수익권	(1,903,156)	(2,185,041)	281,885	△12.9
② 도 시 철 도	5,423,391	4,610,600	812,791	17.6
⑤ 도시철도사용수익권	(1,162,187)	(764,227)	△397,960	52.1
상 수 도 시 설 주1)	4,917,849	4,943,467	△25,618	△0.5
③ 수 질 정 화 시 설 주1)	6,637,176	6,149,444	487,732	7.9
하 천 부 속 시 설	3,573,177	3,528,121	45,056	1.3
폐 기 물 처 리 시 설 주1)	107,313	102,180	5,133	5.0
재 활 용 시 설 주1)	145,223	150,454	△5,231	△3.5
농 수 산 기 반 시 설 주1)	301,594	302,059	△465	△0.2
기 타 사 회 기 반 시 설 주1)	26,914	28,380	△1,466	△5.2
④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3,543,944	4,686,385	△1,142,441	△24.4

※ 주1) 감가상각누계액 반영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기타유동비자산**은 직전 회계연도보다 4,290억 4,000만원 증가된 바, ①기타비유동자산의 경우, 주택도시공사 위탁대행사업비(장기안심주택보증금, 5,831억) 등 4,440억 6,500만원이 증가하고, ②전산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55억 8,300만원이 증가하고, 취약계층(공동생활가정 등)보증금 등 ③보증금 △206억 9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8〉 기타 비유동자산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1,086,608	657,568	429,040	65.2
③ 보증금	333,783	354,392	△20,609	△5.8
임차보증금	53,149	52,553	595	1.1
전신전화가입권	9	10	△1	△10.0
기타보증금	280,624	301,829	△21,205	△7.0
② 무형자산	157,066	151,483	5,583	3.7
지적재산권	72	44	28	63.6
전산소프트웨어	48,777	46,181	2,596	5.6
용익물권	103,702	102,334	1,368	1.3
건설중인무형자산	4,513	2,924	1,589	54.3
① 기타비유동자산	595,758	151,693	444,065	292.7
세입세출외장기보관현금	69,109	88,922	△19,813	△22.3
유산자산	58,612	55,712	2,900	5.2
생물자산	900	859	41	4.8
장기일반미수금 주1)	466,995	6,179	460,816	7457.8
기타비유동자산	140	20	120	600.0

※ 주1) 대손충당금 차감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⑵ 부채

○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됨

○ 2022회계연도말 서울특별시의 **총부채**는 19조 3,602억 5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8조 7,935억 4,300만원)보다 3.0%, 5,666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음

- 부채는 단기차입금, 유동성 장기차입금, 유동성지방채증권 등의 **유동부채**(25.2%, 4조 8,795억 2,700만원)와 1년 이후에 상환이 도래되는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의 **장기차입부채**(50.4%, 9조 7,609억 600만원) 그리고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에 속하지 않는 시직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포함한 **기타비유동부채**(24.4%, 4조 7,197억 7,100만원)로 구성되어 있음

- **부채**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5,666억 6,100만원 증가한 바, ①장기차입부채 3,445억 3,100만원, ②기타비유동부채 3,60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③유동부채는 △1,385억 5,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9〉 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부 채 총 계	19,360,205	18,793,544	566,661	3.0
③ 유 동 부 채	4,879,527	5,018,086	△138,559	△2.8
① 장기차입부채	9,760,906	9,416,375	344,531	3.7
② 기타비유동부채	4,719,771	4,359,082	360,689	8.3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직전 회계연도 대비 **부채의 주요 증감내역**을 검토하면

- **유동부채**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385억 5,900만원(△2.8%) 감소된 바, ①유동성장기차입부채의 경우, 유동성지방채증권의 모집공채(7,523억), 도시철도공채(506억) 등 7,785억 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②기타유동부채의 경우, 일반미지급금(자치구조정교부금 △5,332억, 교육청전출금△3,811억) 등 △9,171억 2,5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0〉 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4,879,527	5,018,086	△138,559	△2.8
단기차입금	-	-		-
①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137,095	1,358,528	778,566	57.3
유동성장기차입금	-	30,960	△30,960	
유동성지방채증권	2,080,753	1,277,819	802,934	62.8
유동성장기정부차입금	56,341	49,750	6,591	13.2
② 기타유동부채	2,742,432	3,659,557	△917,125	△25.1
일반미지급금	2,234,941	3,287,508	△1,052,568	△32.0
선수금	25,161	56,546	△31,385	△55.5
선수수익	35,058	21,602	13,455	62.3
단기예수보관금	332,915	175,914	157,001	89.2
일반미지급비용	112,354	115,985	△3,631	△3.1
유동성장기미지급금	2,000	2,000	0	0.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장기차입부채**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3.7%, 3,445억 3,100만원 증가된 바, ①도시철도공채의 경우 교통공사채무 이관액(7,593억) 등으로 7,97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고, ②일반공모채도 4,06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③공공임대 주택매입을 위한 정부국민주택도시 기금은 △441억 4,9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1〉 장기차입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A=B+E)		9,760,906	9,416,375	344,531	3.7
장기차입금	유동성대체후 잔액 (B=C-D)	833,526	889,868	△56,341	△6.3
	계 (C)	889,868	970,578	△80,709	△8.3
	금융기관차입금	0	30,960	△30,960	△100.0
	③ 정부국민주택도시기금	716,024	760,174	△44,149	△5.8
	공공자금관리기금	114,800	114,800	0	0.0
	지역상생발전기금	59,043	64,643	△5,600	△8.7
	차감(유동성대체액)(D)	56,341	80,709	△24,368	△30.2
지방채증권	유동성대체후 잔액 (E=F-G)	8,927,380	8,526,506	400,873	4.7
	계 (F)	11,008,133	9,804,325	1,203,808	12.3
	①도시철도공채	5,545,433	4,747,925	797,508	16.8
	②일반공모채	5,462,700	5,056,400	406,300	8.0
	차감(유동성대체액) (G)	2,080,753	1,277,818	802,935	62.8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기타비유동부채**는 직전 회계연도보다 3,606억 8,800만원(8.3%) 증가된 바, ①임대주택 공급량 증가에 따른 임대보증금 3,229억 1,500만원, ②진행중인 소송사건 관련 우발부채 258억 100만원 등이 증가하였고, ③장기예수보증금은 △198억 1,100만원, ④재개발임대주택 매입관련 장기미지급금은 △20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제출함

〈표 5-12〉 기타비유동부채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계	4,719,771	4,359,082	360,688	8.3
퇴직급여충당부채	70,115	60,973	9,141	15.0
기타비유동부채	4,649,655	4,298,108	351,547	8.2
③ 장기예수보증금	69,109	88,921	△19,811	△22.3
④ 장기미지급금	7,830	9,830	△2,000	△20.3
① 임대보증금	4,194,470	3,871,555	322,915	8.3
장기미지급이자	168,208	143,566	24,642	17.2
② 우발부채	210,036	184,234	25,801	14.0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 2022회계연도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부채가 3.0%, 5,666억 6,100만원 증가되어 자산총액 대비 부채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직전 회계연도 대비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된 바,

- 도시철도 확충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보상 등 시설투자를 위한 채무발생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이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채무가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5-13〉 총자산 대비 총부채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자 산 (a)	152,170,872	149,366,845	141,257,533
부 채 (b)	19,360,205	18,793,544	14,562,810
비 율 (b/a)	12.7	12.6	10.3

○ 아울러 유동자산 대비 유동부채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유동비율도 소폭 증가된 바, 단기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동원력이 직전 회계연도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이라 할 것이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여전히 커 유동비율의 증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표 5-14〉 유동비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유 동 자 산 (a)	10,505,677	11,085,140	7,302,992
유 동 부 채 (b)	4,879,528	5,018,086	3,241,654
유 동 비 율 (b/a)	46.4	45.3	44.4

⑶ 순자산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130조 5,733억 200만원)보다 1.7%, 2조 2,373억 6,400만원 증가한 132조 8,106억 6,600만원임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되는 바,

- **고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83.1%, 110조 3,638억 8,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08조 9,702억 6,600만원)보다 2.2%, 1조 3,936억 1,700만원 증가하였고,

- **특정순자산**은 전체 순자산의 6.5%, 8조 5,761억 2,7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7조 427억 900만원)보다 21.8%, 1조 5,334억 1,800만원 증가하였으며

- **일반순자산**은 고정순자산과 특정순자산을 제외한 것으로서, 전체 순자산의 10.4%, 13조 8,706억 5,500만원이나, 직전 회계연도(14조 5,603억 2,600만원)보다 △4.7%, △6,896억 7,1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5〉 순자산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금액	구성비		
순자산총계		132,810,666	100.0	130,573,302	100.0	2,237,364	1.7
	고정순자산	110,363,883	83.1	108,970,266	83.5	1,393,617	1.3
	특정순자산	8,576,127	6.5	7,042,709	5.3	1,533,418	21.8
	일반순자산	13,870,655	10.4	14,560,326	11.2	△689,671	△4.7

2. 재정운영표 관련

○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회계실체가 수행한 사업의 원가와 회수된 원가 정보를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

〈표 5-16〉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증감률
재정운영결과(A-B)	1,021,753	2,033,829	△1,012,075	△49.8
비 용 (A)	39,621,406	38,024,212	1,597,194	4.2
수 익 (B)	40,643,160	40,058,042	585,118	1.5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총비용**은 39조 6,214억 600만원이고, **총수익**은 40조 6,431억 6,0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조 217억 5,300만원 흑자로 검토됨

(1) 성질별 재정운영표

○ 재정운영표는 항목의 분류 방식에 따라 성질별 재정운영표와 기능별 재정운영표로 작성하는 바, 성질별 재정운영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 **총비용**은 39조 6,214억 6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38조 242억 1,300만원)대비 4.2%, 1조 5,971억 9,400만원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40조 6,431억 6,0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40조 580억 4,200만원) 대비 1.5%, 5,851억 1,800만원 증가하였음

〈표 5-17〉 재정운영표(성질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증 감 률
			금 액	구성비		
재정운영결과(A-B)	(1,021,753)		(2,033,829)		△1,012,075	△49.8
비 용 (A)	39,621,406	100.0	38,024,213	100.0	1,597,194	4.2
인건비주1)	2,153,165	5.4	2,040,284	5.4	112,881	5.5
운영비주2)	7,661,588	19.3	7,282,520	19.2	379,068	5.2
정부간이전비용주3)	22,270,149	56.2	22,385,912	58.9	△115,762	△0.5
민간등이전비용주4)	5,370,114	13.5	5,126,096	13.5	244,018	4.8
기타비용주5)	2,166,388	5.4	1,189,401	3.1	976,987	82.1
수 익 (B)	40,643,160	100.0	40,058,042	100.0	585,118	1.5
자체조달수익주6)	30,270,397	74.4	29,120,695	72.7	1,149,702	3.9
정부간이전수익주7)	9,986,029	24.5	10,329,714	25.8	△343,685	△3.3
기타수익주8)	386,733	0.9	607,632	1.5	△220,899	△36.4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주1) 급여, 복리후생비, 퇴직급여, 기타인건비 등

주2)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소모품비, 행사비 등

주3)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주4) 민간보조금, 민간장학금, 출연금, 전출금 등

주5) 자산처분손실,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주6) 지방세수익, 경상세외수익, 임세세외수익 등

주7) 지방교부세수익, 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수익, 보조금수익 등

주8) 전입금수익, 기부금수익, 외화환산이익 등

○ **비용**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정부간이전비용**이 전체 비용의 56.2%(22조 2,701억 4,900만원), **운영비**가 전체의 19.3%(7조 6,615억 8,800만원), **민간등이전비용**이 13.5%(5조 3,701억 1,400만원), **인건비**가 5.4%(2조 1,531억 6,500만원), **기타비용**이 전체의 5.4%(2조 1,663억 8,800만원)으로 확인됨

- 비용의 주요 증감사유는 **인건비**의 경우 전년대비 공무원 급여인상(720억원), 급여인상에 따른 복리후생비(535억원) 등이 증가하여 1,128억 8,100만원 증가하였고, **운영비**의 경우, 위탁대행사업비(3,930억원),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543억원) 등이 증가하여 3,790억 6,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정부이전비용**의 경우, 코로나19관련 재난지원금 및 자치구 교부액 감소, 지방교육세 수입 감소 등으로 시도비보조금(△2,372억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1,190억원)이 감소하여 △1,157억 6,200만원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 **민간 등 이전비용**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확대로 민간보조금(1,890억원)이 증가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이차보전금(649억원) 등이 증가하여 2,440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비용**의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자본잠식액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자산손상차손(6,880억원) 또한 증가하였으며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1,596억원) 증가로 9,769억 8,7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8A〉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비용총계	39,621,406	38,024,212	1,597,194
인건비	2,153,165	2,040,284	112,881
1. 급여	1,483,320	1,411,298	72,022
2. 복리후생비	406,435	352,859	53,575
3. 기타인건비	243,737	246,984	△3,247
4. 퇴직급여	19,672	29,140	△9,468
운영비	7,661,588	7,282,520	379,069
1. 도서구입 및 인쇄비	14,948	16,306	△1,358
2. 소모품비	107,622	129,541	△21,919
3. 홍보 및 광고비	40,507	34,524	5,982
4. 지급수수료	311,749	275,979	35,770
5. 일반유형자산수선유지비	46,189	57,599	△11,410
6. 주민편의시설수선유지비	314,193	282,688	31,505
7. 사회기반시설수선유지비	1,457,711	1,403,377	54,334
8. 기타자산유지보수비	83,517	69,616	13,900
9. 교육훈련비	18,598	13,225	5,372
10. 제세공과금	160,344	153,380	6,963
11. 보험료및공제료	17,750	13,113	4,637
12. 임차료	81,791	66,329	15,462
13. 출장비	9,678	9,909	△230
14. 연구개발비	18,893	22,597	△3,703
15. 이자비용	273,332	222,591	50,740
16. 업무추진비	10,929	9,678	1,250
17. 행사비	49,830	48,955	875
18. 의회비	9,826	9,887	△61
19. 위탁대행사업비	3,711,511	3,318,464	393,046
20. 주민자치활동운영비	2,776	2,518	258
21. 징수교부금	648,710	782,778	△134,067
22. 연료비	15,469	9,612	5,856
23. 원·정수구입비	53,835	54,468	△632
24. 공립대학운영비	87,533	66,819	20,713
25. 기타운영비	114,335	208,552	△94,217

〈표 5-18B〉 재정운영표(성질별) 비용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정부간이전비용	22,270,149	22,385,912	△115,762
1. 시도비보조금	11,318,427	11,555,649	△237,221
2. 자치구조정교부금	6,476,386	6,298,489	177,897
3.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4,850	5,298	△448
4. 국가에대한부담금	38,873	21,877	16,996
5.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4,141,904	4,260,983	△119,078
6. 교육기관운영비보조금	289,706	243,614	46,092
민간 등 이전비용	5,370,114	5,126,096	244,018
1. 민간보조금	3,205,750	3,016,745	189,005
2. 민간장학금	247	253	△6
3. 이차보전금	216,260	151,352	64,907
4. 출연금	771,307	822,555	△51,247
5. 전출금비용	949,376	929,122	20,253
6. 지방공공기관보조금	37,627	30,895	6,731
7 기타이전비용	189,545	175,170	14,374
기타비용	2,166,388	1,189,401	976,987
1. 자산처분손실	8,363	6,285	2,077
2. 자산손상차손	793,653	105,639	688,014
3. 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비	151,204	69,354	81,849
4. 주민편의시설감가상각비	476,952	317,290	159,662
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13,635	593,376	20,258
6. 무형자산상각비	24,466	23,835	630
7. 대손상각비	96,026	71,754	24,272
8. 기타비용	2,086	1,863	222

○ **수익**을 항목별로 분류하면,

- 지방세, 경상세외수익 등의 **자체조달수익**이 수익총계의 74.5%, 30조 2,703억 9,7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의 **정부간이전수익**이 24.6%, 9조 9,860억 2,900만원, 교육청 전입금 등의 **기타수익**이 0.9%, 3,867억 3,300만원 발생된 것으로 제출됨

- 수익의 **주요 증감사유**는 전년 지방소득세(1조 4,762억원), 지방소비세(6,826억원) 증가 등으로 **자체조달수익**이 1조 1,497억 200만원 증가하였고, 코로나19 관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감소하여 자치구 교부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정부간이전수익**은 △3,436억 8,4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제출됨

〈표 5-19〉 재정운영표(성질별) 수익 상세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수익총계	40,643,160	40,058,041	585,118
자체조달수익	30,270,397	29,120,695	1,149,702
1. 지방세수익	26,387,286	26,115,582	271,704
2. 경상세외수익	2,531,899	2,230,657	301,242
3. 임시세외수익	1,351,211	774,455	576,755
정부간이전수익	9,986,029	10,329,714	△343,684
1. 지방교부세수익	269,223	209,377	59,846
2. 국고보조금수익	8,862,581	9,445,232	△582,650
3. 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익	405,235	318,121	87,113
4. 자치단체간부담금수익	448,989	356,982	92,006
기타수익	386,733	607,632	△220,899
1. 전입금수익	343,477	349,923	△6,446
2. 기부금수익	10,597	5,200	5,397
3. 대손충당금환입	373	13,138	△12,765
4.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0	222	△222
5. 기타수익	32,285,345	13,490	18,794
6. 자산손상차손환입	0	225,657	△225,657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과-19473 ('23. 4.17)

⑵ 기능별 재정운영표

○ 기능별 재정운영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됨

○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것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는 2조 338억 2,900만원 흑자였고, 2022회계연도의 경우에도 1조 217억 5,400만원 흑자로 제출됨

〈표 5-20〉 재정운영표(기능별)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증 감 액	증감률
재 정 운 영 결 과 (A-B)	(1,021,754)	(2,033,829)	△1,012,075	△49.8
재 정 운 영 순 원 가 (① + ② + ③ - ④) (A)	27,110,378	25,508,371	1,602,007	6.3
사 업 순 원 가 ①	24,729,809	23,789,071	940,738	4.0
관 리 운 영 비 ②	2,234,374	2,180,896	53,478	2.5
비 배 분 비 용 ③	1,680,818	716,010	964,808	134.7
비 배 분 수 익 ④	1,534,623	1,177,607	357,016	30.3
일 반 수 익 (B)	28,132,132	27,542,200	589,932	2.1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 **재정운영순원가**는 직전 회계연도(25조 5,083억 7,100만원)보다 1조 6,020억 700만원 증가한 27조 1,103억 7,800만원으로

- **사업순원가**는 총원가에서 사업수익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3조 7,890억 7,100만원)보다 9,407억 3,800만원 증가한 24조 7,298억 900만원이며

-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정부간이전비용 및 민간등이전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조 1,808억 9,600만원)보다 534억 7,800만원 증가한 2조 2,343억 7,400만원이고,

- **비배분비용**은 직전 회계연도(7,160억 1,000만원)보다 9,648억 800만원 증가한 1조 6,808억 1,800만원이고

- **비배분수익**은 1조 5,346억 2,300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1조 1,776억 700만원)보다 3,570억 1,6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제출됨

○ **일반수익**은 직전 회계연도(27조 5,422억원)보다 5,899억 3,200만원 증가한 28조 1,321억 3,200만원으로 제출됨

3. 순자산변동표 관련

○ **순자산변동표**는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 2022회계연도 순자산의 증가는 2조 1,395억 5,900만원이고, 순자산의 감소는 9,239억 4,900만원으로 순증액은 1조 2,156억 1,0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증가사유**로는 ①조직개편 및 부서이관 등 자산이동에 따른 증가액 416억 400만원, ②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증가액 등 1조 2,799억 4,000만원, ③기타 순자산의 증가액 8,180억 1,500만원임

- 순자산의 주요 **감소사유**로는 ④재산이관·관리전환에 따른 자산 감소액 △416억 400만원, ⑤주택재개발 등의 양여·기부로 인한 자산 감소액 △234억 500만원, ⑥토지분할 감소 및 합병말소등의 기타 순자산의 감소액 △8,589억 3,900만원이 감소된 것임

○ 2022회계연도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 130조 5,733억 200만원에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인 1조 217억 5,300만원과 순자산의 순증액 1조 2,156억 1,000만원을 더한 **132조 8,106억 6,600만원**으로 확인됨

〈표 5-21〉 순자산변동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회계연도 금 액	2022회계연도 구성비	순자산 변동 사유
기 초 순 자 산 (A)		130,573,302		
재 정 운 영 결 과 (B)		(1,021,753)		
순 자 산 의 증 가 (C)		2,139,559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이 익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①	41,604	1.9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긴 자 산 증 가 ②	1,279,940	59.8	·민간투자사업 등
	기타 순자산의 증가 ③	818,015	38.2	·토지 분할증가 및 합병증가 등
순 자 산 의 감 소 (D)		923,949	100.0	
	전 기 오 류 수 정 손 실	-	-	
	회계기준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	-	
	재 산 이 관 · 관 리 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④	41,604	4.5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른 재산이관
	양 여 · 기 부 로 생긴 자 산 감 소 ⑤	23,405	2.5	·주택재개발 등
	기타 순자산의 감소 ⑥	858,939	92.9	·토지 분할감소 및 합병말소 등
기 말 순 자 산 (A + B + C - D)		132,810,666		

※ 자료근거 : 서울특별시,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 재정운영결과 괄호는 흑자를 의미

Ⅵ.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1. 성과보고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련 법령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과보고서를 결산서의 구성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정하고 있고,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 목표와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사업원가와 성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6-1〉 성과 목표관리의 기본구조

성과계획 수립 (y-1년)	⇨	재정운용 (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성과 목표 및 측정방법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 · 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 ■ 환류

❍ 서울시는 '2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41개 실·본부·국에 대해 41개 전략목표수, 222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20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해 성과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한 바 있으나,

- '22회계연도 결산서에 포함된 성과보고서는 38개 실·본부·국에 대한 38개 전략목표수와 248개 정책사업목표 개수, 439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제출함

〈표 6-2〉 회계연도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작성 현황

(단위 : 개)

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정책사업목표 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정책사업목표 지표
2022	41	222	420	38	248	439
2021	42	215	412	41	225	426
2020	43	213	434	43	216	430

※자료근거 : 각 회계연도별 결산서

❍ 서울시는 지난 '22년 7월,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여 기존(6실 4본부 11국 13관·단 3합의제)의 조직에서 6실 4본부 11국 15관·단 3합의제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의 이체가 총 1,285건, 4조 7,823억원이 발생함

- '23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제출 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변경된 조직 및 '22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수정한 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당초 제출된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의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검토됨

❍ 관련 지침에 따르면 예산 요구 시 작성된 성과계획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최종예산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도록 시정권고를 한 사례가 있음

- '22회계연도의 경우, 두 번의 추경으로 '22년도 당초 예산안(44조 748억원)과 최종예산(52조 1,930억원)이 18.5%, 8조 1,182억원 차이가 있고, '22년 8월에는 조직개편을 하여 지방재정 관리시스템(e호조)상 성과계

획서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음에도

- 성과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지 않아, 각 부서에서는 통일된 지침없이 '22회계연도가 종료된 '23년 2월 성과보고서 작성 시점에서야 성과지표, 목표치 등을 부서의 판단하에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사료됨

❍ 「국가재정법」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에는 사후에 제출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 「지방재정법」은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서류인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만 정하고 있고, 기타 관련 법령에도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지방재정법」도 「국가재정법」과 같이 성과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경우, 사후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법령에 성과계획서의 수정시기·방법 및 변경된 성과계획서의 의회 제출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출된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439개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중 ①56개 지표(12.8%)는 **초과달성**, ②284개 지표(64.7%)는 **달성**, ③99개 지표(22.6%)는 **미달성**한 것으로 검토됨

〈표 6-3〉 '22회계연도 정책사업목표 및 성과달성도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실·본부·국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38	248	439 (100.0)	56 (12.8)	284 (64.7)	99 (22.6)
대변인	1	1	2	0	2	0
홍보기획관	1	6	14	1	11	2
여성가족정책실	1	11	18	4	9	5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11	13	1	10	2
비상기획관	1	1	2	0	2	0
디지털정책관	1	8	15	3	12	0
민생사법경찰단	1	1	3	0	3	0
미래청년기획단	1	1	2	0	2	0
기획조정실	1	10	18	3	10	5
소방재난본부	1	9	21	2	9	10
경제정책실	1	11	19	3	16	0
복지정책실	1	7	12	1	6	5
도시교통실	1	11	19	2	10	7
기후환경본부	1	15	20	1	14	5
문화본부	1	10	13	5	4	4
관광체육국	1	5	9	1	5	3
평생교육국	1	6	10	2	6	2
시민건강국	1	13	29	3	17	9
행정국	1	13	16	1	13	2
재무국	1	6	9	0	8	1
미래공간기획관	1	3	5	1	2	2
디자인정책관	1	5	6	1	5	0
기술심사담당관	1	2	4	0	3	1
안전총괄실	1	11	15	2	12	1
주택정책실	1	12	24	2	17	5
도시계획국	1	6	6	1	5	0
균형발전본부	1	11	15	0	11	4
푸른도시여가국	1	15	21	1	18	2
물순환안전국	1	3	4	0	3	1
인재개발원	1	1	3	0	2	1
도시기반시설본부	1	5	15	0	8	7
한강사업본부	1	2	6	0	3	3
서울역사박물관	1	1	3	2	1	0
시립미술관	1	2	7	3	2	2
의회사무처	1	3	22	3	13	6
감사위원회	1	6	11	3	7	1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1	1	2	1	1	0
자치경찰위원회	1	3	6	3	2	1

❍ 성과지표별로 검토하면 홍보기획관의 **법정민원 스피드지수**는 민원의 법정처리기간보다 실제 민원 처리기간이 단축된 기간을 나타내는 측정지표로 '22 회계연도에 스피드지수 81%를 목표로 하여 실제 84.8%를 달성하여 성과를 104%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 민원처리 기간의 경우 성과지표 목표치를 지속해서 높게 설정할 수 없는 지표일 것이나 최근 2개년('21~'22)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서 설정한 5개년도 목표치를 모두 달성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성과목표를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사료됨

〈표 6-4〉 법정민원 스피드지수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법정민원 스피드지수 (%)	(총 민원 단축처리기간 / 총 법정처리기간)×100	목표	75.5	81
		실적	85.3	84.8
		달성률(%)	113%	104%

※ 5개년도 목표치 설정 : ('21)75.5, ('22)81, ('23)81.5, ('24)82, ('25)82.5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목표치설정이 부적정한 사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를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추세치와의 비교를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 여성가족정책실의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서울시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율을 성과목표로 설정하여 최근 2개년('21~'22) 모두 100%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6-5〉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서울시 직원 폭력예방교육 이수율	목표	100%	100%
		실적	100%	100%
		달성률(%)	100%	100%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 설정 시, 가급적 정책사업 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도록 하고, 사업특성상 **결과지표**로 설정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산출량이 아닌 산출의 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산출지표**로 설정하도록 함

-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목표는 '일상생활의 전 영역에서 차별없고 안전한 양성평등 사회 실현'으로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라는 **성과지표**는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책사업목표를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부서의 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성과지표로 사료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은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후,판매된 금액을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목표액 8,000억 대비 165%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됨

〈표 6-6〉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억원)	서울사랑상품권 **판매액**	목표	2,000	4,000	8,000
		실적	5,270	12,700	13,188
		달성률(%)	264%	318%	165%

- 해당 성과지표의 목표는 '2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서울사랑상품권 예정 발행액(8,417억원)의 95%를 설정한 것으로, '22년도에는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어 서울사랑상품권의 총 발행액(1조 3,346억원)의 99%인 1조 3,110억원이 판매되어 목표 대비 달성률이 16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서울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인·판매하는 수혜적 지원 정책으로 '21년도에도 ***상품권은 발행 즉시 판매가 완료***되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차례 추가발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부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로 사료되지 않음

- 또한 관련 기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등 예산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수정예산 또는 추가경정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나,

-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발행액(1조 3,312억원)이 당초 본예산 기준 발행액(8,417억) 대비 59%, 4,895억원이 증가하였음에도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치는 수정되지 않아 성과를 평가하여 재정 운용에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사례로 판단됨

❍ 복지정책실의 **돌봄서비스(긴급, 일상편의 등) 제공건수**는 자치구에서 긴급, 일상편의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한 건수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2회계연도에 27,000건을 목표로 하여 실제 58,557건을 제공하여 목표 대비 217% 달성한 것으로 확임됨

〈표 6-7〉 돌봄서비스 제공건수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돌봄서비스(긴급, 일상편의 등) 제공건수 (건)	자치구 집계	목표	27,000	27,000
		실적	52,998	58,557
		달성률(%)	196%	217%

- 관련 기준은 성과 목표를 초과달성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제시하게 되어 있는 바,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한 원인으로 '21년부터 해당 사업이 전(全) 자치구로 확대 시행되었고, 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의 자격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나, 초과달성 사유가 예측가능한 사업 수혜대상의 확대인 점을 고려하면 전년도 실적 대비 소극적·수동적 목표 설정에 따른 고평가 결과일 수밖에 없어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실의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만족도**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고객만족도 점수를 지하철 이용 만족도의 성과지표로 삼은 것으로 성과 달성률이 0%로 확인됨

〈표 6-8〉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만족도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대중교통(지하철) 이용 만족도 (점)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평가 고객만족도 점수	목표	87.4	90
		실적	87.79	0
		달성률(%)	97%	0%

- 관련 기준은 성과를 미달성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하도록 한 바, 성과 미달성 사유로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다고('23년 3월중 예정) 기재하고, 개선사항으로 다양한 지하철 이용자 만족도 측정방법을 개발·도입할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지난 '21년도의 경우에도 결산서 성과보고서 작성시점에 평가결과가 발표되지 않음을 사유로 성과 달성률을 0%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례가 있음

-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평가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매년 전(全)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일괄 시행하는 평가로 조사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적절한 성과지표로 사료되나,

- 관련 기준의 성과보고서 작성일정상 작성 및 제출기한을 2월말로 정하고 있어 평가결과가 3~4월에 공개되면 성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목표달성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성과를 계획·평가하여 재정 운영에 활용하려는 성과목

표관리제도의 취지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하철 이용자 만족도 측정을 위한 방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시민건강국의 **자치구 운영 건강돌봄팀 운영**은 '22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성과지표로 자치구가 운영하는 건강돌봄팀 개수를 측정하는 것으로 '22회계연도에 16개 팀을 목표로 하여 현재 16개 팀이 운영되므로 목표성과가 100% 달성된 것으로 확인됨

〈표 6-9〉 자치구 운영 건강돌봄팀 운영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자치구 운영 건강돌봄팀 운영 (개)	자치구 운영 건강돌봄팀 수	목표	16	16
		실적	16	16
		달성률(%)	100%	100%

- 다만, 해당 지표의 정책사업목표는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강화'로 '자치구 운영 건강돌봄팀 운영'은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로 정책사업목표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성과지표 재설정이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성백제박물관의 **박물관 관람객 전시 만족도**는 박물관 상설·특별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2회계연도에 93.1점을 목표로 하여 평가된 만족도는 93.97점으로 성과를 100% 달성한 것으로 제출한 바,

〈표 6-10〉 박물관 관람객 전시 만족도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박물관 관람객 전시 만족도 (점)	상절전시 및 특별전시 만족도 평균값	목표	92	93.1
		실적	93	93.97
		달성률(%)	100%	100%

- 관련 기준에 따르면 성과지표의 설정이 부적절한 사례로 만족도 유형의 정성적인 성과지표를 하나만 제시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 더욱이 서울역사박물관의 경우에도 하나의 정책사업 목표에 '박물관 이용객 수', '기획전시 관람객 만족도', '유물수집 건수' 와 같이 정량·정성적 성과지표를 병행하여 세 가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유형의 성과지표는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출의 질적인 측면을 측정할 수 있는 정량적인 지표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판단됨

❍ 기후환경본부의 **실내공기질 컨설팅**은 비규제 취약시설 및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오염도 측정과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을 받은 개소를 측정하는 성과지표로 '22회계연도에 550개소를 목표로 하여 실제 67%, 369개소를 자문한 것으로 확인됨

〈표 6-11〉 실내공기질 컨설팅 성과지표 관련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1년 달성성과	'22년 달성성과
실내공기질 컨설팅 (개소)	실내공기질 전문가 현장조사 및 자문단 심사	목표	520	550
		실적	396	369
		달성률(%)	76%	67%

- 관련 기준은 성과목표를 미달성한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 충실히 작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 사업부서는 실내공기질 컨설팅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를 코로나19로 인한 대상 시설의 컨설팅 거부 및 시설폐업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고 기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향후 개선사항은 일절 작성하지 않아 성과보고서로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해당 성과보고서 작성 부서에 대해 주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2. 성인지결산서 검토

❍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은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정하고 있음

- 또한 관련 법령은 성인지결산서를 결산서의 첨부서류에 포함시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정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시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한 '2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에 따르면 성인지 대상 사업 개수는 '22년도 예산안 제출 당시와 동일한 총 323개 사업이며, 성인지 대상 사업 예산현액 3조 9,519억 중 96.83%, 3조 8,267억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표 6-12〉 2022회계연도 성인지결산 총괄

(단위 : 개, 백만원, %)

구 분		사업수	세출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총 계		323	3,951,971	3,826,714	96.83
	일 반 회 계	285	3,626,919	3,538,643	97.57
	기타특별회계	29	323,195	286,330	88.59
	기 금	9	1,856	1,740	93.76

❍ '22회계연도의 경우, 두 번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조직개편으로 성인지예산서상 사업금액, 조직별 성인지 예산사업 내역 등의 변경이 수반될 수밖에 없으나,

- 관련 법령이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시, 예산안의 첨부서류인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난 '22년도 제1회, 제2회 추경예산안의 경우 성인지 예산서를 수정·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3. 중기지방재정계획 검토

❍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 수입과 지출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Rolling Plan)으로,

- 관련 법령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분야별 재원 배분계획 등이 포함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음

❍ 「2022~2026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2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것으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5년간 일반회계(1개)와 특별회계(12개), 기금(17개)에 대한 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표 6-13〉 '22~26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2021 (최종)	계획기간					
			2022	2023	2024	2025	2026	계
총 계		464,813	**440,748**	458,040	479,650	502,465	**516,789**	2,397,692
	일 반 회 계	333,521	312,281	320,259	336,028	351,957	363,225	1,683,750
	특 별 회 계	131,291	128,468	137,781	143,622	150,508	153,564	713,943

- '22년도 최종예산은 두 차례의 추경으로 '22년도 당초 예산안(44조 748억원) 대비 18.5%, 8조 1,182억원이 증액된 52조 1,930억원으로,

■ 해당 예산규모는 당초 제출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향후 5년간 재정전망 중 마지막 연도(2026)에 목표한 재정규모(51조 6,789억원)를 초과한 금액임에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아,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한 결과로 사료됨

〈표 6-14〉 202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규모 변동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중기지방재정계획 ('22년도 예산안) (A)	'22년도 본예산 (의회의결)	'22년도 제1회추경 (의회의결)	'22년도 제2회추경 (의회의결) (B)	증 감 (B - A)
총 계		**44,074,847**	44,219,048	45,432,554	**52,193,075**	8,118,228
	일반회계	31,228,080	31,342,459	32,246,992	37,967,655	6,739,575
	특별회계	12,846,766	12,876,588	13,185,561	14,225,420	1,378,654

❍ 다만, 현재 관련 법령은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강행규정이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되어 서울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수립하는 종합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초가 되고,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도 연계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 변동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사유·시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개선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